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제 출 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최명길 (중앙대학교)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가. 연구배경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의 범위	5
II. 생활문화센터 개념	6
1. 생활문화센터 설립근거	6
2.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9
3.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조성 지원	12
4. 생활문화센터 유형	14
가. 역할별 생활문화센터	14
나. 운영환경별 생활문화센터	17
다. 공간형태별 생활문화센터	18
5. 시사점	20
가.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20
나.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20
III. 타 인증제도 사례분석	22
1.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인증제도	24
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24
나. 청소년 문화의 집 인증제도	30
다.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38
라. 여가친화인증제도	42
마.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49

바.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	54
2. 타 기관 인증제도	60
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60
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66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71
3. 사례분석의 종합적 시사점	79
가. 인증제도 조사결과 개요	79
나. 인증제도 조사 시사점	82
IV. 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	84
1. 개요	84
가. 현황조사 개요	84
나. 현황조사 인터뷰 구성내용	85
다. 현황조사 인터뷰 결과	85
라. 기타 의견	86
2. 인터뷰 내용	87
가. 현황조사 인터뷰 질문 내용	87
나. 현황조사 질문에 대한 의견	88
3. 인터뷰 세부 내용	90
가. 일반 현황	90
나. 운영 현황	93
다. 인증제도 도입	100
라. 시사점	104
V. 생활문화센터 설문조사 분석	107
1. 개요	107
가. 설문개요	107

나. 설문문항 구성	107
2. 생활문화센터 기본정보	109
가. 응답자 특성	109
나. 생활문화센터 특성	112
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113
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예산	115
마.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115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정체성	119
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119
나. 생활문화센터 공간정체성 및 운영주체	120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21
4.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관련 질문	124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 필요성	124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기대사항	125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우려사항	126
라.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128
마. 인증제도의 유지기간	129
5.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관련 질문	131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131
나. 인증기준 중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강점 기준	135
6. 설문조사에 대한 시사점	139
가. 생활문화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관련	139
나.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및 프로그램 관련	139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관련	140
라.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관련	140

VI. 전문가 인터뷰 및 센터 담당자 FGI	143
1. 인터뷰 및 FGI 개요	143
2. 생활문화센터 사전 인터뷰	144
가. A 전문가 의견	144
나. B 전문가 의견	147
다. C 전문가 의견	150
3.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FGI	153
가. 개요	153
나. FGI 내용	153
4. 전문가 및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FGI	156
가. 개요	156
나. FGI 내용	156
5. 종합 시사점	158
가. 생활문화센터 다양성 고려 및 정체성 확립	158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158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158
VII.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제안	160
1. 생활문화센터 인증 체계 설계	160
가. 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체계 설계	160
나.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에 대한 요구사항	163
다. 인증제 목적	168
라.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설계 방향성	170
2. 생활문화센터 인증체계 설계	174
가. 평가·인증체계 구성	174
나. 평가·인증 지침	175
다. 평가 체계	176

라. 인증 체계	178
3. 평가 기준 설계	180
가. 평가기준 설계 배경	180
나.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을 위한 운영기반(필수)기준	183
다.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을 위한 성과기준	187
4. 평가 방법 설계	193
가. 평가기준 평가방법	193
나. 제출자료 및 현장확인 사항	197
5.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유형별 운영방향	199
가.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	199
나. 성과인증 (우수 프로그램 인증 및 우수 센터 인증)	200
6.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효과	203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효과	203
VIII.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205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205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실시 법적 근거 마련	205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 체계 구축	207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활용한 센터 활성화 방안	208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효과	208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 유형별 지원방안	210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212
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213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213
나. 활성화 목표 1 _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보	214
다. 활성화 목표 2 _ 생활문화센터 운영역량 확보	217

라. 활성화 목표 3 _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 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219
마. 활성화 목표 4_ 프로그램 활성화와 홍보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220
4.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225
가. 활성화 단기 (2023년) _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립	225
나. 활성화 중기 (2024~5년) _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226
다. 활성화 장기 (2026년 이후) _ 생활문화 거점 시설	227
라. 활성화 장기 (2026년 이후) _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확대 추진	227
 참고문헌	 229
 부록	 231
부록 1. 법적조례 예시	232
부록 2. 설문조사 양식	236
부록 3. 생활문화센터 인증 지침	245
부록 4. 생활문화센터 평가기준(안) 및 평가 방법	268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1)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필요
 -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차별 없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강조되면서 문화정책의 기조는 문화민주주의로 전환되고 있음.
 - 국민들의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개인의 삶과 연관 짓게 되면서 문화를 근거리에서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 속에서 문화와 관련성을 맺을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활동을 증대시키는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령과 성별의 제한 없이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히 공간만 대여하는 역할이 아닌 주민 주도형 생활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
- 2)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라 2018년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하여 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짐.

- 생활문화센터 주체의 다양성, 지역별 환경의 다양성 및 지향하는 목표의 다양성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지방 이양이 이루어지며, 지역주민 활동공간으로서의 센터 활성화 및 양질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이 대두됨.
- 기존에 추진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생활SOC 사업(2020~2022)으로 복합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됨.

3) 현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제도 마련

-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행 이후 생활문화센터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함.
- 따라서 생활문화센터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생활문화센터의 각기 다른 지역 환경과 운영 주체의 성격을 반영하여 센터별 특성에 적합한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속가능한 일상 속 주민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문화 정책에 부합하는 인증제도 마련을 목표로 함.
- 본 연구는 인증제도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제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질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책적, 제도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와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조사 및 유형 분석
 -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현황 파악
 - 생활문화센터 유형 분류 및 인증제도 대상 범위 설정
-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설정 및 설계
 -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생활문화센터 기본 운영체계 구축
 - 생활문화센터 단계별 인증절차 설계, 업무가이드라인, 제출 서류 양식 등 설계
- 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조사

2)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정착 및 활용방안 마련
 - 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 인증결과 활용 및 공유방안
 - 인증제도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협력체계 구축

- 제도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 생활문화센터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생활문화센터 운영 개선안
 - 생활문화센터 유형별 지원방안 수립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제안 중장기 로드맵 제안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표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도입 연구의 범위

연구 범위	내용적 범위	세부 검토내용
문헌조사 - 현황조사 - 사례조사	생활문화센터 역할, 설립근거, 유형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대상 범위 및 목표 설정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설립된 173개소 (2022년 기준)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 관련 선행연구 및 운영 길잡이를 통한 정성, 정량 기준 도출
전문가 의견 수렴 - 업계 이해 관계자 인터뷰 - 설문조사 (온라인)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공간 사용 현황, 주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등 ▪ 현황조사를 통한 운영 개선점 도출(운영자현황조사)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효과 및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운영 시 기대 효과 및 단계별 시행방안 도출 ▪ 예상기대효과 _ 센터 질적 수준 향상, 센터 지원에 대한 근거 제시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도, 법적/ 정책적 지원근거 마련등
인증제도 설계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운영길잡이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정량 및 정성 기준 도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운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운영주체, 운영체계, 운영시스템, 인증 절차, 사전 관리(컨설팅)/ 사후관리방안 등 설계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도입 및 단계별 시행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후 인증제도를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도출 (인센티브 제도, 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교류프로그램 마련, 제도적 지원정책 등)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센터 운영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운영개선안 _ 주민 활용, 인식 개선 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_ 교육, 협력체계, 법적/ 정책적 시스템 구축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지역문화활성화 및 문화민주주의 관점)

II. 생활문화센터 개념

1. 생활문화센터 설립근거

- 생활문화센터는 국정과제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인해 생활문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2021년 시행령 개정 이전의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조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의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된 문화시설의 하나로 구분됨.
- 생활문화시설 관련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를 근거로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정의됨.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문화시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이나 기존 문화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생활문화예술 참여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음.

〈표 2〉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 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표 3〉 생활문화센터 설립 법적 근거

지역문화 진흥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7조(생활문화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	---

시행령	<p>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p> <p>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p>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2.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향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함.
- 강좌 중심의 기존 문화시설과는 다르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능함.¹⁾



〈그림 1〉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토대를 제공함.

1) 지역문화진흥원(2021),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7쪽.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나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생활문화 형성과 확산의 거점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발적·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제공에 기여함.
- 또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민주주의 실현 공간이자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작용함.
-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다수의 주민자율 공간을 조성하여 활동공간을 확보 및 제공하며, 발표 공간이 없는 지역이라면 다목적홀이나 공연장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니즈에 맞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
- 즉, 생활문화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서 지원되고 있기보다는 기존의 문화시설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작용하지만 과거의 공간보다 더 발전적인 형태를 지향함.
-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관계를 맺는 사람,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의 상을 그려가는 사람,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과 같은 자질을 지닌 사람으로 선정 기준을 내세우며 생활문화센터의 조직, 예산, 공간운영,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계획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²⁾

2) 지역문화진흥원(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10쪽.

- 아울러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문화센터의 미래상을 그리는 워크숍, 타 지역 생활문화 공간 탐방, 주민 매개자 및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공동프로그램 및 지역 동호회들과의 네트워크 파티 등이 있으며 본 프로그램들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지역주민의 것임을 알리며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간이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문화공간,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준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정체성과 미션, 역할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기본항목은 총 10가지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 설립목적과 역할, 운영계획 수립의 시기, 공간운영 기준, 운영주체 규정,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 재원 조성 및 지원기준,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자 기준, 지역 네트워크 관련 사항,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통제를 위한 항목은 조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권장함.
- 끝으로 생활문화센터 내 자체 운영규정의 필요성을 제시함. 이는 '지역주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목적, 운영시간, 업무, 연간계획,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등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마련, 조례 및 운영방침 등을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3.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조성 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신규건립이 아닌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기존시설 20~30여 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생활문화 특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입안·조성·운영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성유형을 거점형(1,000㎡ 내외)과 생활권형(200㎡ 내외)으로 구분하여 조성 지원이 이루어짐.
- 공간 건립시 의무시설로는 동아리방(연습 공간, 물품보관함 등),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교육·강의 공간 등), 작은 도서관, 공용시설 등이 있으며, 생활권 시설은 공간상 제약이 있을 경우 의무시설 적용 제외 가능함.
- 권장시설로는 작은 영화관, 영상·미디어교육실, 악기연습실, 생활체육공간, 레지던스 공간(예술단체 상주공간), 상담실 등을 제시함.
- 생활문화센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따라 시행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리모델링 또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
-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공간(50㎡이상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실면적 최소 30㎡이상 방음공간, 실면적 최소 30㎡이상 마루공간/학습공간) 등을 반드시 조성하도록 권장하며, 단일 시설일 경우 국비 40%, 복합시설일 경우 국비 50%(용지매입비 제외)를 지원함.

- 조성면적은 600m²를 기준으로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나 기준 면적 이하 조성 시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지원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측정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표 4〉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예산 및 규모(2021.1.기준)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예산 (억원)	1,154.3	96.3	92.4	94.6	63.2	78.3	1770.3	559.2
지원 규모	339 개소	13개 시·도 34개소	14개 시·도 34개소	16개 시·도 37개소	14개 시·도 22개소	9개 시·도 13개소	14개 시·도 46개소	16개 시·도 152개소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 운영 방안」

4. 생활문화센터 유형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공간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함.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생활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역할, 운영환경, 공간형태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센터에서는 유형별 특징에 맞게 운영 방향을 수립함.

가. 역할별 생활문화센터

- 역할별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그 역할에 따라 생활권형(읍면동 단위), 준거점(광역시의 구 단위), 거점형(시군구 단위)으로 구분되지만 지역에 따라 공간의 규모와 상관없이 역할 설정이 가능함.
- 생활권형은 읍면동 단위로 200m²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자율적인 문화 활동 및 생활문화동호회 형성을 지원함.
- 준거점형은 광역시의 구 단위로 500~1,000m² 기준으로 하며 생활권형을 기반으로 하여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창작 및 발표 등을 위한 공간을 지원함.
- 거점형은 시군구 단위로 1,000m²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함. 본 유형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동아리 네트워크와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생활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함.

〈표 5〉 생활문화센터 역할

구분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
위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광역 읍면동 단위로 조성 (광역시의 구 단위)	시·군·구 단위로 조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아리 형성 지원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주민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권형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창작 및 발표 등을 위한 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거점형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및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등의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한 생활문화 활동공간 및 발표공간 지원
규모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200㎡ 내외 의무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500~1,000㎡ 이내 의무공간(다목적홀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000㎡ 이상 의무공간(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거점형 시설은 2022년부터 필수시설인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학습·마루 공간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운영 및 공용시설(물품보관실, 화장실, 수유실, 사무실 등)과 특성화시설(다목적 공간, 공동체 부엌, 공동체 공방, 야외활동 공간 등)을 조성해야 함. 그러나 개인공방, 예술가 창작공간, 예술창작스튜디오, 실내영상스튜디오(전문가용)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시설은 조성 불가 공간임.
- 마주침공간은 각 단위 공간으로 이동하기 전 주민들 간의 마주침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자유롭고 안락한 분위기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공간이자 친목도모, 상호교류, 휴식 외에 모임 및 회의, 교육, 소규모 발표,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

으로 기능함. 따라서 본 공간은 안내공간 + 휴식 및 상호교류 공간 + 정보 제공 공간으로 가변형 공연장, 전시, 카페로 구성되며, 탁자, 의자(소파), 음향시설과 카페를 위한 간단한 탕비시설을 구비해야 함.

- 방음공간은 밴드연습, 사물놀이, 난타 같은 큰 소음이 나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밴드장비, 피아노와 같이 쉽게 운반할 수 없는 음악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며 타 연습실이나 마주침 공간 등에 방해가 없도록 소음 공해에 대비한 방음시설이 요구됨. 세부적으로 바닥에서 진동방지 매트를 설치해 구조체로 전달되는 진동을 차단해야 하며 공기로 전달되는 소리는 벽을 윗층 슬라브 하부까지 설치해서 벽을 넘어 천정 속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함. 이외에 부가적으로 수납장과 창고를 구비하고 안전을 위한 시창을 설치해야 하며 작은 규모의 개인 연습실(1~2인용)을 구비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지원해야 함.
- 학습·마루 공간은 학습공간과 마루공간으로 구분됨. 학습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 체험, 실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주로 정적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책상, 의자,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등이 구비해야 함.
- 마루공간은 무용이나 간단한 공연 연습 등 동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방음, 음향시설, 나무바닥, 거울벽 등이 필요함.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나 창고를 내부에 갖추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출입문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음악과 소음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방음문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또한, 방음공간의 안전을 위해 마주침공간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창을 두거나 시창이 포함된 방음문을 설치해야 하며, 주민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는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은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공해야 함.

〈표 6〉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건 및 공간구성(2021년 기준)

구분	시설내용	면적	공간구성
필수 시설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과 수요 고려 주민자율공간으로 구분되는 방음공간,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반드시 조성
	방음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30㎡ 이상 주민자율공간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30㎡ 이상 주민자율공간	
운영 및 공용 시설	물품보관실, 화장실, 수유실, 사무실 등	기준 없음	-
특성화 시설	다목적 공간, 공동체 부엌, 공동체 공방, 야외활동공간 등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공방, 예술가 창작공간, 예술창작스튜디오, 실내영상스튜디오(전문가용)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시설은 조성 불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나. 운영환경별 생활문화센터

- 운영환경별 생활문화센터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며 하위 세부적으로는 인구밀도, 중심산업, 커뮤니티,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기준은 위치를 기반으로 하며 도농복합의 경우 특정 지역의 인구밀도 및 토지이용 등이 기준으로 작용함.
- 도시형의 경우 동아리 연습공간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 내에 유사문화시설이 많아 생

활문화센터만의 정체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타 문화시설과 차별화되는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농촌형 역시 동아리 연습공간의 수요가 많아 공간 활용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함.

〈표 7〉 운영환경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구분	도시형	농촌형
인구밀도	높은 인구밀도와 큰 인구 규모	낮은 인구밀도와 작은 인구 규모
중심산업	2-3차 산업의 중심	1차 산업의 중심
커뮤니티	목적적인 상호작용	지속적인 상호작용
토지이용	상업지구, 주거지역비율 높음	전담 비율 높음
운영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수요의 증대에 따라 공간 조성 필요 • 유사한 문화시설이 많아 생활문화센터만의 정체성 확립 • 다른 문화시설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연습공간의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필요 • 문화기반시설이 많지 않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며 유연한 운영 필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다. 공간형태별 생활문화센터

- 공간형태별 생활문화센터는 독립형(건물 전체형)과 공동형(건물 일부형)으로 구분되는데, 독립형은 건물 전체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되는 유형이며, 공동형은 건물 일부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타 시설과 공존하는 형태임.

- 독립형(건물 전체형)의 경우 동아리 활동공간 제공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독립적인 공간 운영원칙과 계획이 필요함.
- 공동형(건물 일부형)은 부속시설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시설을 공유함에 있어서 공간운영방안을 규정하고 연계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표 8〉 공간형태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구분	독립형(건물전체형)	공동형(건물 일부형)
특징	생활문화센터가 독립된 건물형태	생활문화센터가 다른시설(기존공간)에 포함
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조직 필요 • 공간 운영원칙과 계획 필요 • 동아리 활동공간제공 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조직 또는 전담 운영자 필요 • 부속시설 아닌 독립적인 운영방안 수립 • 시설을 공유하는 곳과의 공간운영방안 수립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5. 시사점

가.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지향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의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는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하며 강좌 중심의 기존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어야 함.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도와 활성화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지역주민 요구 파악 및 참여, 지역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생활문화센터가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고 지원을 받아 설립하였으나 설립 이후 센터 운영관리는 부재하였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로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기존시설 20~30여곳을 리모델링하거나 생활문화 특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 입안·조성·운영 등을 개발 지원하였음.

- 센터 조성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은 센터가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활성화되지 못함.
- 생활문화센터 조례에 생활문화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 설립목적과 역할, 운영계획 수립의 시기, 공간운영 기준, 운영주체 규정,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 재원 조성 및 지원기준, 주민 참여 및 자원봉사자 기준, 지역 네트워크 관련 사항,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조례 자체가 없는 지자체도 있음.
- 지역 내 시설은 설치되었으나 센터의 적절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자체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비활성화된 센터가 다수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인증제도와 활성화 방안은 센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함.

Ⅲ. 타 인증제도 사례분석

- 타 기관의 인증제도 운영체계 및 인증절차, 인증기준을 파악하여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례조사의 내용은 법적근거, 평가목적, 평가 주체자,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종류, 평가결과 활용, 사후 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 등을 포함함.

〈표 9〉 타 기관 인증제도 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타 기관 인증 기준 및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인증 (조직, 제도, 개인 인증) 사례조사 • 인증제도 인증기준(정량, 정성기준) 확인 및 센터 인증제도에 적용 가능성 조사
인증제도 운영체계 및 인증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절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사례조사
인증도입 효과 및 정착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 법적 근거 및 해당 인증제도 도입 후 효과 및 정착 시 과정 검토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인증제도의 법적, 정책적 근거 확인 후 인증제도

- 사례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기관의 조직인증을 중심으로 검토함.

〈표 10〉 인증제도조사 대상

분야	인증제도	개요
문체부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미술관, 박물관의 기본 기능 및 효율적 운영 인증
	청소년 문화의 집 인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기능과 역할 인증
	문화예술후원인증	문화예술분야 후원 촉진 및 수행기업 인증
	여가친화인증	국민 여가 활성화를 지원 및 제도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선정
	한국관광품질인증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인증
	스포츠친화기업인증	스포츠 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인증
타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요건 심사 후 인증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대한 기관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인증제도

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전시와 교육, 수집, 연구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박물관의 조직·인력·시설·재정 등이 효과·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 박물관의 운영부실 방지 및 공공서비스 강화, 국내외 박물관 환경 변화에 부응한 미래가치 증대,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 제시 등을 통해 개별 박물관이 운영상 최소 기본요건을 충족하게 하여,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본 인증을 통해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 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전반적인 품질 제고 및 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2012년 「박물관 설립 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범운영, 2017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까지 평가인증 체계 개발 연구와 평가인증제 시범 운영을 진행함.

1) 법적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평가 대상자

- 평가 시점에서 박물관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전국 공립박물관 · 미술관 대상.

〈표 11〉 국 · 공립박물관 · 미술관평가인증제도 평가대상

국 · 공립 박물관	국 · 공립 미술관
평가 시점에서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 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적용	평가 시점에서 미술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적용

3) 유효기간 및 인증 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임.
- 인증절차는 총 5단계로 사업준비 및 사업착수 이후 평가를 실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와 성과관리 단계로 절차가 진행됨.
- 평가 주체는 위탁운영기관 추천 및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인증심사위원회 및 평가조사팀을 구성하여 추진됨.
- 사업준비단계는 평가인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증대상을 고시 하며 위탁운영기간 선정 이후 평가인증심사위원회 및 평가조사팀 을 구성함.
- 사업착수단계에서는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제 실행 및 공문을 발송하게 됨.
- 평가실시단계는 1차 · 2차로 구분되며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조사가 이루어짐. 이후 서면과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증결과를 공표하게 됨.

- 사후관리단계는 인증 및 보류/보완 미술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숍실시(우수사례공유)와 교육 컨설팅과 같은 포상과 후속 조치가 시행됨.
- 성과관리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인증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이후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

〈표 12〉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사업준비	사업착수	평가실시	사후관리	성과관리

4) 인증기준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기준은 총 5개 범주(설립목적의 달성도,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책임) 각 범주별 2-4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됨.
- 각 평가인증 범주는 복수의 세부평가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평가기준은 다시 계량기준과 비계량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별 추진 노력이나 효율성, 계량적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비계량기준은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평가.
-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절대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기준의 총득점을 계산함[A등급(100점), B등급(75점), C등급(50점)].

〈표 13〉 국립박물관 평가기준

범주(배점)	기준	세부기준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0점)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형태	운영관리 적정성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0점)	박물관장 전문성	박물관장의 전문성
	적정한 조직 및 인력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효과적인 재정 관리	재정 지속성 및 조성노력
	안전한 시설 관리 (전시, 수장, 소방 등)	전시실, 수장고 등의 소방·안전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0점)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성
	소장품 관리	소장품 관리·보존의 적정성
		소장품 정보관리의 적정성
	연구	연구 및 성과 공유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0점)	전시	전시 사업 성과 및 실시 실적
	교육	교육·체험 사업의 성과 및 실시 실적
공적책임 (10.0점)	관람객 관리	관람객 확보 및 노력
	상생협력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소통 노력
		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자원봉사자 활용
법적 책임 준수	법적 책임 준수	

〈표 14〉 국립미술관 평가기준

범주(배점)	기준	세부기준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0점)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관리 적정성
	리더십	관장 리더십확보
		관장 전문성
	운영계획 이해도	지자체, 유관기관의 이해도 강화노력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0점)	조직 및 인력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전문인력 고용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노력
	시설관리	수장고 시설관리 적정성
		전시공간 관리 적정성
		이용자 시설관리 적정성
	재정관리	재원분배 적정성
		재원지속성 및 조성노력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0점)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도
	소장품관리	소장품 보존 적정성
		소장품 정보관리 적정성
	연구 및 아카이빙	연구 및 아카이빙의 적극성 및 전문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0점)	전시	전시기획의 전문성
		전시구현의 전문성
		전시이해 증진 노력
	교육	교육기획의 전문성
		교육운영의 전문성
		교육대상 다양화 노력
	관람객 개발	홍보마케팅
		관람객 관리
공적책임 (10.0점)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법령 준수여부
		관련 법령 준수 정보
		주요정책 이행실적
	상생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자원봉사 진흥

5) 혜택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우수기관의 소속 공무원 포상, 홍보 및 연수회 제공이 존재함.

〈표 15〉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기관 보상(인센티브)으로 소속 공무원 포상 • 우수 운영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지원 • 평가 결과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모범사례 공유

6) 인증제도 현황

- 2020년에 진행된 기준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 결과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227개 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그중 157개 관이 인증되어 운영중이며, 국·공립 미술관의 경우 53개 관을 평가하여 그중 41개 관이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음.

〈표 16〉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제도 평가대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미술관
157개	41개
총 198개	

7) 시사점

- 본 인증평가의 현장조사 경우 현장 평가위원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교차확인이 가능함.

- 본 인증기준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평가기준은 프로그램과 전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운영의 지속성에 대한 평가에 용이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프로그램 실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본 평가기준은 세부기준마다 측정 기준을 정하여 얼마만큼 충족되는가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있음. 이는 정량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경우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기준처럼 세부기준마다 측정 기준을 선정하여 등급을 나누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인증제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인증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현재 설립되어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없음.

나. 청소년 문화의 집 인증제도

-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정의됨.
-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시설로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수준, 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재단은 없으며 각 시·군·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함.
- 2006년 9개에 불과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2년 기준 326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의무 조항 및 저출산 시대에 맞는 사회의 대응에 의한 것으로 파악됨.

1) 법적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
 -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음.

2) 지원사업

-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 지원활동으로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가 있음.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개발, 민주시민의식 제고, 문화·예술 체험 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함.
-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하며, 청소년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등이 존재함.
-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인, 가족, 동아리·단체 등의 유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일손 돕기·환경미화·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의 노력봉사, 학습 지도·멘토링·공부방 운영 지원 등의 교육봉사, 지역행사 운영·보조, 캠페인 활동 등의 문화봉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봉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비경쟁성, 개별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자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함양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국제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 있으며 각 활동별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함.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성취 지향적 활동, 단계적 활동, 스스로 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 경쟁이 없는 활동,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8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만 7~15세 청소년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4가지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함.

<표 17> 청소년문화의집 지원사업

지원사업	세부활동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청소년 젠더프로그램
	사회정서 역량 개발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일손 돕기 · 환경미화 · 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가족형 포상제, 챌린지형 포상제, 자유학기제 · 학년제

3) 기능적 특성

-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적 특성은 문화체험 기능, 만남과 소통의 기능, 네트워크 기능 등으로 구분됨.
- 문화체험 기능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문화활동 기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의미함.
- 만남과 소통의 기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으로서 개인 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로를 만나는 과정에서 대화와 의견 교환을 통한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함.
- 네트워크 기능은 정보서비스 기능과 더불어 사람, 기관, 지역을 위한 연계 중심의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서비스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의미함.

4) 평가방법 및 기준

- 청소년 문화의 집 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의 체계적 관리, 시설의 건전한 발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주요 기반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평가사업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평가위원회 등의 협업체제로 진행됨.
- 여성가족부는 평가업무 총괄 및 지원, 평가사업세부운영 방안 및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평가결과 활용 및 정책을 반영하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등 평가사업을 총괄 함. 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평

가자료의 사전검토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평가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6개 대영역(운영계획, 청소년이용, 활동프로그램, 조직 및 대외협력, 종사자 및 시설,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3개 중영역, 28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8〉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기준

대영역	중영역 (%, 점수)	평가기준 (%)	배점 (100점)
1. 운영계획 (5.0)	목표수립 및 계획 (100.0 / 5.0)	시설 발전계획의 체계성(50.0)	2.5
		연간 운영계획의 적절성(50.0)	2.5
2. 청소년 이용 (30.0)	청소년 이용률 (40.0/ 12.0)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 이용률 (60.0)	7.2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 이용률 (40.0)	4.8
	청소년 참여 (30.0 / 9.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60.0)	5.6
		청소년 참여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정도(40.0)	3.4
	청소년동아리 (30.0 / 9.0)	청소년동아리 운영계획(20.0)	1.8
		수용정원 대비 청소년동아리 수 (40.0)	3.6
청소년동아리 활동 빈도(40.0)		3.6	
3. 활동 프로그램 (20.0)	프로그램 운영계획 (20.0 / 4.0)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체계성(100.0)	4.0
	프로그램 운영 (60.0 / 12.0)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수(60.0)	7.2
		공모사업 프로그램 수(40.0)	4.8
프로그램 평가 (20.0 / 4.0)	프로그램 평가의 합리성 및 반영(100.0)	4.0	

대영역	중영역 (% , 점수)	평가기준 (%)	배점 (100점)
4. 조직 및 대외협력 (10.0)	조직 및 예산 (50.0 / 5.0)	시설운영 관련 규정(60.0)	3.0
		전체예산 대비 프로그램 사업비 비율(40.0)	2.0
	대외협력 (50.0 / 5.0)	학교 및 지역 시설(단체)과의 협력 (60.0)	3.0
		대외홍보 노력 (40.0)	2.0
5. 종사자 및 시설 (25.0)	종사자 (40.0 / 10.0)	운영대표자의 적절성(30.0)	3.0
		청소년지도사 배치율(20.0)	2.0
		직원의 자격증 수(20.0)	2.0
		각종 전문연수 참여율(30.0)	3.0
	근무 안정성 (20.0 / 5.0)	직원의 근속일수(40.0)	2.0
		직원의 복지수준(60.0)	3.0
	시설 활용 및 안전·위생관리 (40.0 / 10.0)	연간 시설 운영률(30.0)	3.0
		안전 관리 수준(40.0)	4.0
		위생설비 관리 수준(30.0)	3.0
6.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	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100.0)	운영발전 노력정도(50.0)	5.0
		종합평가(50.0)	5.0

5)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현황

- 2022년 기준 총 326개의 기관이 설립되었으며 그중 사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조성되었음. 다음으로 군립 90개관, 구립 62개관, 도립 23개관, 사립 5개관으로 조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표 19〉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시립	도립	구립	군립	사립
146개	23개	62개	90개	5개
총 326개				

6) 시사점

- 청소년 문화의 집 직원(정규직+비정규직)의 평균 직원 수는 4.3 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17명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투여되는 정규직 인원의 취약성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규직 청소년 지도사의 채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현행 1명의 청소년 지도사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역시 전문인력의 확보와 처우개선을 통한 운영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지역규모가 작은 군 단위의 직영시설의 경우 시설규모가 작고 전반적으로 평가에서 낮은 결과를 받음. 이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현황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시설규모 및 운영 환경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인증을 받지 않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법적기준 미준수 또는 운영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증제 활성화가 필요함.
 - 운영실태가 낙후된 생활문화센터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인증을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평가기준의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으나 인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부재로 인하여 인증을 시도하는 기관이 적은 상황임.

다.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 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매년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 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해 인증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심의평가 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함.

1) 법적근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음.

2) 인증 대상자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업 등의 전문 성과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함.

〈표 20〉 문화예술후원 인증기관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에 근거 •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근거 •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3) 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3년 경과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중 연 1회 사후관리를 실시함.
- 사후관리 평가는 증빙자료 통해 후원 지속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를 의미함.
- 인증절차는 총 5단계로 신청공고 및 접수과정 이후 심사단계로 넘어 가며 서류심사를 통해 필수요구사항 적합, 부적합을 확인하여 현장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단체와 기관별 부분적으로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이후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결정함.
- 심의 주체는 인증심의위원회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 관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며, 운영사무국, 현장평가단, 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 가능함.

〈표 21〉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신청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인증심사위원회	인증결과 발표 및 인증수여

4) 인증기준

- 현장평가는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을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자가 채점을 통하여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신청 전 신청자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

〈표 22〉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인증기준

기관	평가기준	비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조직역량(30) 조직운영체계(30)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40)	평가 기준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조직역량(25) 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 문화예술후원 성과(50) 대외수상실적(가점 3)	

5) 혜택

- 문화예술후원인증시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와 더불어 경영지원, 재정지원 및 언론 홍보 그리고 여가 향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23〉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 인증 현판, 인증패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 •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제공 • 언론홍보(기획기사)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킹(우수사례 견학) • 문화향유 지원(공연/전시 관람 티켓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사업비 우선 지원 •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 신청 시 가산점 3점 부여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 KB금융우대 혜택 및 임직원 자산관리 컨설팅(중소, 중견기업)

6) 문화예술후원 인증 현황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비영리법인 3개, 재단법인 5개 등 총 8개의 단체가 인증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6개, 대기업 23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10개로 총 53개의 기관이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음.

〈표 2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 현황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3개	5개
총 8개	

〈표 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현황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6개	23개	14개	10개
총 53개			

7) 시사점

-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며 문화예술 산업의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계량·비계량적 평가를 모두 적용하여 우수기관 및 단체 인증을 위한 상호 보완적 평가기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실제 인증을 받기 전 자가 채점을 통하여 신청자격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기관에서는 사전 점검이 가능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역시 기관이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인증제도에서는 사업의 추진현황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예술후원매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용이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의 현황과 같은 평가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인력과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라. 여가친화인증제도

-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의 인증과 심사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프로

그램, 여가시간 등을 지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이후 포상과 함께 인증기업 홍보 및 특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법적 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음.

2) 인증 대상자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공공기관 및 법인등을 추가하여 참여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함.

〈표 26〉 여가친화인증제도 인증대상

여가친화인증제도 인증대상
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⑥ 기업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3) 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2년 이내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3년 경과시 활동 실적에 따라 재인증이 가능함.
- 인증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평가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구성됨.
- 서류심사는 인증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여가친화제도(60점)과 가점을 심사하고, 종합 검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함.
- 서류심사 후 인증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기관 조사 및 부적격대상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여됨.
- 면접 조사는 전문가 2인과 실무자 1인으로 구성되어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확인작업 및 여가친화문화(40점)에 해당하는 직원, CEO 인터뷰를 진행함.

〈표 27〉 여가친화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기업 신청·접수	서류심사	설문조사	면접조사	선정 결과 발표	인증식

4) 인증기준

- 본 인증제의 경우 채점표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공기업·대기업·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됨.
- 평가는 여가친화제도(60점)와 여가친화문화(40점)를 범주로 하여 100점 만점이며 가점은 10~15점으로 구성됨.

- 여가친화제도(60점)에 대한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여가시간, 여가제도, 여가활동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며, 여가친화문화(40점)는 설문조사와 현황조사를 활용하여 평가함.

〈표 28〉 2022년 기준 중소기업 평가기준

구분	대기업·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인증 점수(점)	70	65	60

평가영역	평가기준		
I. 여가친화제도 (60점)	여가시간 확보 (2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여가 담당자 여부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보상휴가제 운영	
		특별휴가 운영	
	여가활동 지원 (20점)	공간·시설 제공	휴게(휴식)공간·시설
		비용지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자율적여가활동비용			
프로그램 제공		여가프로그램	
II. 여가친화문화 (40점)	조직문화(20점)	여가친화적 조직문화(설문조사)	
	최고경영층 리더십 (10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직원만족도(10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여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평가영역	평가기준		
Ⅲ. 가점 (최대 15점)	최대 1개 인정 (5점)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일·생활균형)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최대 1개 인정 (5점)	문화예술후원 인증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기업	
		문화가 있는 날 참여기업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지역사회공헌(2점)	사회공헌활동	
	여가공간·시설 제공 (3점)	여가공간·시설 제공(사내·사외)	
	총계		

5) 혜택

- 정부포상 수여, 기업·기관 홍보 및 문화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정 부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이 부여됨.

〈표 30〉 2022년 기준 여가친화인증사 특전

종류	특전	내용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4점)	여가제도 및 조직문화 우수기업·기관 10개사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4점)	
	특별상(2점)	
홍보	여가친화인증마크 사용	기획기사 등 주요포털 첫화면 노출
	주요포털 첫화면 노출	
	언론사 기획기사	
문화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우수인증사 대상 문화예술전문단체 프로그램 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인문학 강연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좌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정부인증 제도 우대 및 가산점 부여	근로자 휴가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선 지원 (한국관광공사 주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특정항목(예술협업 역량) 최고점 적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가점 부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
	중소기업-근로자 성과공유제	가점 및 성과공유 모범기업 홍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6) 여가친화지원 인증 현황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총 378곳으로 그중 중소기업이 211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공기업 68개사, 대기업 40개사, 중견기업 33개사, 공공기관 26개사 순으로 인증받아 운영되고 있음.

- 또한 2016년부터 재인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기준 총 78개의 기업·기관이 재인증을 받음.

〈표 31〉 여가친화지원 인증 현황(2022년 기준)

여가친화인증사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6개	68개	40개	33개	211개
총 378개				
재인증				
78개				

7) 시사점

- 본 평가기준은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설문조사를 반영하는 등의 평가방법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
- 또한 여가친화제도와 여가친화문화를 구분하여 계량·비계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인증에 설득력을 부여함.
- 여가친화인증제도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급, 연령, 성별을 가진 직원의 생각을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도에 현장 인력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본 인증은 최소조건이 아닌 최대조건 인증이라는 점에서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기업 및 단체의 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생활문화센터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만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는 숙박, 쇼핑 등 관광접점 대상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 본 제도는 서비스품질기준에 의거한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의, 및 인증 결정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함.

1)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

2) 인증 대상자

- 인증대상은 쇼핑과 숙박으로 분류되어 업종별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중대형, 소형), 숙박업(일반, 생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_홈스테이, G형_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업(헤리티지,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2〉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인증대상

쇼핑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숙박	숙박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G형- 게스트하우스형
		H형- 홈스테이형
한옥체험업		

3) 유효기간 및 인증 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 소요됨.
- 인증절차는 총 6단계로 인증 신청/접수단계 이후 서류평가와 1·2차 현장평가를 거쳐 결과심의 및 인증결정을 통해 인증유지 단계로 절차가 진행됨.
- 평가 주체는 한국관광품질인증사무국과 관광인증분야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추진함.
- 본 제도는 기존의 다른 평가인증제도의 현장평가와 다르게 압행·불시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임.

〈표 33〉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인증신청·접수	서류평가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 (암행평가)	결과심의 및 인증결정	인증유지

4) 평가방법

- 서류평가는 한국관광품질인증사무국에서 평가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로는 인증신청서, 업소현황표, 자율점검표, 구비서류 등(소방 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사본, 주민등록본, 건축물 대장 사본, 사업장등록증)으로 기초적인 현황 파악에 활용함.
- 1·2차 현장평가는 관광인증분야 전문가가 2인 1조로 구성되며 평가항목으로는 필수기준,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로 구성됨.
- 서류통과 안내 후 4주 이내 1차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평가총점(400점)의 70% 이상을 득점 해야 함. 이후 4주 이내 불시로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평가총점(200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통과기준을 충족하게 됨.

〈표 34〉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평가방법

구분	서류평가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 (불시, 암행평가)
평가분야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분야	
평가총점	-	400점	200점
통과기준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충족	
		평가총점(400점)의 70% 이상 득점	평가총점(200점)의 70% 이상 득점

5) 인증기준

- 한국관광품질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 기준은 시설서비스, 위생관리, 소방안전 그리고 인정서비스 4가지 기준으로 구성됨.
- 시설 및 서비스 항목은 숙박업에서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서 가장 기본적인 관리 항목이며, 품질인증 항목 전체 배점 중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됨.
- 인적자원 항목은 숙박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서 한국관광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책임지는 항목으로 여겨짐.

〈표 35〉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인증기준

현장평가인증기준			
시설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요금표 및 숙박업 신고증 • 시간에 따른 요금제 운영 금지 • 주차장 폐쇄형 구조물 • 프런트 개방 형태 • 성인방송 제어기능 장치 및 성인콘텐츠 차단 •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구조 • 내국인 상대 숙식 미제공 확인 	위생 및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침구류·욕실 청결상태 • 취사시설 제공 및 청결상태 •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
소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 화재경보기 • 일산화탄소 경보기 • 완강기 및 피난기구 • 휴대용 비상조명 • 비상대피도 • 비상계단(통로) • 방화문 	인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안내서비스 • 실제 집주인의 거주

6) 혜택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정지원, 서비스지원, 운영지원, 업소 간 유대 강화 및 홍보 지원이 있음.

〈표 36〉 한국관광품질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기준금리 대비 최대 1.25% 우대 (2022년 기준) • 서비스역량강화: 관광분야 서비스 교육 제공, 인증 홍보물·물품지원, 이용만족도 조사 종합분석자료 제공 • 운영지원컨설팅: 안전,소방 컨설팅, 위생 관리 컨설팅, 불법촬영범죄 예방 컨설팅 • 인증업소 유대강화: KQ레터, 인증업소 의견수렴 • 홍보 마케팅 지원

7) 한국관광품질인증 현황

- 한국관광품질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인증숙소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462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쇼핑센터의 경우 17개의 센터가 인증을 받음.

〈표 37〉 한국관광품질 인증 현황

지역	총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남	경북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숙소	462	46	13	17	58	19	6	2	3	74	61	16	21	77	2	3	33	11
쇼핑	17	14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8) 시사점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는 자율점검 시에 인증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더라도 서류평가에 떨어지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평가 전까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본 인증제도는 신청공고에 우수사례를 첨부하여 사전에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

- 평가는 업소의 편의성, 위생, 안전, 법 준수 등 시설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인력의 전문성까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경우 프로그램을 운영, 진행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본 평가는 불시에 현장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이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용이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역시 인증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 관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시설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행 평가를 진행할 것을 고려해야 함.

바.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

-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의 인증과 심사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 여가시간 등을 지원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이후 포상과 함께 인증기업 홍보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법적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3(스포츠친화기업 인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친화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스포츠친화 인증을 할 수 있음.

2) 인증 대상자

- 국내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함.

〈표 38〉 스포츠친화기업 인증대상

스포츠친화기업 인증대상
① 근로자의 신체활동 및 체력증진을 위해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관) ② 스포츠활동을 통해 기업(관)의 경영성과에 도움을 받은 기업(관) ③ 스포츠친화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모범이 되고자 하는 기업(관)

3) 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임.
- 인증절차는 총 5단계로 사업홍보 이후 신청/접수단계를 거쳐 서류와 현장평가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한 시상 단계로 절차가 진행됨.
- 평가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 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추진함.
-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함.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명의 인증서 수여함.

〈표 39〉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홍보	① 공고 ② 홍보 ③ 설명회개최 ④ 상담	신청 접수	① 신청/접수 ② 예비심사	심사	① 서류심사 ② 보완사항 ③ 현장심사 ④ 위원회상정	심의 인증	① 인증심의 ② 심사결과 ③ 기업통보 ④ 수여식

4) 인증기준

- 평가 기준은 기업(기관)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시범 사업을 통하여 기업 규모별로 평가 기준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기관)의 규모, 수준 차이에 대한 평가보다는 절대기준에 도달 정도를 평가함.
- 평가 영역은 운영체제, 제도운영, 운영성과 그리고 가점으로 구성됨.
- 운영제도는 경영층의 리더십, 규정, 시스템 및 조직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며, 스포츠친화 활동의 운영여부, 방향성 등을 평가함.
- 제도운영은 스포츠친화 활동의 균형적 시행, 기업(기관) 구성원의 스포츠친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 정도를 평가함.
- 운영성과는 임직원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평가함.

〈표 40〉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 인증기준

평가영역	평가기준	세부기준	배점
Ⅰ. 운영체제 [30]	리더십[10]	경영층의 지원의지	10
	규정/시스템/조직[20]	운영 및 지원제도 규정화	5
		연간 프로그램 실행계획수립	5
		운영 모니터링	4
		운영 성과	4
		담당 인력 보유	2
Ⅱ. 제도운영 [40]	교육/상담[10]	교육프로그램	5
		상담프로그램	5
	인프라 운영[10]	스포츠친화시설 보유	5
		스포츠친화시설 관리	5
	프로그램 및 활동지원[20]	회사주관 정기프로그램	7
		스포츠동호회	7
스포츠개인활동		6	
Ⅲ. 운영성과 [30]	임직원 만족도		15
	임직원 참여율		15
Ⅳ.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력100 참여 • 지역스포츠 활성화 공헌 활동 • 유관 인증획득 		해당 가점부여
총계			100[+가점]

5) 혜택

- 스포츠친화기업인증 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시상과 포상 및 홍보 혜택을 얻을 수 있음.

〈표 41〉 스포츠친화기업인증제도 인증혜택

인증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비용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인증서 제공 및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시상: 대상(1개), 우수상(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 포상: 대상수상 기업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및 포상금 • 인증결과 홍보지원(보도자료 배포)

6)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현황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공공기관 12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 5개 중소기업 15개사로 총 32개의 기업 및 기관이 인증받아 운영중임.

〈표 42〉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현황

스포츠친화기업인증사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12개	5개	15개
총 32개		

7) 시사점

- 본 인증제는 세부기준의 측정 내용 충족에 따라 배점이 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으므로 심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의 경우 임직원의 만족도와 같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정량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됨.

-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기관)의 규모, 수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절대기준에 도달 정도를 평가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보유 공간, 운영 주체, 운영 방식 등의 다양화로 각 특성에 맞는 기준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2. 타 기관 인증제도

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증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특성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임.
-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세제, 경영, 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 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의 주체는 정부로 하되,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요건 및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함.

1)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2) 인증 대상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함.

〈표 43〉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인증대상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인증대상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④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⑥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유효기간 및 인증절차

-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인증절차는 총 9단계로 인증계획공고를 시작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며 인증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계획을 수립함. 그 후 현장실사가 이루어지며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검토 보고자료가 제출되고 최종 인증여부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단계로 진행됨.

- 평가주체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등으로 이루어지며 아래 인증단계별로 평가 및 인증서를 수여함.

〈표 44〉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인증계획공고	상담 및 컨설팅	인증신청 및 접수	서류검토/현장실사 계획수립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권역별지원기관.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진흥원
step 6	step 7	step 8	step 9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추천	검토보고자료제출	인증심사	결과안내 및 인증서 교부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진흥원→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4) 인증기준

- 진흥원에서 지원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인증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진행.
- 현장실사 과정에서 인증요건 미충족이 확인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인증신청기업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함.
- 지정일까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요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하면 인정됨.

- 현장실사 확인 내용은 총 7가지로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 사회적 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수입, 정관 또는 규약 그리고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46〉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인증기준

구분	세부내용
조직형태	조직형태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 확인(신청기업의 타 사업장과 동일 사업장, 동일인, 가족 등이 동종업종 운영 등)
유급근로자고용	유급근로자 실제 근무여부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별 인증요건 충족여부 및 대표자 면담을 통한 사회적 목적 확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지속적 운영 여부 확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제출한 회계서류 세부내역 확인(계정별원장), 지속가능성에 관한 검토(영업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정관의 필수사항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명시 여부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여부 및 실제 사용 현황

5) 혜택

-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재정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등이 있음.

〈표 47〉 사회적기업인증제도 인증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예비) 사회적기업일자리 인건비지원	•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경영지원 등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6) 사회적기업인증 현황

- 2007년부터 2022년까지 82차에 걸쳐 총 4,090개소 인증, 현재 3,436개소가 인증받아 활동 중임.
- 그중 상법상 회사가 2,145개소로 가장 많은 인증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민법상 법인 313개소, 협동조합 303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253개소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인증을 받아 운영 중임.

〈표 48〉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사회적기업인증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업회 사법인	영농조합 법인	협동조합
313개	66개	75개	253개	2개	2,145개	163개	116개	303개
총 3,436개								

7) 시사점

- 본 인증제의 혜택은 경영지원, 조세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이는 정부 지원 사업별로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짐. 따라서 인증과 정부 지원은 별개로 작용됨.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로 이양될 경우 정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이러한 기준을 생활문화센터에 적용하여 생활문화센터의 명칭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및 규약의 구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라는 일곱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회적기업들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만성질환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진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노인시설임.
- 본 인증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평가결과를 전부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1)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38조, 54조, 60조 및 69조
 -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함.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평가 과정에 관련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평가 대상자

- 전체 장기요양기관

3) 유효기간 및 인증 절차

- 인증유효기간 6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함.

- 인증절차는 총 3단계로 계획공고, 평가실시, 결과공표 순으로 진행됨. 우선적으로 계획공고 이후 평가가 실시되며 결과공표에 따라 인증서 발급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수행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단 본부·지역본부·운영센터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평가를 수행함.
- 평가 종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됨.
 -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시설급여와 재개급여를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정기평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 개시 30일 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고함.
 - 수시평가는 정기평가 하위등급의 장기요양기관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수시평가를 실시함.
- 사후관리는 평가결과 하위기관의 경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평가 후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 기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실시함.
- 성과관리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인증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이후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함.

〈표 49〉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도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계획공고	평가실시	결과공표

4) 인증기준

-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은 총 5개 범주(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각 범주별로 3-4개 평가기준으로 구성됨.
- 총 50문항, 100점 만점으로 평가됨.
- 평가방법은 시설 규모 및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A~E의 5개 등급으로 결정(A(최우수)등급, B(우수)등급, C(양호)등급(50점), D(보통)등급, E(미흡)등급).

〈표 50〉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문항수	점수	환산점수 (배점비중)
총합계	13	50	100	100
기관운영	합계	12	15	15
	기관관리	3	3	
	인적자원관리	8	11	
	자원활용	1	1	
환경 및 안전	합계	12	28	28
	시설 및 설비관리	4	8	
	위생 및 감염관리	3	8	
	안전관리	5	12	

대분류	중분류	문항수	점수	환산점수 (배점비중)
수급자 권리보장	합계	5	12	12
	수급자 권리	3	5	
	수급자 존엄성	2	7	
급여제공과정	합계	15	35	35
	급여개시	1	3	
	급여계획	1	3	
	급여제공	13	29	
급여제공결과	합계	6	10	10
	수급자 상태	4	6	
	만족도 평가	2	4	

〈표 51〉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분류〉

등급	점수
A(최우수)등급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70점 이상
B(우수)등급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60점 이상
C(양호)등급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50점 이상
D(보통)등급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면서 대분류영역 각 40점 이상
E(미흡)등급	D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기요양기관

5) 혜택

- 장기요양기관 평가인증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우수기관의 인증마크 수여, 인센티브 지급 등이 존재함.

〈표 52〉 노인장기요양기관 혜택

인증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공유(우수기관 격려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보고) • 우수사례발표 • 유공자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기관 인증마크 수여 • 향후 평가계획설명회 개최 •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상위 20% 범위에 속한 최고등급 기관)에게 인센티브 지급하여 장기 요양급여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

6) 조성 현황

- 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기관 조성 현황 결과 총 27,028개관이 존재하며 그중 경기도의 경우 6,557개관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음.

〈표 53〉 노인장기요양기관 조성 현황

노인장기요양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3,642	1,422	1,387	1,697	850	850	371	90	6,557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36	1,029	1,418	1,462	1,352	1,926	1,806	233	
총 27,028개								

7) 시사점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체계적으로 인증기준이 설계되어 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절차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인증에 대한 신뢰가 확보됨.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인증에 대한 센터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받음으로 인해 센터의 위상을 세워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인증제는 인증결과가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이 가능함
 - 즉, 인증제를 통해 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향상시켜 센터로의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비용, 시간, 인력,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
- 기관운영의 목적보다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지나친 행정비용 발생할 수 있음.

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임.
- 단순 일회적 보호대책에서 벗어나 체계적,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함.

-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국민 및 고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대외 이미지를 제고함.

1)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47조~제54조
 -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법 제47조 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함.

2) 평가 대상자

- 임의신청자와 의무대상자로 구분됨.
- 임의신청자의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관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기업·기관은 임의신청자로, 인증취득을 희망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심사를 받음.
- 의무대상자의 경우 ISP, IDC, 이외 기준으로 나뉨.
 - ISP의 기준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IDC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가 해당됨.
 - 이외 기준 해당자는 다음과 같음.

- 연간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표 5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평가 대상자

임의신청자		
의무대상자		
ISP	IDC	이 외 해당자

3) 평가종류 및 평가방법

-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하는 심사이며,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에도 실시함. 최초심사를 통해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함.
- 사후심사는 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심사임.
- 갱신심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를 의미함.
- 평가방법은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과 인증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평가주체자는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에 따라 달라짐.

-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제도 개선 및 정책결정, 인증기관 심사기관 지정.

- 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평가자문위원회.
 - 제도운영 및 인증품질 관리, 신규특수분야 인증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심사원 양성 및 자격관리/ 금융분야 인증심사, 금융분야 인증서 발급.

- 심사기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인증취소사유(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제10항)를 발견한 경우에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ISMS-P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인증결과 통보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ISMS-P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은 이의신청 가능함. 또한 인증취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여야 함.

〈표 5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평가종류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최초심사	사후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4) 유효기간 및 인증 절차

- 인증유효기간은 3년임.
- 신청단계는 신청서류 공문접수가 이루어지며, 인증범위 및 신청 기업 준비상태의 예비점검이 이루어짐
- 계약단계는 수수료 산정 및 청구, 계약, 심사일정 확정 및 수수료를 납부하게 됨.
- 심사단계는 서면과 현장심사가 이루어지며 관리체계 수립 및 구현 이행 여부, 심사 결함 사항 보완조치 요청이 이루어지며 교통비 등 인증심사업무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신청하여 청구하며 직접 경비를 납부하게 됨. 또한 심사 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고 심사결과보고서(심의 안전)를 작성함.
- 인증단계는 인증위원회의 심사결과 검토 및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후 인증서 발급이 진행됨.

〈표 56〉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신청단계	계약단계	심사단계	인증단계

5) 인증기준

- ISMS-P 평가기준은 총 3개 범주(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구성됨.

〈표 5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평가기준

구분		통합인증	분야(인증기준 개수)
ISMS-P	ISMS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3 관리체계 운영(3) 1.2 위험관리(4)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3 외부자 보안(4)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7 암호화 적용(2)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2.2 인적보안(6) 2.4 물리보안(7) 2.6 접근통제(7)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2 재해복구(2)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4)

6) 혜택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KISA 등의 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 또는 보안관계 전문기업 지정시 해당항목 만점, 용역 및 위탁 연구 등 계약자 선정시 가점 혜택 등이 제공됨.

〈표 5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혜택

기관	인증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시 '업무 수행능력 심사평가표'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시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정보보호 인증기업 항목에 만점(5점) 부여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의 보호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 권고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대학의 원격교육설비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취득을 권고
KI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구매·제조, 용역 및 공사, 위탁연구 등에 있어 계약자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7) 인증제도 현황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결과 총 1,010건의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아 운영중임.

〈표 59〉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현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18건	326건	330건	136건
총 1,010건			

8) 시사점

- 다양한 인증 혜택은 적극적인 인증기관의 인증평가 참여 의지를 유도하여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표준으로 환경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역시 인증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함.
- 그러나 고가의 인증비용이 필요하며 심사대상 기업의 내부 발전을 촉진하는 부분은 미흡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인증비용 책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기업 및 기관의 외부 비즈니스적 성격이 강함.

3. 사례분석의 종합적 시사점

가. 인증제도 조사결과 개요

- 인증제도에 대한 사례분석 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60〉 문체부 인증제도 조사결과 개요

구분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예술 후원인증	여가친화 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	스포츠친화 기업인증
법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16조	「관광 진흥법」 제48조의10	「국민체육 진흥법」 제16조의3
평가 기관	위탁운영 기관 추천 및 문화체육 관광부 승인으로 인증심사 위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수련시설 협회, 평가위원회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지역문화 진흥원	한국관광 품질인증 사무국,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 및 자문 위원회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지정한 전문심사 기관(한국 경영인증원)
평가 종류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서류심사, 면접조사	서류평가, 1차현장평가, 2차암행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 방법	계량/비계량 평가	-	계량/비계량 평가	계량/비계량 평가	계량/비계량 평가	계량/비계량 평가

구분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예술 후원인증	여가친화 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	스포츠친화 기업인증
평가 기준	1.설립목적의 달성도 2.조직·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5.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6.공적책임	1.운영계획 2.청소년이용 3.활동 프로그램 4.조직 및 대외협력 5.종사자 및 시설 6.발전노력 및 종합평가	문화예술후 원매개단체: 1.조직역량 2.조직운영 체계 3.문화예술 후원매개 4.사업추진 현황 문화예술후 원우수기관: 1.조직역량 2.문화예술 후원 운영체계 3.문화예술 후원성과 4.대외수상 실적	1.여가친화 제도 2.여가친화 문화 3.가점	1.시설 및 서비스 2.위생 및 청결 3.소방안전 4.인적 서비스	1.운영체계 2.제도와운영 3.운영성과 4.가점
평가 절차	1.사업준비 2.사업착수 3.평가실시 4.사후관리 5.성과관리	1.인증신청 2.인증시설 개선 3.현장실사 4.인증심의 5.인증확정	1.신청공고 및 신청접수 2.서류심사 3.현장평가 4.인증심사 위원회 5.인증결과 발표 및 인증수여	1.기업신청, 접수 2.서류심사 3.설문조사 4.면접조사 5.선정결과 발표 6.인증식	1.인증신청, 접수 2.서류평가 3.1차 현장평가 4.2차 현장평가 5.결과심의 및 인증결정 6.인증유지	1.홍보 2.신청접수 3.심사 4.심의인증

〈표 61〉 타분야 인증제도 조사결과 개요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노인장기요양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38조, 54조, 60조 및 6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47조~제54조
평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건강보험공단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증기관: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평가자문위원회 심사기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정 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평가 종류	서면평가, 현장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 방법	-	A~E의 5개 등급	인증위원회신의 의결, 인증결과 통보
평가 기준	1. 조직형태 2. 유급근로자고용 3. 사회적목적의실현 4.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6. 정환의 필수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사용	1. 기관운영 2. 환경 및 안전 3. 수급자 권리보장 4. 급여제공과정 5. 급여제공결과	1. 관리운영체계수립 및 운영 2. 보호대책 요구사항 3.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요구사항
평가 절차	1. 인증계획공고 2. 상담 및 컨설팅 3. 인증신청 및 접수 4. 서류검토, 현장실사 계획수립, 현장실사 5.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추천 6. 국토보고자료제출 7. 인증심사 8. 결과안내 및 인증서 교부	1. 계획공고 2. 평가실시 3. 결과공표	1. 준비단계 2. 신청단계 3. 심사단계 4. 인증단계

나. 인증제도 조사 시사점

1) 인증제도를 통한 피인증기관의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가능

- 인증제를 통해 사업의 현황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인증제도를 통해 해당 기관의 기본 기능을 유지여부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확인함으로써 피인증기관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기본 운영여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2) 인증절차의 유연성을 통해 피인증기관의 수용성 제고

- 피인증기관의 인증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력 소모 최소화를 고려해야 함.
- 인증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이 인증을 받기 전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가 채점 자료 제공함으로써 인증을 받기위해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센터에서 자체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사례나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운영 길잡이를 배포하여 활용해 왔던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 인증사례에서 보면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시행하고 2차로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다면적 평가를 진행함. 생활문화센터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여 서류평가와 현장조사를 인증절차에 도입할 수 있음.

- 인증제도는 각 기관의 표준화를 요구하게 되므로 피인증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인증기준이 제안됨. 하지만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주민주도의 공간이자 주민주도 운영이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표준화보다는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기본여건에 대한 필수여건은 표준화 기준으로 제시하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기준은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각 인증제도는 법적으로 필수인증을 받거나 피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후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포상, 상장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함.
- 인증받은 생활문화센터는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하며 인증내용을 홍보하여 지역민들의 센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인증제도를 통한 센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IV. 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

1. 개요

가. 현황조사 개요

- 현황조사 기간 : 2022년 8월 30일 ~ 2022년 11월 30일
- 현황조사 방법 : 현장방문 대면 인터뷰
- 현황조사 대상 : 2022년도 기준, 전국 173개소 생활문화센터 중 생활문화센터 23개관 센터장 또는 실무담당자
- 현황조사 기관 : 전국 총 23개 센터 방문

〈표 62〉 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

구분	운영주체	지역	운영
농어촌 (10개소)	민간위탁 (5개)	강원 춘천	춘천문화재단 시민문화팀
		경기 양평	양평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충남 서천	지역영상문화사회적협동조합
		충북 괴산	괴산문화원
		전남 여수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직영 (4개)	강원 양구	양구 군청
		충북 음성	음성 군청
		전북 김제	김제 시청
		경북 영덕	영덕 군청
	주민자율 (1개)	전남 화순	주민자치위원회

구분	운영주체	지역	운영
도시 (13개)	민간위탁 (7개)	경기 성남	서현 문화의집
		서울 광진	광진 문화원
		전주 인후	전주 문화원
		충북 충주	충주중원문화재단(충주시에서 변경)
		인천 연수	연수문화재단
		광주 서구	광주 서구문화원
		대구 달서구	달서문화재단
	직영 (5개)	경기 동두천	동두천 시청
		경기 하남	하남 시청
		광주 북구	북구청
		부산 총무동	부산 서구청
		부산 동대신3동	부산 서구청
	주민자율 (1개)	서울 가산	주민자치회

나. 현황조사 인터뷰 구성내용

- 일반적인 센터 운영 현황(조례, 운영구조)
- 세부적인 센터 운영 현황(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인력)
- 인증제 관련 의견(찬성 또는 반대, 중립)
- 센터 활성화 방안(예산지원, 네트워크, 협회 등)

다. 현황조사 인터뷰 결과

- 전국 생활문화센터 중에서 대면 인터뷰에 응한 23개 센터의 센터장 또는 실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함.

- 현장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임.
- 대면 인터뷰 연구에 대해 대부분 담당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센터도 있었음.
-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연구 방식에 대해 센터 담당자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임. 센터에서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진흥원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
- 평소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어도 대화의 기회가 마땅치 않은데 직접 대면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니 더욱 협조적이며 긍정적인 실무 담당자와 센터장들이 많았음.

라. 기타 의견

- 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에 적극적인 센터도 있지만, 개별 센터의 여건상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음.
- 현황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센터 업무가 너무 바빠서, 센터장의 부재, 센터 업무가 전혀 없어서, 센터 개별적인 사정으로 등이 있었음.

2. 인터뷰 내용

가. 현황조사 인터뷰 질문 내용

- 현황조사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활성화, 인증제도 도입, 기타 의견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1) 일반현황

- 운영방식 (직영, 민간위탁, 주민자치)
- 공간유형 (신규개관, 기존시설, 유희시설 사용)
- 운영인력 조직도 및 인원
- 운영예산
- 예산지원 혹은 후원처

2)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연간, 중장기 계획
- 조례 여부
- 운영위원회 여부
- 관리방식 (사용자 자율, 운영자 관리 등)
- 이용자 수, 이용 대상
- 운영 프로그램 종류
- 동아리 운영 및 대관업무 관련

-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 운영 활성화 방안

3) 인증제도 도입

-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 인증제도 도입 시 기대
- 인증제도 도입 시 참여를 위한 조건
- 인증제도를 통한 활성화 방안

4) 기타 _ 지역 센터의 특성

나. 현황조사 질문에 대한 의견

- 인터뷰 질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잘 응답해주었으나 일부 내용은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음.
- 코로나 19 전후로 센터의 업무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져서 인터뷰 진행 시 현재 시점보다는 과거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이 주를 이룸.
- 동호회 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세세하게 다루어져야 하나, 생활문화센터마다 상황이 달라, 기본적 내용의 질의만 수록함.
- 담당자가 센터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잘 해주는 편이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센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실무 이외에는 잘 몰라서 세세한 인터뷰가 어려웠음.

- 센터 업무가 중단된 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전무하여 센터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인터뷰가 진행됨.
- 활발하게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는 문제점이 거의 없다고 함.

3. 인터뷰 세부 내용³⁾

가. 일반 현황

1) 운영방식(직영/민간위탁/주민자치)

- 민간위탁 센터와 직영의 경우 전체적인 운영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운영 주체에 따른 세부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특성상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기본적인 업무는 비슷하나 자율성이 커질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의견반영 등이 이루어짐.
- 직영의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권이 없어서 다소 행정 위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표 6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방식

구분	직영	민간위탁	주민자치
방식	시도군 직접 운영	민간단체가 위탁하여 운영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실질적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음 •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변경되는 시도군의 경우는 센터 업무에 대한 인지도 안된 상태임 • 직영의 경우 대관 업무만 하는 경우가 더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위탁 자체 단체의 특성이 생활문화센터에 반영되어 나타남 • 주민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제공 등 민간위탁의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 센터장의 마인드와 의지에 따라 센터운영 방향이 결정되므로 센터장의 역할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와 생활문화가 혼용되어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려고 함 •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자치 운영의 장점을 가지고 운영이 이루어짐

3) 센터들의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터뷰 이후 보고서에 센터명은 익명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	직영	민간위탁	주민자치
비고	• 예산의 규모와 지원이 센터 운영에 결정적임	• 예산의 규모와 지원이 센터 운영에 결정적임	• 예산의 규모와 지원이 센터 운영에 결정적임

2) 공간 유형

- 센터별로 공간의 구조와 특징이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기존공간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 건물로 구성되어 있음.
- 어떤 공간이든 대부분 주로 동호회를 통한 주민들의 이용이 많으며 주민센터, 문화원 건물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센터도 있음. 또한 다목적 공간이나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센터도 있음.
- 자율운영이라고 해도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함. 해당 사무를 일절 위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현재는 지자체가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이고 주무관이 관리 대행이라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주무관이 중간에서 대행하고 있음.

〈표 64〉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

구분	신설	리모델링
특징	생활문화센터가 독립된 건물형태	생활문화센터가 다른시설(기존공간)에 포함
운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의 특성을 살려 건축하는 경우가 많음 • 신설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을 기획하기도 함 • 프로그램과 동아리 운영에 최적화된 공간구조를 기획함 •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의 이유로 신설하기도 함 • 마주침 공간 등을 잘 살려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또는 주민센터 등 기존 건물의 특성이 이어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명칭은 생활문화센터이지만 주민들의 인식에는 기존 건물의 명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공간의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방향 역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 •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기도 함 •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이 없는데 생활문화센터가 대체로 활용되어 긍정적인 공간으로 기능함 • 지속적인 리모델링 및 확장을 원하는 센터도 있고 관련하여 준비중인 센터도 있음

3) 운영인력 및 조직

- 전반적으로 센터마다 문화인력 관련 전문가로 전담인력이 최소 1명 이상 필요함을 강조함. 전담 인력이 없거나 기간제, 계약제로 운영되는 경우 장기적인 센터 업무의 이해도, 안정도, 충실도 등이 떨어진다고 봄.
- 민간위탁의 경우 센터장의 재량으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이 풍부해야만 가능함.
- 직영의 경우 담당 주무관이 배치되어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무관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센터의 수행업무와 활성화에서 차이가 크게 남.
- 직영의 경우 문화관련 부서, 도시재생과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부서에서 센터를 담당함. 주무관이 센터에 관심이 많은 경우, 문화기획자의 역할을 하며 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을 많이 하는 편임.
- 직영의 경우 담당 주무관이 1년-2년 주기로 자주 바뀜. 이 경우 주무관이 문화관련 경력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적이라고 함.
- 실무 담당자가 생활문화센터 초반에 여러 명 채용이 되었다가도 급여가 적거나 업무가 제한적이라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센터도 있음.
- 실무 담당자로 채용이 되더라도 담당자의 역량이나 의지는 강한데 실제 업무에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재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담당자가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센터마다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센터 업무 특성상 대관업무가 거의 필수로 있는데 오전, 오후, 주말, 야간까지 이어지는 대관업무 특성상 최소 2명 인력이 번갈아가며 일을 해야 함. 1명이 외부 연수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생활문화센터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인력으로서 대우가 필요함.

4) 운영 예산 및 지원(후원)

- 지역 센터별로 예산이 크게 상이하여 예산의 범위가 넓음.
- 예산 지원이 클수록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조례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운영 현황

1) 연간, 중장기 계획

- 대부분 센터에서 연간 계획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음. 다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함.

- 진흥원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센터도 단년 예산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은 어렵다고 함.
-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하거나 문화센터나 영화관 등과 같이 운영하는 등 독자적인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가 있어서 역할이 다양함.
- 생활문화센터는 사전 시민조사를 통해 센터 운영방향을 계획함.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함.
- 한 센터의 경우 올해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구청장의 성향, 선거 등 정치적 이슈로) 향후 문화재단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함(이런 점이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는 문제라고 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임.
- 코로나 기간 동안 침체된 생활문화센터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음.

2) 운영 위원회 여부

- 대부분의 센터에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 일부 센터에서는 추후 운영위원회 조직을 예정하고 있음.
- 전북 지역의 센터에서만 운영위원회가 1년에 1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운영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중심으로 하는 센터들이 많은 편임.

3) 동호회 운영

-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임.
- 코로나 전에 활성화된 동호회도 코로나 기간에 다소 위축되고 활동이 어렵기도 했음.
- 현재 동호회 활동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차차 회복되고 있음.
- 특정 동호회가 센터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호회 운영에 대한 기준이 요구되기도 함.
- 센터마다 동호회 활동이 전무하기도 하고 수십 개의 동호회가 운영되는 곳도 있음.
- 개별 센터마다 동호회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동호회는 4~50대 중심으로 음악, 미술, 춤 동호회 등이 있음.
- 등록된 동호회 110개 정도, 지원해주는 동호회는 20여 개(2년에 한번씩 갱신, 삭제 관리) 정도로 활성화된 동호회를 운영하는 센터도 있음.
- 동호회 지원의 경우 설립 3년 이하의 기초단체와 3년 이상의 중견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활성화된 센터도 있음.
- 선점 동호회로 인한 폐해와 수익활동을 하는 동호회를 필터링하기 위해 강사들에 대한 활동 정보 모니터링을 주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동일한 강사가 활동하는 복수 개의 동호회는 금하는 센터도 있음.
- 중장년, 노년층 동아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동아리 신청 시 내부적으로 우대하는 센터도 있음.

- 생활문화센터 운영은 동호회 운영 지원과 대관,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음.

4) 운영 프로그램

- 활성화 지역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 간의 격차가 매우 큼.
- 활성화된 센터는 자체 프로그램이 최소 10개 이상임.
- 모 센터의 경우 43개의 문화 교육강좌가 진행되며 그 외 시간에는 대관하고 있음.
- 모 센터의 경우 4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에서 공지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것이 센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운영하는 센터가 있음.
- 주민들 모두가 활용가능한 공공성을 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 센터 운영을 하기도 함.

〈표 65〉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구분	활성화 지역 센터	비활성화 지역 센터
운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임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센터에 모임을 등록하면 대관 기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센터도 있음 • 동아리 네트워크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 • 센터내 공간이 없는 경우에 동아리는 센터를 대관하는 것보다 축제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함 •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개발, 공모하여 주민들에게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센터의 역할을 비중있게 보고 일하며 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홍보도 안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센터가 위치하기도 함 • 프로그램이 전무한 센터도 있고, 생활문화센터가 폐쇄적인 경우도 있음

5) 센터 이용자

- 도시와 농촌 지역 상관없이 대부분 40-60대 혹은 고령 여성의 이용률이 가장 높음.
- 센터 이용 시간대에 따라 이용자 범위가 달라짐.
- 도시 지역의 경우, 청년, 신중년 연령층의 참여도도 꽤 있으나 대개는 주부 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짐.
- 개개인의 주민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동호회 중심, 각종 프로그램 중심으로 센터 이용자가 많음.

〈표 66〉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대상

구분	도시형	농촌형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과 동아리 위주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함 •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서 센터 이용이 용이함 • 도시에 있지만 이용자는 전반적으로 주부, 4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고령자 위주로 센터를 이용함 • 도시 지역이 아니라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향하는 센터도 있음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수요의 증대에 따라 공간 조성 필요 • 유사한 문화시설이 많아 생활문화센터만의 정체성 확립 • 다른 문화시설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바빠서 참여가 어려움 • 농촌 지역의 특성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 상 야외 홍보, 관 주도형 홍보가 효과적임.

6) 운영 활성화 방안

가) 전담직원 관련 의견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련 전문가 또는 활동가가 필요함.

-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함. 생활문화센터 전담인력을 공모를 통해 채용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지가 필요함. 센터 활성화는 운영주체의 마인드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음.
- 기존에 문화예술교육사 같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센터에 배치되는 방안이나 중앙에서 교육받은 전문성있는 인력이 파견되는 근무방식도 고려 가능함.

나) 법적 지위 확보 및 예산지원

-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됨. 시 조례 등의 뒷받침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아야 활성화가 가능함.
-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이 중요함. 법적 지원근거 마련과 전문 조직(재단) 등이 필요함.

다) 주민주도 활동 지원 및 센터 인지도 고취

- 생활문화센터의 차별화는 주민 주도성에 있음. 주민들의 주체성이 차별화의 주요 요소임. 평생학습센터는 강사 중심이고, 생활문화센터는 학생 중심이며 주민에게 대관하는 공간 중심임.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은 전문가와 행정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관 주도로 진행되었을 경우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됨.
- 주민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함,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각 센터만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특성화 노력이 필요함. 지역 문화의 허브로 문화매개자와 기획자를 육성,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민 밀착형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사전 수요파악을 통해 센터 운영 계획이 작성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공간이 필요함.
- 센터에 대한 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함.
- 신중년세대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이 센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라)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 센터 간에 광역별, 지역별 연계나 네트워크가 필요함, 문화의 집의 경우 협회가 있어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없음. 역량교육도 초기엔 있었다가 없어짐.
- 협회를 만들고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생활문화센터 업무 메뉴얼의 공유가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협회, 유관 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역할 분담도 필요할 수 있음. 인위적인 분담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영역이 겹치거나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오히려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함. 한문연 같은 기관연합회가 필요함.

7) 조례

- 조례여부에 따라 예산지원 상황이 다름. 조례가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센터가 있음.

- 조례가 아예 없거나, 문화의 집 조례는 있는데 센터 조례는 없는 경우, 조례는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여 유명무실한 경우, 실제 조례가 실효성있게 작용하는 경우 등 조례 관련한 내용 역시 센터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큼.

다. 인증제도 도입

1) 인증제 도입에 대한 의견

가) 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

- 인증제도가 있다면 사업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센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직접 받기 어려움.
- 인증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증제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센터들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나) 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일부 센터의 경우 100%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인증제를 실시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음.
- 인증제를 진행하게 되면 민간위탁이거나 예산지원이 많은 곳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지자체에서도 인증에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특별히 추가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임.
- 조성가이드에 따라 센터가 조성되었는데 인증제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음. 인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여 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우수 센터 인증으로 줄 세우기 방식이

아닌 성공사례를 내는 곳은 인증하고 시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할 것임. 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전담인력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을 듯함.

- 일상이 삶이고 생활문화인데 인증제를 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의 개념과 취지에 맞지 않음. 문화는 말랑하고 유연함이 장점인데 인증제를 하면 딱딱해짐.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행복이 목적인 공간임.
-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전문적인 기관이라 인증제를 해도 되지만 생활문화센터는 아마추어를 위한,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전문적인 인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음. 오히려 생활문화센터의 존립가능성을 더 논의해야 함. 타겟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인증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보여주기 식 인증제는 안하는 것이 나옴.
- 인센티브가 있다면 참여를 고민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참여유인이 어려울 듯함. 현재 다수의 센터는 운영인력도 부족하여 인증제 준비 등이 버거울 것임. 센터간 차이도 크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 인증제를 한다면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고려해봐야 함.

다) 인증제 참여에 대한 행정적 부담 및 경쟁적 인증에 대한 부담감

- 인증제를 하게 되면 직영이나 직원이 부족한 곳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함. 시상/포상 등도 이전에 있었으나 없어짐. 잘 운영되는 곳이나 민간위탁하는 곳 등만 받아왔기 때문임. 담당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인증제 지속운영은 어려울 것 같음.
- 타 기관 인증사례를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센터가 인증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임. 특히 센터는 대관중심으로 운영되는 되는 곳이 많으며, 센터 담당이 2년마다 순환보직의 일반

행정직이 다수임에 따라 담당자의 인증제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을 수 있음. 이는 인증제 준비보다는 오히려 센터 운영 및 홍보에만 국한 될 가능성이 높음.

- 인증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증제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센터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하지만 센터의 역량이나 규모, 시스템을 갖춘 곳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역 센터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보완되어야 인증제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할 수 있음.
- 좋은 평가를 받으면 홍보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평가를 받기 위한 다른 생활문화센터와의 경쟁에는 자신이 없음.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협소하다보니 참여인원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준을 참여대상의 다양성, 공간의 실효성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음. 시설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증제로 인한 이득이 없어 보임

라) 인증제 추진 방식

- 주민들이 인증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들이 인증에 대한 호응이 없거나 센터 인증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센터가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음. 하지만 주민이 인증을 원하면 안할 수 없음. 인센티브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센터에서 사업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것임.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함.
- 인증제 평가는 서류로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와서 보고 인증하기 바람. 서류로는 센터의 현 상태를 인지할 수 없음. 어떤 식으로든 평가가 실시되면 실무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일거리가 생기

는 것임. 잠시 인증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인증제 준비만 하게 될 것임. 프로그램 등 운영 시 인증평가를 위한 내용으로 전환될 것임.

2)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

가) 활동가 지원 및 컨설팅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활동가의 지원이 필요함. 지역주민을 효과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코칭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함.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면 주기적인 컨설팅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음.
- 문화인력 발굴 사업과 같은 방식이 효과적이었음. 문화인력과 센터와의 연결, 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문화단체와의 연결이 필요함. 워크숍, 간담회 등도 필요함.

나) 다양한 인센티브 고려

- 센터 담당자에게 표창, 직원 해외연수, 인센티브 등의 포상을 줄 수 있으면 센터 담당자들이 성취감을 느낄 것임.
- 자율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함. 인증제를 통해 예산지원이 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예를 들어 시설 개선, 프로그램 사업,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예산 등이 필요함.
- 우수 센터에 대한 인증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인증제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발표회 등을 하게 되면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 한 군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가능함.

3) 인증제 관련 인터뷰 결과

- 생활문화센터 현황조사를 통한 총 23개 기관에서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인식을 정리한 내용으로 전체 센터의 의견은 아닌 일부 의견임을 밝힘.
- 전국의 광역별, 도시별 골고루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므로 전반적인 센터 담당자들의 의견을 살펴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인증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증은 곧 평가라고 이해하고 상당수 센터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다만 인증제가 가진 장점이나 실제 인증제로 인해 각 센터에 혜택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담당자들의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라. 시사점

1)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의견

가) 기본여건으로 조례, 예산, 전담인력 필요

- 활성화된 센터와 비활성화된 센터의 차이는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며, 이런 차이는 예산과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조례 여부에서 차이가 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본여건으로 조례, 예산,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는 담당자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나) 주민주도 공간으로서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

-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센터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취향 공동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는 유사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센터만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요구됨. 주민이 자율적, 자발적, 주도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생활을 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것이 센터의 주된 목적이라고 여김.
- 특정 동회나 모임의 공간이 아닌 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취향 반영 공간, 다양한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함.

다) 생활문화센터 특성화 및 홍보 필요

- 지역만의 상황에 맞는 특성화 노력이 필요함.
- 주민 인지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2) 인증제에 대한 의견

-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으로 성과 인증으로 센터 활성화 기여 및 성공사례 공유가 가능함.

- 인증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표준화 인증에 대한 우려 : 인증제는 센터를 표준화하는 것인데, 센터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양성이 훼손됨.
 - 경쟁적 인증에 대한 어려움 : 예산과 인력이 있는 기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임.
 - 인센티브 부족 혹은 필요없어 인증제에 참여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음
 -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 인증제참여를 위한 보고서 작성 어려움.

- 구체적으로 인증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증은 곧 평가라고 이해하고 상당수 센터에서는 인증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인증제가 가진 장점이나 실제 인증제로 인해 각 센터에 혜택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담당자들의 인증제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제고될 가능성이 있음.

V. 생활문화센터 설문조사 분석

1. 개요

가. 설문개요

- 설문조사기간 : 22년 10월 17일 ~ 31일 온라인 조사 22년 10월 28일 오프라인 조사
- 설문조사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조사 및 오프라인 조사 (10월 28~29일, 생활문화교류대회(강릉) 참가)
- 설문조사 대상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 설문조사 응답율 : 온라인조사 45건 / 오프라인 25건 총 70건
- 설문조사 한계
 - 설문조사 결과는 전체 생활문화센터의 의견이 아닌 일부 의견임.
 - 센터가 비활성화되거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전담직원이 있는 센터가 주로 응답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설문문항 구성

1) 응답자 및 생활문화센터 기본 정보

- 응답자 정보(성별, 연령, 문화경력 확인을 위한 원소속 질의)
- 운영주체 건립방식, 운영예산, 전담직원 수, 센터 주변환경, 센터 운영시간

2)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정체성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복수응답)
- 향후 제공하고자 하는 주요 프로그램
- 센터 공간 정체성 및 운영주체에 대한 질문
-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 인증제 필요 여부
- 인증제 방식에 대한 질의
- 인증제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필요한 기준, 기관에서의 장점)

2. 생활문화센터 기본정보

가. 응답자 특성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 응답센터는 전체 대상 센터 173개 중 70개 센터가 응답하여 39%의 응답율을 보여주었음.
-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준 시도는 광주 75%, 서울 60%, 대전 및 전북 50% 순이었으며, 응답 수로는 전북 8곳, 경기 7곳, 광주 6곳, 충남 5곳 순이었음.

〈표 67〉 지역별 응답자 분포

지역	응답수	전체기관수	응답율
강원	2	15	13%
경기	7	19	37%
경남	4	14	29%
경북	1	10	10%
광주	6	8	75%
대구	4	11	36%
대전	2	4	50%
부산	4	21	19%
서울	3	5	60%
세종	0	2	0%
울산	0	3	0%
인천	3	10	30%
전남	2	12	17%

지역	응답수	전체기관수	응답율
전북	8	16	50%
제주	0	6	0%
충남	5	11	45%
충북	2	6	33%
미응답 및 중복응답	17	-	-
합계	70	173	31%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70명 중 여성 67.1% 남성 32.9%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30대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5.7%), 50대이상(18.6%), 20대(8.6%), 60대 이상(1.4%) 순으로 나타남.

〈표 68〉 응답자 성별

성별	빈도	비율(%)
여자	47	67.1%
남자	23	32.9%

〈표 69〉 응답자 연령

연령	빈도	비율(%)
30대	32	45.7%
40대	18	25.7%
50대	13	18.6%
20대	6	8.6%
60대이상	1	1.4%

- 전체 응답자 70명의 원 소속을 살펴본 결과 문화관련 공공기관 직원(34.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관련 민간조직 직원(27.1%), 일반 민간조직 직원(18.6%), 일반 공공기관 직원(10%), 일반직 공무원(문화 분야 무관)(8.6%), 문화 연관 공무원(1.4%) 순으로 나타남.
- 센터 담당자 중 문화관련 경력자 61.4%와 미경력자 27.2%로 나타남.

〈표 70〉 응답자의 원소속

원소속	빈도	비율(%)
문화관련 공공기관 직원	24	34.3%
문화관련 민간조직 직원	19	27.1%
일반 민간조직 직원	13	18.6%
일반 공공기관 직원	7	10%
일반직 공무원(문화 분야 무관)	6	8.6%
문화 연관 공무원	1	1.4%

2)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문화예술 운영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을 위하여 문화관련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제 응답자의 약 30%가 문화와 관련이 없었음.

나. 생활문화센터 특성

1) 설문결과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는 민간위탁이 57.1%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지역/주민 자율과 주민자율과의 경우 각각 18.6%와 4.3% 비율을 차지함.
- 센터가 건립되는 방식으로는 기존시설 변경이 57.1%의 비율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유휴시설변경(32.9%), 신규건립(10%)의 비율로 나타남.
- 센터 주변환경 특징으로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거점형, 생활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생활권형 62.9%, 도시지역 62.9%, 농어촌지역 37.1%, 거점형 37.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표 71〉 응답한 생활문화센터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센터 운영주체	민간위탁	40	57.1%	
	지자체 직영	14	20%	
	직영/주민자율	13	18.6%	
	주민자율	3	4.3%	
센터 건립 방식	기존 시설 변경	40	57.1%	
	유휴 시설 변경	23	32.9%	
	신규 건립	7	10%	
센터 주변환경 특징	지역	도시지역	44	62.9%
		농산어촌지역	26	37.1%
	형태	생활권역	44	62.9%
		거점형	26	37.1%

다. 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1) 설문결과

- 센터 운영주체 별 전담직원 수를 살펴본 결과 민간위탁이 평균 3.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직영 2.8명, 주민자율 1.6명, 직영/주민자율 0.8명 순으로 나타남.
- 정규직의 평균 수는 지자체 직영이 평균 1.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민간위탁 1.2명, 직영/주민자율 0.53명, 주민자율 0.3명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민자율 1.3명, 지자체 직영 1.1명, 직영/주민자율이 0.23명 순으로 나타남.
- 민간위탁은 비정규직 인력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지자체 직영은 정규직(공무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72〉 센터 운영주체별 전담직원 수

센터 운영주체	평균(명)	정규직 평균(명)	비정규직 평균(명)
민간위탁	3.4	1.2	2.1
주민자율	2	0.3	1.3
지자체 직영	2.8	1.7	1.1
직영/주민자율	0.8	0.53	0.23

- 생활문화센터의 정규직 인원과 비정규직 인원을 살펴본 결과 정규직이 없는 센터가 34.3%, 1명의 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는 40%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0명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1명(24.3%) 또는 2명(22.9%)의 비정규직 인원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남.

〈표 73〉 정규직과 비정규직 특성

정규직	빈도	비율(%)	비정규직	빈도	비율(%)
1명	28	40%	0명	23	32.9%
0명	24	34.3%	1명	17	24.3%
2명	8	11.4%	2명	16	22.9%
3명	8	11.4%	3명	9	12.9%
5명	1	1.4%	4명	2	2.9%
8명	1	1.4%	5명	2	2.9%
			15명	1	1.4%

2) 시사점

- 센터의 전담인력 수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을 제외하고는 평균 3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경우 주민자율과 직영/주민자율은 평균 1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증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인력 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력지원 및 고용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요구됨.

라. 생활문화센터 운영예산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예산에 대한 질문 응답 결과 총 70부의 설문 중 54부가 응답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사업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함. 그 외 16부의 응답을 확인한 결과 0원이 18.6%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 4500만원, 2000만원이 각각 1.4%로 나타남.

2) 시사점

- 운영예산에 대한 응답률이 저조하여 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움.

마.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의 평일 운영시간을 살펴본 결과 9:00-18:00시 운영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00-21:00시 운영이 24.3%로 높게 나타남.

〈표 74〉 평일 운영시간

평일운영시간	빈도	비율(%)
6:30-22:00	1	1.4%
8:30-21:00	2	2.9%
9:00-16:00	2	2.9%
9:00-18:00	27	38.6%

평일운영시간	빈도	비율(%)
9:00-19:00	1	1.4%
9:00-20:00	1	1.4%
9:00-21:00	17	24.3%
10:00-17:00	1	1.4%
10:00-18:00	6	8.6%
10:00-21:00	5	7.1%
10:00-22:00	7	10%

- 생활문화센터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살펴본 결과 35.7%의 센터가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았으며, 운영하는 경우 10:00-17:00시가 28.6%로 높게 나타남.

〈표 75〉 생활문화센터 토요일 운영시간

토요일 운영시간	빈도	비율(%)
운영하지 않음	25	35.7%
6:30-10:00	1	1.4%
9:00-13:00	2	2.9%
9:00-17:00	5	7.1%
9:00-18:00	9	12.9%
10:00-15:00	1	1.4%
10:00-17:00	20	28.6%
10:00-18:00	3	4.3%
10:00-21:00	2	2.9%
10:00-22:00	2	2.9%

- 생활문화센터의 일요일 운영시간을 살펴본 결과 82.9%의 센터가 일요일에 운영하지 않았으며, 운영하는 경우 8:00-16:00시가 5.7%로 높게 나타남.

〈표 76〉 생활문화센터 일요일 운영시간

일요일 운영시간	빈도	비율(%)
운영하지 않음	58	82.9%
9:00-17:00	1	1.4%
9:00-18:00	4	5.7%
9:00-12:00	1	1.4%
10:00-17:00	2	2.9%
10:00-18:00	2	2.9%
10:00-21:00	1	1.4%
10:00-22:00	1	1.4%

- 생활문화센터의 휴무일을 살펴본 결과 공휴일/주말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말이 35.7%, 일요일 11.4%, 공휴일 7%, 월요일 4.3%로 나타남.

〈표 77〉 생활문화센터 휴무일

휴무일	빈도	비율(%)
공휴일과 주말	34	48.6%
주말	18	25.7%
일요일	8	11.4%
공휴일	7	10%
월요일	3	4.3%

2)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의 평일 운영시간은 대부분 9:00~18:00시로 직장을 다니는 시민들은 방문에 제한이 생기며, 휴무일 역시 공휴일/주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 시민들이 휴무일에 예술 활동을 하고자 센터 방문을 희망하더라도 센터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생활문화센터의 유입을 증대시키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정체성

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생활예술 부분이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동체활동(17.9%), 생활운동(14.3%), 생활공예(13.6%), 생활기술(6.4%), 생활지식(1.4%)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78〉 생활문화센터 제공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생활문화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생활예술(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60	42.9%
	공동체활동(지역축제, 지역문화기록, 장터마켓, 봉사활동 등)	25	17.9%
	생활운동(건강증진 활동, 요가, 테라피 등)	20	14.3%
	생활공예(의류, 장신구, 생필품 공예 등)	19	13.6%
	생활기술(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9	6.4%
	미디어(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5	3.6%
	생활지식(과학, 역사, 심리치료 등)	2	1.4%

- 생활문화센터가 제공해야하는 프로그램에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31.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교류 활동이 30%, 문화예술 동호회 모집 및 지원이 20%, 공간 대관 서비스 17.1%, 공간 활용 서비스 1.4%순으로 나타났음.

〈표 79〉 생활문화센터가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

	구분	빈도	비율(%)
생활문화센터가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	문화강좌 (교육) 프로그램	22	31.4%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교류 활동	21	30%
	문화예술 동호회 모집 및 지원 (동호회 가입을 위한 소개, 활동 가이드제공 등)	14	20%
	연습실, 공연장, 회의실 등 공간 대관 서비스	12	17.1%
	카페, 도서 라운지 등 상시 공간 활용 서비스	1	1.4%

2)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중 센터가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문화강좌(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교류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음.
- 센터 담당자는 센터가 대관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문화센터 공간정체성 및 운영주체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정체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생활문화센터에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강한 긍정(91%)을 보이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활동공간과 대관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문항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긍정 86%). 운영자의 역할을 민간 전문가(긍정 57%)에게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40%)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운영 주체가 주민이 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부정 36%).

〈표 80〉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정체성과 운영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정체성과 운영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생활문화센터는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4.60	91%	3%	50	14	4	2	0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이다.	4.40	86%	4%	42	18	7	2	1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대관공간이다.	3.87	76%	7%	15	38	12	3	2
생활문화센터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3.63	57%	16%	19	21	19	7	4
생활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3.14	40%	27%	8	20	23	12	7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2.94	31%	36%	6	16	23	18	7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시사점

-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인력에 관한 것으로 나타남.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정체성과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도 상주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생활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평균4.47),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4.44), 홍보활동(4.34) 순으로 응답함.
- 다음으로 지역 문화시설간의 협업(4.31), 지역의 주민관심과 참여(4.27), 생활문화센터간의 네트워크(4.26),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교육(4.2) 순으로 필요성이 나타났음.

-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와 차별성(4.09), 지자체의 법적 뒷받침(3.97), 생활문화센터의 우수성(3.83), 지자체장의 관심(3.83) 등에 대해서도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함.

〈표 81〉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업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4.47	89%	4.3%	45	17	5	2	1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	4.44	89%	4.3%	43	19	5	2	1
생활문화센터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4.34	89%	2.9%	35	27	6	1	1
생활문화센터과 지역 문화시설간의 협업	4.31	84%	4.3%	37	22	8	2	1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관심과 참여	4.27	83%	2.9%	33	25	10	2	0
생활문화센터간의 네트워크	4.26	86%	5.7%	34	26	6	2	2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4.2	81%	5.7%	33	24	9	2	2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 및 차별성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점 부각)	4.09	76%	5.7%	28	25	13	3	1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뒷받침 (지자체 조례)	3.97	71%	8.6%	26	24	14	4	2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우수성	3.83	67%	11%	21	26	15	6	2
센터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시장, 군수 등) 관심	3.83	64%	11%	25	20	17	4	4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 전문성을 갖춘 운영인력 및 홍보활동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보임.
- 따라서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받고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예산, 전문인력 등을 지원하고 홍보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면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관련 질문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 필요성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인증제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반응(긍정 62%)을 보이고 있음.

〈표 8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생활문화센터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80	62%	7.1%	18	26	21	4	1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진행 방식을 예시로 들어 참여 의향을 확인해본 결과, 필수기준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방법이 평균 5점 만점에 3.3점으로 가장 긍정적 응답이었으며, 다음으로 최소한의 조건만 달성하는 인증방법이 평균 3.23, 우수 운영시설에 대한 표상 및 인증방법이 평균 3.21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83〉 인증제도의 진행 방식에 따른 참여 의향

인증제에 참여할 의향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안전진단과 같이 필수 기준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 예) 인증 평가 내 몇 개의 필수기준 달성	3.3	48%	24%	10	24	19	11	6
품질인증과 같이 최소한의 조건만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 예) 인증 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3.23	41%	22%	9	20	25	10	6
우수 운영시설 평가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우수 운영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인증 예) 우수한 기준을 달성한 소수의 우수 운영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3.21	42%	27%	11	19	21	12	7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들은 인증제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증제도 진행방식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기대사항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참여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해 본 결과 “없다”는 응답(45.60%)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가 20.30%의 비율을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 예산과 인력확보가 각각 8.90%로 나타남.

〈표 84〉 인증제 참여로 기대되는 사항

기대되는 사항	빈도	비율(%)
없음	36	45.60%
활성화	16	20.30%
예산	7	8.90%
인력확보	7	8.90%
포상/인센티브	5	6.30%
지속적인 관리	4	5.10%
프로그램의 다양화	2	2.50%
법적 뒷받침	1	1.30%
센터간 네트워크	1	1.30%

2) 시사점

- 인증제 참여로 기대되는 점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증제도에 대한 센터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절차가 마련되어 제안되어야 함.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우려사항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참여가 어렵다면 가장 우려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낮은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남 (19.25%).

- 다음으로 과중한 업무 8.20%, 인력의 부족으로 참여가 힘들다는 응답과 지원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각각 4.10%로 나타남.

〈표 85〉 인증제 참여의 우려되는 사항

우려사항	빈도	비율(%)
없음	35	47.90%
낮은 전문성	14	19.20%
과중한 업무	6	8.20%
인력부족	3	4.10%
지원불균형	3	4.10%
예산부족	2	2.70%
지자체 해산으로 지위불안	2	2.70%
운영 메뉴얼 부재	1	1.40%
사용자의 협조	1	1.40%
공무원의 낮은 관심	1	1.40%
복잡한 인증절차	1	1.40%
불이익	1	1.40%
부담감	1	1.40%
운영 어려움	1	1.40%
경쟁	1	1.40%

2) 시사점

- 인증제 참여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우려사항으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됨.

라.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참여 유도를 위하여 필요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력지원이 평균 5 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시설 보수 및 확장을 위한 예산지원(4.21)이 높았으며, 우수 프로그램 제공(4.13)과 사업예산 지원(4.13)에 인센티브 필요가 동일한 평균을 나타냄.
- 제시된 응답에는 모두 평균 4점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임.

〈표 86〉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4.3	79%	4%	38	17	12	2	1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시설 보수 및 확장예산)	4.21	76%	4%	36	17	14	2	1
생활문화센터 우수 프로그램 제공	4.13	77%	9%	31	23	10	6	0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예산)	4.13	71%	6%	34	16	16	3	1
지역 내 타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4.1	70%	6%	34	15	17	2	2
생활문화센터 홍보를 위한 지원 (예산 및 컨설팅 지원)	4.06	70%	6%	29	20	17	4	0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컨설팅	4.01	67%	3%	26	21	21	2	0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정부(지자체 포함) 차원의 포상	3.99	70%	7%	27	22	16	3	2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시사점

-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시설예산 및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함.
- 제시된 인센티브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은 각 센터가 다양한 인센티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마. 인증제도의 유지기간

1) 설문결과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적당한 인증 유지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3년이 44.3%의 비율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24.3%), 2년(18.6%), 1년(12.9%) 순으로 나타남.

〈표 87〉 인증유지 기간

인증제 유지기간	빈도	비율(%)
1년	9	12.9%
2년	13	18.6%
3년	31	44.3%
5년 이상	17	24.3%

2) 시사점

- 인증을 받고 1년 이후 다시 인증을 준비하는 것은 기간이 촉박하다고 여겨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짐.
- 5년 이상의 기간이 가장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5년 이하로 기간을 잡고 인증을 유지 시키는 것이 적당한 기간으로

보이며, 그중 빈도가 가장 높은 3년이 가장 적절한 인증유지 기간으로 판단됨.

5.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관련 질문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1) 설문결과

- 설문에서 제시한 기준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및 이전 연구에서 예시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기준임.
- 생활문화센터 인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결과로 모든 기준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주었음.
- 생활문화센터의 영역별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공간운영(평균 4.05), 자원조성(4.04), 인력(4.02), 법제도(4.0)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으며, 홍보(3.95), 운영계획(3.88), 프로그램(3.86), 성과관리(3.8), 주민참여(3.75)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88〉 인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구분	세부영역	필요기준 (5점 척도)	순위
공간운영	기본방향수립, 시설 안전관리	4.05	1
자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4.04	2
인력	운영조직, 인력확보 및 관리, 업무분장	4.02	3
법제도	법적근거	4.00	4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홍보	3.95	5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계획 수립	3.88	6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주민 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3.86	7
성과관리	성과관리,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80	8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3.75	9

- 생활문화센터 인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전체에 대해 평균 3.49 이상으로 모두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보여주었음.
- 이중 평균 4점 이상인 기준은 인력의 업무분장(4.16), 시설의 안전관리(4.13) 인력확보 및 관리(4.1), 주민의견 창구운영(4.01), 법적 근거(4.0)이었음.
- 평균 3.9점 이상인 기준은 공간운영의 기본방향 수립(3.96), 운영계획의 비전 및 전략수립(3.91), 운영계획의 지역현황 분석(3.9), 운영계획의 실행계획수립(3.9)임.
- 그 외 기준으로는 연차별 운영계획과 운영조직이 평균 3.79, 주민참여 위원회가 평균 3.49의 응답을 받았음.

〈표 89〉 인증평가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세부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영역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법 제도	법적근거	지자체 조례 제정, 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4	76%	9%	26	27	11	3	3
주민 참여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4.01	71%	4%	26	24	17	1	2
	주민참여 위원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3.49	56%	21%	16	23	16	9	6
운영 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3.9	71%	7%	20	30	15	3	2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3.91	71%	4%	20	30	17	0	3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3.9	69%	4%	17	31	19	2	1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3.79	66%	6%	15	31	20	2	2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영역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3.79	63%	9%	19	25	20	4	2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4.1	79%	7%	29	26	10	3	2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4.16	81%	4%	28	29	10	2	1
공간 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3.96	71%	7%	23	27	15	4	1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4.13	80%	4%	27	29	11	2	1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3.83	64%	9%	23	22	19	2	4
	주민 제안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3.9	71%	9%	21	29	14	4	2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3.86	69%	7%	19	29	17	3	2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3.99	73%	6%	24	27	15	2	2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3.9	69%	4%	19	29	19	2	1
재원 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 예산 수립	4.07	71%	6%	31	19	16	2	2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4	67%	6%	29	18	19	2	2
성과 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3.79	64%	6%	16	29	21	2	2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81	50%	6%	18	17	21	2	2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인증평가지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추가 주관식 응답)

- 예시로 제시된 인증기준 외에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제시된 인증기준 외에는 미응답하거나 없다고(82.40%) 응답하였으며, 이 외에 센터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및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각 2명씩 있었음.

〈표 90〉 인증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	빈도	비율(%)
미응답 혹은 없음	56	82.40%
센터의 특성을 확인하는 기준	2	2.90%
지역공동체커뮤니티	2	2.90%
이용자 수	2	2.90%
이용자만족도	1	1.50%
문화조직과 협력	1	1.50%
이용자 공간활용도	1	1.50%
생활문화센터인지 확인하는 기준 (명칭만 생활문화센터가 존재)	1	1.50%
지자체 관심도	1	1.50%
프로그램 다양성	1	1.50%

3) 시사점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상위권 영역은 모두 센터의 운영기반과 관련된 기준임. 공간운영, 자원조성, 인력, 법제도 등의 영역은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음.

- 그 외 응답한 기준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홍보, 운영계획, 프로그램, 성과관리, 주민참여 등의 기준임.

나. 인증기준 중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강점 기준

1) 설문결과

- 제시된 기준 중 생활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한 기준에 대해 질문하였음. 이는 인증기준에 대해 각 센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수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 전체 영역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응답이 평균 3.2 이상으로 모든 기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음.
- 생활문화센터의 영역별 포함되어야 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운영계획(3.56), 공간운영(3.55), 프로그램(3.52), 자원조성(3.48), 홍보(3.46), 법제도(3.4), 성과관리(3.33), 인력(3.32), 주민참여(3.2) 순이었음.

〈표 91〉 인증기준 중 강점이 있는 기준

구분	세부영역	강점기준 (5점 척도)	순위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계획 수립	3.56	1
공간운영	기본방향수립, 시설 안전관리	3.55	2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주민 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3.52	3
자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3.48	4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홍보	3.46	5

구분	세부영역	강점기준 (5점 척도)	순위
법제도	법적근거	3.4	6
성과관리	성과관리,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33	7
인력	운영조직, 인력확보 및 관리, 업무분장	3.32	8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3.2	9

-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운영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기준이 평균 3.8로 가장 많은 긍정적 응답을 받았으며, 공간운영의 시설안전 관리(3.66), 프로그램의 정책프로그램참여(3.63), 운영계획의 비전과 전략수립, 운영계획의 연차별 계획수립, 프로그램의 주민 제안프로그램이 각 평균 3.5점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자원조성(3.49), 홍보의 이용자 조사와 개발(3.49), 자원조성의 예산확보(3.47) 등이 긍정적 응답을 받았음.

〈표 92〉 생활문화센터의 강점 기준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영역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법제도	법적근거	지자체 조례 제정, 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3.4	47%	21%	17	16	22	8	7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3.29	40%	17%	11	17	30	5	7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3.11	40%	30%	11	17	21	11	10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영역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운영 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3.44	51%	14%	10	26	24	5	5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3.5	49%	10%	12	22	29	3	4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3.8	63%	3%	15	29	24	1	1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3.5	50%	10%	9	26	28	5	2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3.29	40%	24%	14	14	25	12	5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3.3	47%	26%	14	19	19	10	8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3.36	43%	19%	13	17	27	8	5
공간 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3.43	36%	17%	11	14	23	8	4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3.66	54%	7%	16	22	27	2	3
프로 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3.63	54%	7%	14	24	27	2	3
	주민 제안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3.5	51%	13%	10	26	25	7	2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3.44	44%	16%	15	16	28	7	4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3.49	43%	11%	14	16	32	6	2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3.43	44%	13%	10	21	30	7	2
재원 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 예산 수립	3.49	51%	13%	12	24	25	4	5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3.47	49%	14%	13	21	26	6	4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영역	평균	긍정	부정	5	4	3	2	1
성과 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3.34	43%	17%	10	20	28	8	4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31	41%	17%	9	20	29	8	4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 2: 아니다. 1: 매우 아니다

2) 시사점

- 전반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준분야는 운영계획, 공간운영, 프로그램, 재원조성 등 센터가 실제로 운영하는 성과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법제도, 성과관리, 인력, 주민참여 등 생활문화센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평균점수는 낮았음.
- 센터 담당자가 운영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여건보다는 운영에 더 집중한 결과로 판단됨.

6. 설문조사에 대한 시사점

가. 생활문화센터 인력 및 예산 확보관련

-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함.
- 생활문화센터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결과 센터 담당자중 문화관련 경력자가 61.4%였으며 미경력자는 27.2%임. 문화에 대한 경력의 부족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센터의 운영인력 중 정규직이 없는 경우가 34.3%, 1명의 정규직을 보유하고 있는 센터는 40%로 나타남.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에서는 센터 직원을 최소 3명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통해 운영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및 프로그램 관련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활동공간과 문화예술 대관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함. 이는 센터가 주민 주도의 활동공간이자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파악됨.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생활예술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교류 활동을 많이 응답함.
- 생활문화센터 공간대관 운영보다는 문화강좌나 지역주민 교류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센터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관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속적인 예산지원, 운영인력, 홍보활동, 지역문화시설 간 협업,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 등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인력이라는 필수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임. 이후 홍보활동을 통해 센터를 알리고 센터 프로그램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또한 센터와 지역문화시설간의 협업, 센터간 커뮤니티 형성 등 주변의 지원과 컨설팅, 협업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라.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관련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필요성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가 긍정이었으며,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참여에 대한 우려점으로 낮은 전문성, 과중한 업무, 인력부족 등 인증제 참여를 준비해야 하는 담당자의 부담이 나타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가 센터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간소화하여야 함.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인력지원과 예산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항목이 가장 긍정적이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인센티브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면 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생활문화센터 인증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이를 센터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인센티브에 있어서 센터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3) 생활문화센터의 영역별 필요기준 및 강점 기준

- 설문결과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 영역별 필요기준에 대한 응답에서 공간운영, 자원조성, 인력, 법제도를 가장 필요한 기준으로 응답함. 이들 기준은 센터 운영의 기본여건과 관련된 기준임.
- 강점을 가진 기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운영계획, 공간운영, 프로그램, 자원조성 기준에 강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기준은 센터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기준들임.

〈표 93〉 생활문화센터의 영역별 필요기준 및 강점 기준

구분	세부영역	필요 기준	순위	강점 기준	순위
공간운영	기본방향수립, 시설 안전관리	4.05	1	3.55	2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4.04	2	3.48	4
인력	운영조직, 인력확보 및 관리, 업무분장	4.02	3	3.32	8
법제도	법적근거	4.00	4	3.40	6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홍보	3.95	5	3.46	5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계획 수립	3.88	6	3.56	1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주민 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3.86	7	3.52	3
성과관리	성과관리,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80	8	3.33	7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3.75	9	3.20	9

- 인증제 필요기준에서 역시 높은 점수를 받은 공간운영, 재원조성, 인력, 법제도 부분이 필수기준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 센터의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강점기준을 성과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음.

VI. 전문가 인터뷰 및 센터 담당자 FGI

1. 인터뷰 및 FGI 개요

- 인터뷰 목적 : 생활문화센터 현황, 인증제도 및 활성화 방안 의 건청취
- 인터뷰 대상 : 생활문화 관련 연구자 및 현장 센터 담당자 (지역 문화진흥원과 인터뷰 대상 협의)
- 인터뷰 내용
 - 생활문화센터 현황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 인증기준, 인센티브 제안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표 94〉 인터뷰 일정

구분	전문가	인터뷰 날짜	소속
전문가 사전 인터뷰	A 전문가	22년 9월 6일	광주 북구문화의집
	B 전문가	22년 9월 7일	전북연구원
	C 전문가	22년 9월 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센터담당자 FGI	각 센터 담당자	22년 10월 29일	인천 학산문화센터
			광주 남구생활문화센터
			청주생활문화센터
			치평생활문화센터
전문가 및 센터 담당자 FGI	A 전문가	22년 11월 15일	서천 생활문화센터
	B 전문가		광주시 문화재단
	C 전문가		경희사이버대학교
	D 전문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생활문화센터 사전 인터뷰

- 실시 : 22년 9월 6일 8일
- 인터뷰 방식 : 전문가 온라인 줌회의
- 인터뷰 목적 : 생활문화센터 현황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 인터뷰 공통의견
 -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제시 및 센터 사후관리가 가능함.
 - 센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인력 및 조직, 운영계획, 시설검증 등의 공동인증기준과 개별 특성화 기준이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 예산 및 조직 확보, 센터에 대한 인지도 고취, 센터간 네트워크 및 전문성 교육 등이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 예산 지원 포상 등으로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가. A 전문가 의견

1) 생활문화센터 현황

- 생활문화시설과 생활문화센터는 구별됨. 생활문화시설이 더 폭넓은 문화공간을 의미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공간임.
- 시설도 공공시설이고 운영도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의 운영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함.

- 민간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나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도 있음.

2)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가) 생활문화센터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 생활문화시설은 고유성과 차별성을 가지지 않으면 문화관련된 시설이 많아 문화소비자가 찾지 않음.
- 문화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보다 다른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 지역의 센터들은 명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됨. 예산을 많이 들일 수 없으니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센터내 전문가가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함.

나) 운영인력의 전문성 고려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세워야 함.
- 인력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공공성을 가져가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은 없는 것 같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커뮤니티 활동 등이 필요함.

다) 생활문화 이용자 확산을 위한 노력

- 생활문화센터 초기에는 흔히 생활문화를 생활예술로 접근하였는데 생활문화는 의식주를 관통하는 문제임. 문화, 예술의 활동에서 추가로 생활문화, 취미 등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해야 함. 예를 들어 음식문화 프로그램,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음.
- 생활문화동아리 중심으로 벗어나야 센터 이용층이 확대될 수 있음.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되면 새로운 생활문화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이용을 꺼리게 됨.
- 센터 활성화를 위해 타겟 고객을 잘 설정해야 함. 불특정 다수보다 명확한 타겟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 등은 없는 것 같음.

3)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는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 시설이라면 가능하지만 지금의 생활문화센터는 명확한 운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듯함.
- 운영을 하는 조직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임. 결국 전문성있는 조직이 센터 활성화를 만들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증을 하거나 센터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임.
- 인증제도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로 다른 기관도 인증할 수 있을 것임.

- 인증기준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직의 전문성 등이 기준으로 가능할 것임.

나. B 전문가 의견

1) 생활문화센터 현황

-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는 법적인 부분, 현장에서의 부분이 달라 논의하기 어려우니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생활문화센터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함.
- 생활문화센터의 현장조사가 필요함. 설립 초기와 현재가 다르고, 현장마다 운영현황이 다름.
- 도시형 센터는 강좌나 대관실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대관신청에 대한 관리 인력 등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 농촌형 센터는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음. 면사무소의 주민센터를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쓴 경우도 있었으며 난타 교실, 노래교실 외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은 없었음. 관리가 안되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음. 이런 차이는 전담인력 여부에서 차이가 남. 농촌 지역의 민간 위탁센터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있어 운영하고 있어 활성화가 가능한 것임.

2)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가) 전문성 있는 전담직원

- 활성화된 센터와 비활성화된 센터를 파악해 보면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이 있는 센터는 활성화되어 있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전담직원 확보가 필수적임.

나) 센터 이용자 확대 필요

- 센터 활성화 방안은 이용객 증가가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농촌의 경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문화예술의 영역을 벗어난 프로그램이 필요함. 도시지역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임. 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

다)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센터별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타 문화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에 필요함. 평생교육학습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것도 필요함.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도 사용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예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기능을 강조하는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인증기준안에 맞는 우수사례를 찾아야 함. 우수사례를 통해 인증기준에 적용 및 이해가 가능할 것임.
- 현장조사 시 인증기준 안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지역에 있는 문화원이나 연구원에서의 지역문화연구자를 통해 인증기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인증제도에 대한 기준을 센터 운영 길잡이로 시작하는 것은 좋으나 운영 매뉴얼의 기준으로는 인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임. 생활문화센터 설립이 초기와 현재가 많은 차이가 있고,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임. 생활문화센터에 현장조사를 참고하여 운영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야 함.
-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임.
- 인증의 수준을 높여 소수의 센터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예산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됨.
- 센터의 다양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이 필요함. 도시, 농촌, 중소도시에 있느냐 운영주체가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냐에 따라 센터의 운영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인증기준과 유형별 인증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인증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국비로 운영비 지원은 어려우니 생활문화센터 야간개방 비용이나 프로그램 비용등 추가 비용에 대한 예산은 가능할 것임. 또한 장비지원, 콘텐츠 개발비용, 행사지원, 교육지원비로 가능할 것임.

- 생활문화센터의 중요성을 중앙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니 인증된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임.

다. C 전문가 의견

1) 생활문화센터 현황

- 문체부 예산으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였으나 관리가 안되고 몇몇 생활문화센터는 건립만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음.
- 특히 지자체가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행정직이 관리하는 경우는 센터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음.

2)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가)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 필요

- 일반적으로 생활문화센터는 센터의 활성화에 대해 문화센터처럼 강의실에서 강의하거나 동아리 활동 수 또는 동호회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인증제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나)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환경 차이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마다 의미가 다른 것도 고려사항임. 서울의 경우 센터가 활성화될수록 민간 영역을 침범한다는 민원이 있다고 함. 지역의 경우 문화기본권 차원에서 센터 활성화가 필요함.

- 인증제도를 통해 인구소멸지역 등 문화공간이 없는 곳에서의 센터 활성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의 생활문화센터를 인증제도로 흡수하자는 논의도 있으니 단계별로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전문인력을 가진 민간 위탁 기관의 경우에는 센터간의 네트워크 요구들이 많았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센터에 대한 교육부분에 수요가 많았음.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유사기관인 문화의 집 등과의 협업 등이 제시되었음.

다)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필요

-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이를 높일 필요도 있었으며 공간을 사용하는 가운데 이용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음. 이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3)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가) 인증제 도입 시 고려사항

-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나 센터마다 상황이 달라 쉽지 않은 부분임.
-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에 대한 의견은 운영방식, 운영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인증제를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사후관리가 가능함. 기존 생활문화센터들은 문체부 예산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에 대한 시설현황 검증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인증제를 통해 센터 시설 현황에 대한 검증,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면 사후관리의 인증제 목적을 이룰 수 있음.

나) 인증제 방식

- 시설에 대한 검증 외 조직, 인력의 전문성, 운영예산의 계획과 운영에 대해 점검 및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조직과 예산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
- 미술관·박물관 인증제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함. 인증기준이나 시스템을 차용하되 생활문화에 대한 방향성 부분을 강조함. 조성 길잡이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잘 담겨 있으니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의미를 많이 넣을 수 있음.
- 행정 측면에서 인증제를 보는 것도 필요함. 기존의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거나 지자체 평가에 넣어 상위계획에서 인증기준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다) 인증제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

-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통해 문체부에서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주거나 부처 공무원의 경우 문체부 장관상 등을 유인책으로 하여 인증제 참여를 독려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음.

3.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FGI

가. 개요

- 일시 : 22년 10월 29일 14시~15시
- 장소 : 강릉생활문화축제 중 담당자 FGI 진행
- 참석자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4명 및 연구진,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장 및 사업 담당자
- FGI목적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담당자 의견 청취

나. FGI 내용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필요성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임.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마련 시 센터마다 인력과 공간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인증제가 아닌 센터별 특성에 맞는 인증제도가 필요함(연합형 인증, 생활예술 특화형 인증).
- 인증제는 중앙 중심으로 공신력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인증유지 기간의 설정이 중요함.
- 생활문화센터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여 실적을 인정받는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적이 아닌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이 확실한 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중요함.

- 생활문화센터 운영 우수기관 인증을 할 경우 인증이 체계적이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인증되는 조건이 공간의 특성을 살려야만 함(ex.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공연에 특화된 인증제).
- 인증제가 지역으로 이관된다면 지역 내 즐거운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 센터의 존재감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임. 지자체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음.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대한 인센티브

가) 인증제에 따른 포상

- 문체부 장관상이나 지자체장에게 직접 받는 포상.

나) 자율적인 예산 지원

- 센터의 예산 편성의 독립, 예산 집행 권한의 독립이 필요함.
- 센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 또는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생활문화센터에서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
- 생활문화를 위한 자체적인 인력 양성이 필요함.

라)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의 지원

- 생활문화센터에 기획자 매칭이나 예술가 매칭을 지원해 준다면 센터가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도움이 될 것임. 다만 확실적인 프로그램 보급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대해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임.

4. 전문가 및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FGI

가. 개요

- 일시 : 22년 11월 15일 16시~17시
- 장소 : 온라인 줌 회의 진행
- 참석자 : 학계 전문가 2명,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2명 및 연구진, 지역문화진흥원 담당자
- FGI목적 : 연구진이 마련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나. FGI 내용

1) 인증제의 방향성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정체성에 대해 알릴 수 있어야 함.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함.
- 몇 년에 한 번씩 단기적으로 준비하여 인증을 받는 건 유명무실한 정책이므로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연구진이 제시한 단계별 기본, 특성화, 우수 센터 인증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함.
- 인증제 카테고리를 단계별로 하되, 각 지역별 특성화(인력운영,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를 강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제 필요함.

- 권역별 네트워킹, 우수인증기관과 신규기관 간의 멘토와 멘티, 도농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벤치마킹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센터의 고립성을 네트워킹을 통해 극복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제도가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이후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함. 인증을 받을 시 부여되는 혜택을 제시해야 함.

2) 인증제에 대한 우려점

- 센터 입장에서 볼 때 인증제 참여를 위한 확실한 동기가 제시되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과 같은 공간이나 지역에 적합한 인증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음.
-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실무자들이 받을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센터의 경우 담당자 존재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인증제를 준비할 인원이 있는지 의문임. 참여 센터가 부족하다면 인증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인증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인증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5. 종합 시사점

가. 생활문화센터 다양성 고려 및 정체성 확립

-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 생활문화센터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증제도와 활성화 방안을 구성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인증제를 통해 이를 제안할 수 있음. 유사 문화시설이 많고 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생활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에서 차별성이 없어진 경우도 많음. 인증제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통해 센터의 정체성 확립이나 지자체의 관심 및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센터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인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를 통해 센터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인증제 준비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확보가 가장 우선시 됨. 미 운영센터의 경우 조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음. 전문성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나 네트워크가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함. 센터의 상황 등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할 것임.
- 포상 등 센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음.
- 센터 간, 지역 문화시설 간의 협업과 네트워크가 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센터에 대한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아 다양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는 생활문화센터 정책에 대한 후속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증된 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요구됨.

Ⅶ.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제안

1. 생활문화센터 인증 체계 설계

가. 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체계 설계

1) 인증제도 설계 과정

-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도 방향성 도출을 위해서 [그림 2] 과 같이 인증 요구사항, 인증 목적, 생활문화센터 설립 목적, 인증제도 설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인증제 설립 방향성을 도출함.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 목적은 단계적 목적을 설정하고 인증형태와 인증기준 또한 단계적으로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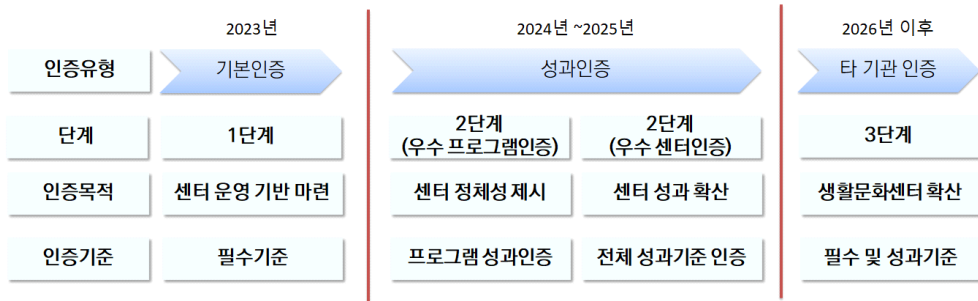


〈그림 2〉 인증제 도출 방향성

2) 단계적 인증

가) 시기별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설계

- 인증대상은 단기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의 국비지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센터를 대상으로 함. (22년 현재 173개소)⁴⁾



〈그림 3〉 인증제도 설계 방향성

- 1단계 시기는 기본 인증으로 필수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함.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도입 초기로 각 센터가 인증제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시기는 성과인증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인증을 진행함.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생활문화센터의 개별 프로그램을 평가받으며, 우수 센터인증은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함. 각 센터는 센터의 상황에 맞게 성과인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 3단계 시기는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임.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가 정착된 이후로써 생활문화시설

4) 경기 의왕 레슬레파크복합문화센터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사업 선정 대상으로 인증범위에 포함함.

중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타 생활문화시설을 인증하여 생활문화시설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도입시기	2023년	2024-25년	2026년 이후
대상	2022년 현재 설립된 생활문화센터		전체 생활문화시설
인증 평가	기본인증(필수인증)	성과인증 유형1: 우수프로그램 인증 유형2: 우수센터 인증	타 시설로 인증제 확대
목적	센터 운영기반 마련 센터 운영현황 파악	센터 정체성 및 성과 확산 센터 운영 활성화	생활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센터로 인증

〈그림 4〉 단계별 인증제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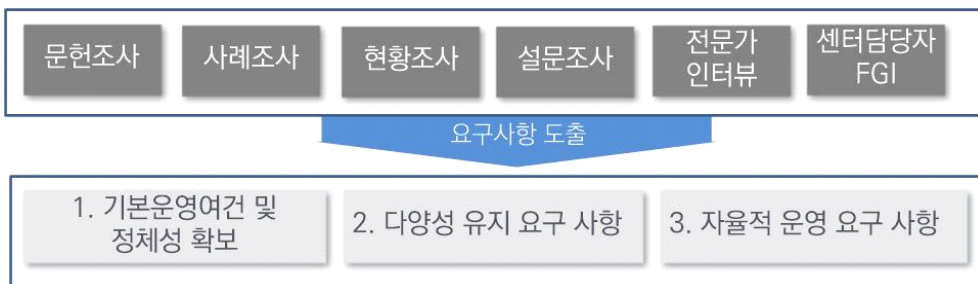
-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 : 센터의 운영 여건과 현황을 확인하고 비활성화된 센터가 확인되면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기반 여건을 필수기준으로 설정하여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우수 프로그램 인증) : 생활문화센터가 인증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함. 해당 프로그램이 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성과 확산에 모범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성과인증을 함. 성과인증을 통해 센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수 성과가 벤치마킹되어 궁극적으로는 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우수 센터 인증) : 생활문화센터 중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던 센터를 우수 센터로 인증함. 전반적인 센터 운영의 우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강화와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전반적인 활성화와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생활문화시설 인증 (가칭)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유사기능의 타 기관을 인증함. 타 기관 인증을 통해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를 확산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인센티브는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보조금) 확대와 포상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제에 대한 요구사항

1) 조사 개요

-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설계 및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인증제 설계의 중요한 원칙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함.



<그림 5> 요구사항 도출

- 본 연구는 문헌조사, 사례조사,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센터 담당자 FGI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각 조사에서 <표 9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여 인증제 설계에 반영함.

<표 95> 조사 결과

구분	조사 결과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설립된 센터 • 생활문화의 정의와 정체성 확인 •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인 (조례, 운영 규정, 예산, 조직 등)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도를 통한 사후관리 기능 • 유연한 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 기관의 수용성 제고 •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확인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현황에 대한 이해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에 대한 센터 의견 조사 • 생활문화센터의 인증 필요성, 인증 표준화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 등을 확인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현황 확인 • 생활문화센터의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 • 운영길잡이로 만든 세부 항목 기준에 대한 긍정적 의견 확인 • 필수 평가 기준으로 법·제도, 자원 조성, 인력, 공간 운영 등으로 응답함 • 성과 평가 기준으로 운영계획, 프로그램, 성과관리, 주민참여 제시됨
전문가 인터뷰 및 센터 담당자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대한 필요성 확인 • 인증제에서 센터의 다양성 고려 및 정체성 확립 필요. • 인증제에 대한 우려점 해소 및 인센티브에 대한 제시 강조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요구사항

- 본 연구는 생활문화센터가 인증제를 통해서 확립해야 할 생활문화센터의 주요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가) 생활문화센터 기본 운영 여건 및 정체성 확보

- 생활문화센터 기본 운영 여건 확보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설문 조사와 생활문화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비활성화되거나 미운영을 되고있는 센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는 센터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인 필요 : 센터 관계자 인터뷰에서 생활문화센터가 타 문화예술기관 및 기타 생활문화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만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함. 센터의 정체성 확인과 강화를 위해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센터의 목적과 운영방향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센터의 정체성을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 설문조사 결과 생활문화센터의 담당자는 주민자율 공간 대관시설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 공간 등으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음. 관계자 조사 결과 생활문화센터만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음.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센터의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센터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여건 확인 및 우수 사례 선정 등을 통해 센터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다양성 및 자율성

- 생활문화센터 현장조사와 설문조사에서 센터 운영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균일한 기준으로 센터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하였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표준화는 필요하나 각 센터별, 지역별 차별화된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센터 운영이 지방에 이양되면 이런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는 어느 정도의 표준화를 강제할 수밖에 없으나 센터 인증제도로 인한 획일적인 센터 운영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수용해야 함(줄 세우기를 위한 인증은 반대, 센터 여건상 인증제 및 인증으로 인한 인센티브 불필요 등).
- 센터 인증제의 평가 기준 설정 시 최소한의 표준을 위한 필수 기준과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운영 기준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대한 부담 및 인증제 정착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별 다양한 환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인증제 참여로 센터 근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미 예산과 운영 인력이 확보된 센터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운영 인력이 없는 센터는 지역 문화진흥원의 사업에 참여할 의지도 가지지 못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추가적인 활성화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임.
- 각 센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높으며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인증이 필요함. 인증에 대한 행정력 소모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평가 기준을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 기존 배포하고 인지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를 활용하여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기준을 평가하는 기본인증을 통과하면 운영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 행정부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센터의 필요에 따라 성과인증에서는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함으로써 센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인증제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법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임. 또한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안되어야 함.

라)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대한 의견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의 법적 지위, 예산, 조직 확보 등 필수적인 여건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됨. 이를 필수기준으로 인증제를 구상함. 기본 인증을 통해 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임.
- 센터 활성화를 위해 센터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홍보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이를 인증기준으로 설정하여 센터가 이 부분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

〈표 96〉 조사결과의 인증제 반영

조사결과		인증제 반영
인증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도를 통한 사후관리 인증제를 활용한 정체성 확립 인증제를 기반으로한 센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운영/비활성화 센터 관리와 전체 센터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인증제 목적으로 설정
센터 인증 및 활성화 기본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반 확립 및 예산 및 조직 구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기준을 갖춘 기본인증으로 센터의 기본 운영 여건 확인 및 확립
다양성 및 자율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의 표준화에 대한 우려 센터 다양성 반영 요구 센터 자율성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인증 외 다른 인증 유형은 센터의 자율성, 다양성 보장 센터 운영 체계성 확인 센터 운영 계획에 따른 성과인증으로 센터 자율성, 다양성 보장
인증 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부족 및 전문성 부족 행정 업무의 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운영 길잡이를 활용한 인증기준으로 부담 최소화 기본인증을 통해 전담인력 확보가능 우수 프로그램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으로 유형을 나누어 센터 필요에 따라 인증제 활용
인증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 정착을 위한 지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법적 정책적 뒷받침 제시 인센티브 제안(센터 자율 예산확보 강조)
센터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본 여건 조성 필요. 활성화를 위한 기본여건, 홍보,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인증으로 활성화 기본 여건 확립. 홍보,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다. 인증제 목적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있음.
- 부차적으로는 설립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성격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조사에 따른 요구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인증제도에 반영하고자 함.

1)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립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는 센터 운영의 필수적인 여건을 필수기준으로 평가하여 각 센터가 지속가능한 운영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설립되고 ‘생활문화센터’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현재 173개 소임.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여 센터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현장조사 결과 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센터가 미운영되는 센터도 상당수임.
- 미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예산과 조직이 부족하거나 센터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곳이 많았음.
- 미운영되는 센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여건의 기반을 필수기준으로 제시하여 재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2)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는 센터의 프로그램 및 성과를 인증하고 우수 운영센터를 지정함으로써 센터 정체성을 확립하고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가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점이 희미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이 다양하게 건립되면서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

3)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우수 프로그램이나 우수 사례들이 확산되어 센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제시되었음.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통해 센터에서 그간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 성과를 인증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센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우수 운영센터 지정을 통해 타 센터가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생활문화센터 성과 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라.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설계 방향성



〈그림 6〉 인증제 설계방향성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설계 방향성은 요구사항, 인증제 목적 등에서 도출됨. [그림]은 인증제의 설계 방향성을 나타냄.

1)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인증

-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을 위한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필수기준을 통해 인증함.
- 생활문화센터는 설립 시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되었기 때문에 센터의 시설에 대한 평가나 인증은 시급하지 않음. 다수의 센터가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활성화되어 미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 현재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점검보다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센터 중 비활성화되거나 미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파악하고 해당 센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통해 유도해야 함.
- 1차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은 필수기준을 통해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본적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기본 인증은 최소한의 필수기준을 제시하여 생활문화센터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

2) 정체성 확립

-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 기존 성과에 대한 인정과 우수사례 인증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운영센터 인증

- 센터에 적합한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운영센터를 선정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타 센터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조사 시 센터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생활문화센터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줄세우기식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센터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성과인증은 센터가 제시한 개별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전체적인 운영을 인증하는 우수센터 인증으로 유형을 구분함.
-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생활문화센터가 인증받고자 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성과로 인증하는 것임. 각 생활문화센터는 각자의 다양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성과로 인증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확산과 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수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인증사례를 공유하거나 우수센터의 노하우를 주변 센터에 전수할 수 있음.
- 현황조사에서 생활문화센터 담당자들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 및 지역 문화단체와의 교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이와 같이 인증제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운영센터 사례를 선정한다면 이를 벤치마킹하는 센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인증제에 대한 수용성 강화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들의 참여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임.
- 생활문화센터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을 독려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기본여건 확립을 위한 평가 기준은 필수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필수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미인증 센터에 대해 진흥원 사업 배제함으로써 각 센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단, 센터 담당자의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필수기준을 낮게 설정해야 함.
- 성과 인증은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센터에 대한 인증이기에 센터의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함. 이를 위해 센터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적절한 포상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 이러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관은 문체부와 지자체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법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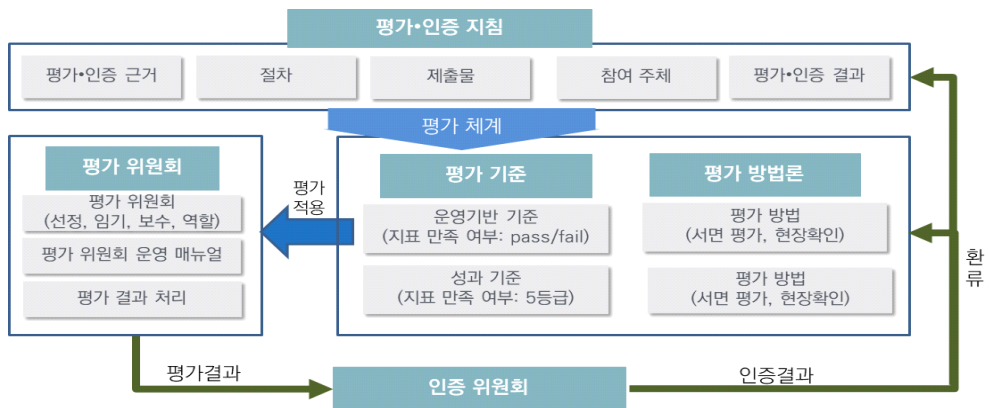
5)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증

- 중장기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공인된 생활문화센터로서 인증할 수 있을 것임.
- 현 연구에서는 2022년까지 설립된 생활문화센터를 인증대상으로 삼고 있음. 각 생활문화센터가 기본적인 시설과 기능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확인하고 성과 및 운영실적의 체계성과 우수함을 판단함.
- 현재 생활SOC시설, 민간설립 시설 등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기관과 공간들이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음.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로 해당 시설이 인증함으로써 생활문화 활성화 및 생활문화센터 확산 정책을 추진할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음.

2. 생활문화센터 인증체계 설계

가. 평가·인증체계 구성

- 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체계는 평가·인증 지침, 평가체계, 인증체계로 구성되며, 평가지침을 근거로 평가체계 및 인증체계가 구성되며, 각 체계간 환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됨.
- 평가·인증 지침은 평가·인증의 근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며, 평가체계는 평가지침을 근거로 생활문화센터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소를 정의함.
- 평가·인증은 평가 체계와 인증 체계로 구성되며, 동 체계는 각각 평가위원회와 인증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되며, 각 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



〈그림 7〉 평가 체계

- 평가 체계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론으로 구성되며,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론으로 구성됨.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인증 위원회에 송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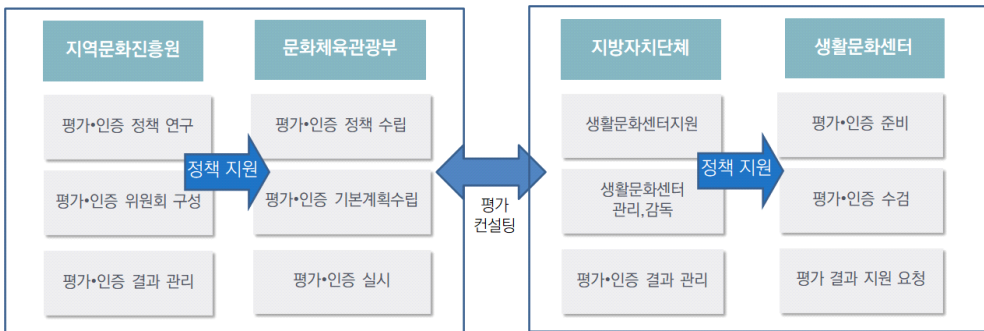
〈그림 8〉 인증 체계

- 인증체계는 평가가 평가 지침을 준수하여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적 행위로서, 인증 지침, 인증서 관리, 사후관리 승인 등으로 구성됨.

나. 평가·인증 지침

- 평가지침은 평가·인증의 원칙 사항을 정의하는 문서로, 평가·인증 근거, 절차, 제출물, 참여주체, 평가·인증 결과의 활용 등을 정의하며, 평가·인증 주기, 평가참여주체, 평가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함.
- 평가·인증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이며, 평가·인증 주기는 3년으로, 평가의 종류는 기본인증(1단계)와 성과 및 우수센터 인증으로 구성됨.
- 평가절차는 평가 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 및 인증, 인증 결과의 통보,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됨.

- 제출물은 지역생활문화센터가 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문서를 의미하며, 문서는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 등으로 구성됨.
- 평가·인증 체계의 중요 참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각 주체의 중요 역할은 <그림 9>와 같음.



<그림 9> 평가·인증 참여자 역할

- 평가·인증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생활문화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됨.

다. 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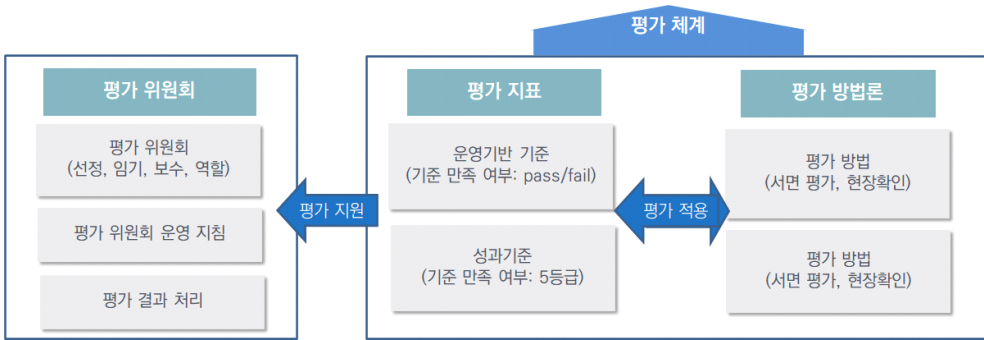
- 평가체계는 평가 실행에 필요한 요소와 요소 간 관련성을 의미하며, 평가체계의 구성요소는 평가 기준, 평가 방법론, 평가위원회 등으로 구성됨.
- 평가 기준은 운영기반 평가 기준, 성과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며, 운영기반 평가 기준은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성과 평가 기준은 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구분함.

- 평가 방법론은 평가 절차와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 절차는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실행되며, 평가 방법은 서면 평가, 현장 확인으로 구성됨.
- 평가도구는 평가 만족 여부를 결정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동 평가에서는 평가 제출물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요함.



〈그림 10〉 평가정보시스템 예시 (여가친화인증)

-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로서 위원회 운영 지침은 평가위원의 자격, 선정 방법, 임기, 보수, 역할 등을 정의함함.
- 평가위원회 운영 지침은 위원회 개최 및 운영 방식, 위원회 의결 규정, 평가 결과 보고 방식 등을 정의함.
- 평가위원회는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생활문화 센터를 평가함.



〈그림 11〉 평가 위원회 역할

라. 인증 체계

- 인증체계는 평가 계획 수립부터 평가, 평가 결과 도출 등의 모든 과정이 평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평가 결과 인증서 관리 및 사후 관리 승인 등으로 구성됨.



〈그림 12〉 인증 체계

- 인증 지침은 인증 절차, 인증 기간, 인증 위원회 구성, 인증서 관리, 사후 관리 승인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문서로서 인증 체계의 근간을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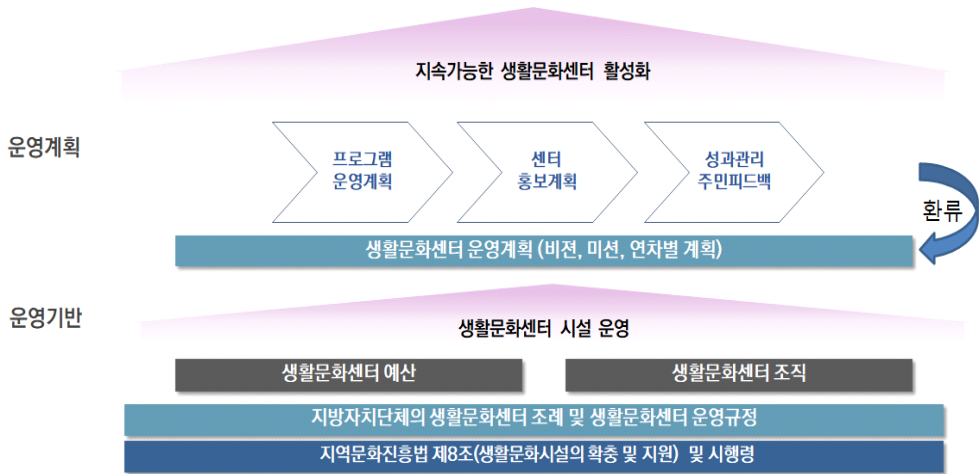
- 인증 지침은 인증위원회 운영, 인증 의결, 인증 위원의 자격, 임기 및 역할 등을 규정함.
- 인증위원회는 평가자를 포함할 수 없고, 평가위원회와 독립된 주체로서 운영되어야 함.
- 인증은 평가 승인, 평가 재실시, 평가 결과 보류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평가 승인은 평가위원회의 의결 사항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의사결정이며, 평가 결과 수정은 평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수정 하자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사결정이며, 평가 보류는 평가의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평가를 미승인하는 의사결정임.
- 인증위원회는 인증 승인을 획득한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소정의 인증패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동 인증의 유효 기간 동안 인증서 사용을 승인함.
-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획득한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조건 유지 여부에 대해 평가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받아 사후관리를 승인할 수 있음.

3. 평가 기준 설계

가. 평가기준 설계 배경

1)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구조

- 인증 평가 기준은 운영기반에 대한 필수 기준과 운영성과에 대한 성과기준으로 구성됨. 필수 기준은 센터의 운영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구성하고 성과기준은 센터의 프로그램 성과와 체계적인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구성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있음. 평가 기준 설계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됨.
-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기본조건은 법적지위 확보, 법적 근거에 의한 예산 및 조직 확보, 구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시설 운영 계획임. 이러한 기본조건을 운영기반의 필수 평가 기준으로 설계함.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는 생활문화센터의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있음. 운영계획은 생활문화센터의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세부 계획은 연간 계획 및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홍보계획으로 세부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센터 운영의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성과관리 계획도 세워야 함.
- 주민들이 참여한 성과 피드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운영계획을 추진할 수 있음.



〈그림 1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 구조

2) 생활문화센터 평가 기준 조사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평가 기준을 설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진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를 평가 기준의 샘플로 설정함.
- 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샘플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샘플 기준 중 센터 인증을 위해 필수적인 기준을 5점 척도로 질의함. 질의한 모든 기준이 평균 3.75점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평가됨.
- 센터 담당자의 응답 결과 공간운영, 재원조성, 조직 및 인력, 법제도 영역이 가장 필수적인 기준이라고 응답함. (평균 4점 이상, 5점 척도)
- 이러한 기준은 센터의 운영 기반으로 설정하는 기준으로 법적지위, 물적 및 인적 기반이 되는 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그 외 영역은 홍보, 운영계획, 프로그램, 성과관리, 주민참여 등의 영역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영역은 센터의 운영계획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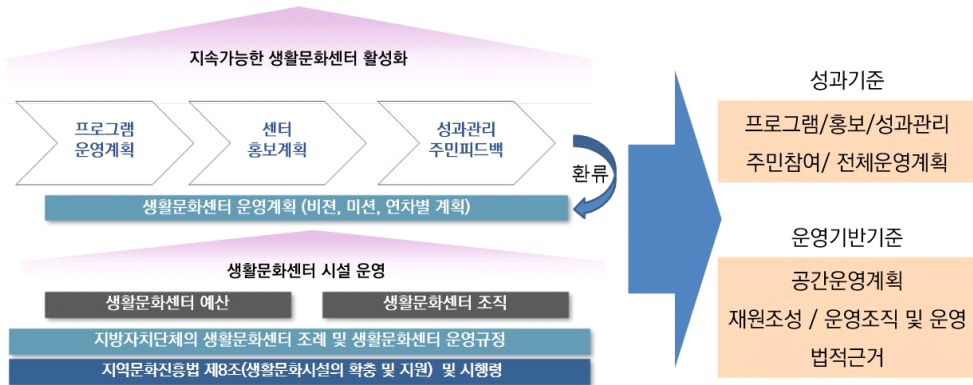
성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관련된 기준임. 이들 기준을 성과기준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샘플 기준이 인증기준으로 수용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들 기준을 인증기준으로 설계함.
- 기 발표된 운영 길잡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인증기준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센터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표 97〉 인증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분	세부영역	필수기준 (5점)	순위	기준 성격
공간운영	기본방향수립, 시설 안전관리	4.05	1	물적기반 인적기반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4.04	2	
조직 및 인력	운영조직, 인력확보 및 관리, 업무분장	4.02	3	
법제도	법적근거	4.00	4	법적기반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홍보	3.95	5	프로그램 및 운영 성과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계획 수립	3.88	6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주민 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3.86	7	
성과관리	성과관리,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3.80	8	성과피드백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3.75	9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체계와 평가기준을 연동하여 기준 설계를 추진함.



〈그림 14〉 활성화 체계와 평가기준

나.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을 위한 운영기반(필수)기준

1) 기준 개요

- 운영기반 기준은 기본인증을 위한 필수기준으로써 센터의 운영기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구성됨.
- 센터의 운영기반은 1) 법적 근거 확보, 2) 지속적인 자원조성(예산 확보) 및 전담 인력 편성 및 운영조직 확보, 3) 기본 필수 시설 확보 및 공간 운영계획 수립으로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은 지속가능함.
- 각 세부 영역은 평가목적과 해당 기준이 추구하는 효과가 있음.
- 법제도 :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조례와 운영규정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함. 특히 전반적인 센터 관리가 지방이양되는 상황에서 센터가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조성 :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기반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함.

- 운영조직 :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함.
- 운영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에 센터의 공간에 대한 적절한 공간운영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한의 운영계획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함.

〈표 98〉 운영기반(필수) 기준 목적 및 효과

구분	세부영역	평가 목적	기준 효과
법제도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조례 확보 • 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 달성/ 법적 지위 확보 및 운영 안정성 확보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 및 예산지원 •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기반 및 회계투명성 확보
운영조직	전담직원 업무분장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인력확보 • 업무기술서에 의한 업무분장 • 조직화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운영체계 마련
공간운영	운영계획 시설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계획 확보

2) 평가항목 설계

-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기준은 법제도, 재원조성, 운영조직 및 인력, 공간운영의 영역으로 구성됨.
- 각 세부영역은 평가항목이 있으며 해당 평가항목을 충족하는지 평가함.

- 각 항목은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를 기본으로 하였음.

〈표 99〉 운영기반(필수) 기준 평가항목

구분	세부영역	평가항목
법제도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가?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가? • 자체 운영규정 내 기본항목은 명시되어 있는가? (운영목적, 운영시간, 업무, 연간계획, 프로그램운영, 공간운영,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및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있는가? •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이 있는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가? • 공공기금 등 사업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생활문화센터 자체 수입을 마련이 가능한가? • 예산 지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수립되었는가? • 예산 지출 및 정산을 위한 서식자료들은 갖추어져 있는가?
운영조직 및 인력	전담직원 업무분장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상근인력을 확보했는가? • 인력들의 공식적인 업무분장은 이루어졌는가? (업무 기술, 책임과 권한명시, 보고체계 구축 등) •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었는가? (운영 자문, 지역 인력 중심 구성)
공간운영	운영계획 시설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구성은 적절한가?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공간 사용 기준은 결정되었는가? • 공간 및 시설관리 지침은 만들어졌는가? (필수시설 :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학습마루공간 + 센터 특성화시설) (운영시간, 대관기준 등)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보험 가입여부 등)

3)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발전시킴.

구분	세부영역	체크리스트 (운영 길잡이)
법제도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법률은 확인했는가? • 조성 및 지원 관련 제도 종류는 확인했는가? • 조성 및 지원 관련 기관과 신청시기는 확인했는가? •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준비되었는가? • 지원 자격 및 기준은 확인했는가? •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와 규정은 제정했는가? • 운영 조례 및 제정에서 기본 항목은 누락되지 않았는가?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예산규모는 파악했는가? • 연간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가? •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시기는 확인했는가? •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은 확인했는가? • 연간 예산 운영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예비비는 확보되어 있는가? • 예산 및 회계를 전담할 인력은 배치되어 있는가? •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가? • 예산 지출 및 정산을 위한 서식자료들은 갖추어져 있는가? • 예산 지출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수립되었는가?
운영조직 및 인력	운영조직, 인력확보 및 관리, 업무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형태는 결정되었는가? (지역/위탁/주민자율) •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상근인력을 확보했는가? •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었는가? • 인력 채용은 정해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는가? • 각 직급 인력은 기준에 맞게 채용되었는가? • 인력들의 근무 기준 (근무시간, 임금, 연간 휴가 등)은 수립되었는가? • 인력 관리 기준 및 계획 (직원교육 및 복지)은 수립되었는가? • 인력들의 공식적인 업무분장은 이루어졌는가? • 인력 운영을 위한 다음의 기본 서식은 갖추었는가? (근무일지 / 휴가계/ 업무보고 서식 / 근로계약서 / 연봉 및 복리후생비 지급 확인서 등)
공간운영	기본방향수립, 시설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사용 기준은 결정되었는가? (대관 등) • 공간 및 시설관리 지침은 만들어졌는가? • 각 공간 및 시설의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 시기는 정해졌는가? • 공간 및 시설 보수(리모델링) 기준은 수립되어 있는가? • 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다음의 서식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대관 신청서 / 공간이용 신청서 / 공간 및 시설 관리 체크리스트 / 공간이용 시 주의사항 / 공간이용 지침 / 안전점검표)

다.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을 위한 성과기준

1) 기준 개요

- 성과기준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임.
-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준에서는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센터 성과기준은 센터의 운영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과 운영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함. 계획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기획목적에 맞게 성과를 획득했는지 확인함.
- 성과기준을 통해 센터의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센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과 운영을 벤치마킹하는 등 성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전반적인 센터 운영계획 : 센터 운영계획은 지역현황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센터의 미션과 비전을 포함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실적물 확인을 통해 해당 세부계획이 적절히 추진되어 목적했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함.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센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주민 참여와 주도형인지, 프로그램 계획에서 목적했던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함.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된 프로그램은 타 센터에서 벤치마킹하거나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게 됨.
- 홍보 계획 : 센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며 홍보 계획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측정함.

- 성과 관리 : 센터 운영계획들에 대한 성과관리로 피드백을 통해 환류체계가 명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함.
- 주민 참여 : 센터 성과에 대한 주민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센터의 운영에 주민 참여 기회가 있는지 확인함.

〈표 100〉 성과기준 목적 및 효과

구분	세부영역	평가목적	기준 효과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환경분석을 통한 운영계획	지역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한 전략적 활성화방안 접근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확산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강화
홍보	연간 홍보 계획 홍보실행	센터 홍보 강화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센터 이용자 조사와 이용자 신규 개발 추진
성과관리	성과관리 계획수립 성과 환류 체계구축(피드백)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통한 발전	운영계획의 환류 체계 확립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 독려 및 주민 주도의 센터 운영 독려	주민참여 및 주민주도의 센터 활성화 추진

2) 평가항목 설계

- 생활문화센터 성과기준은 운영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주민참여 영역으로 구성됨.
- 각 세부영역은 평가항목이 있으며 해당 평가항목을 충족하는지 평가함.
- 각 평가항목을 충족하는 성과물을 확인하여 해당 평가항목을 충족하는지 평가함.

- 각 항목은 지역문화센터의 운영 길잡이를 기본으로 하였음.

〈표 101〉 성과기준 평가항목

구분	세부영역	평가항목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 조사 및 이용자 욕구 조사는 진행되었는가? • 지역 현황조사 및 이용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활문화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는가? •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전, 미션, 운영방향, 주요 기능, 연차별 실행계획, 연차별예산계획, 특수목적 사업 실행계획, 연차별조직 구조)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세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는가? 운영기간 및 내용은 결정되었는가? • 주민제안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가? 주민제안 프로그램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가? (지역문화시설간의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및 네트워크 등) (주민 문화매개자양성, 동호회 네트워크, 생활문화축제 등 매개/족매 프로그램 계획)
홍보	연간 홍보 계획 홍보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 설문 내용, 조사시기는 결정했는가? • 연간 홍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지역 내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자원과의 관계는 우호적인가? 없다면 연계자원을 만들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 명확한 홍보 / 마케팅 대상을 설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가? • 홍보물은 준비되었는가?

구분	세부영역	평가항목
성과관리	성과관리 계획수립 성과 환류 체계구축(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가?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진행할 시기와 내용 범위는 결정되었는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평가 기준 설정 및 주민의견 수렴 수단 및 방법)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운영위원회에 주민참여가 가능한가?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계획 및 지역내 네트워크 활용계획이 있는가?

3)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발전시킴.

구분	세부영역	체크리스트 (운영 길잡이)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비전 및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현황 조사 및 이용자 욕구 조사는 진행되었는가? 지역 현황조사 및 이용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생활문화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하였는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비전, 미션, 운영방향, 주요 기능, 연차별 · 실행계획, 연차별예산계획, 특수목적 사업 실행계획, 연차별조직 구조) 1년 단위 연간 운영계획은 수립했는가? 연간 운영 계획은 센터의 역량에 맞게 수립되었는가?

구분	세부영역	체크리스트 (운영 길잡이)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주민 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프로그램 중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결정했는가? • 공동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었는가? • 공동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공동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는 센터의 규모 및 담당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 •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했는가? • 자원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했는가? • 각 프로그램의 중심 가치는 무엇이며,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었는가? •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 및 시기, 장소는 결정했는가?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보완계획은 있는가?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 설문 내용, 조사시기는 결정했는가? • 이용자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결정했는가? • 새로운 이용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획되어 있는가? • 연간 홍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지역 내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있다면 그 자원과의 관계는 우호적인가? 없다면 연계자원을 만들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가? • 센터와 지역 내 홍보/마케팅 거점들과의관계에 대한 분석은 진행했는가? • 명확한 홍보 / 마케팅 대상을 설정했으며,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되어있는가? • 홍보물은 준비되었는가?
성과관리	성과관리,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와 피드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성과관리와 피드백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은 수립되어 있는가? •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진행할 시기와 내용 범위는 결정되었는가? • 성과관리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되었는가? • 피드백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 성과관리 및 피드백을 진행하기 위한 지역 내 인력들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구분	세부영역	체크리스트 (운영 길잡이)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참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원봉사 모집 시 역할은 구분되어 있는가? • 모집된 문화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지역 내 네트워크 가능 자원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가? • 지역 내 네트워크 가능 자원에 대한 특징은 파악하고 있는가?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유관기관과 이루어졌는가? •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있어 보완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되었는가? •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들의 협력의지를 확인하였는가? • 어떤 대상과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지 정리되었는가? • 네트워크 구축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4. 평가 방법 설계

가. 평가기준 평가방법

1) 기본 인증을 위한 운영기반(필수) 기준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서 운영기반 기준은 필수기준으로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준임.
- 운영기반 기준 영역은 완수 혹은 미완수 (Pass or Fail) / 만족 혹은 불만족으로 평가함.
- 전 영역을 모두 완수해야 센터의 기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1개 영역 미비 시 조건부 인증으로 1년 내 재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 영역 미비 시 기본인증에 실패함.

〈표 102〉 운영기반(필수) 기준 평가방식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평가
법·제도	법적 근거	(기준1)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2)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 여부	10	
		(기준3)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포함 여부	10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기준4)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수립	10	인증/재평가 (28점 이상)
		(기준5)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지속성	10	
	예산 확보	(기준6) 생활문화센터 예산 확보	10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평가
	및 지출	(기준7)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 및 서식자료	10	
운영조직	전담직원	(기준8) 센터 전담 인력 확보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9) 센터 전담인력의 근무 지속성 여부	10	
	업무분장	(기준10) 직무명세서	10	
		(기준11) 공식적 업무 분장	10	
	운영위원회	(기준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공간운영	운영계획	(기준13) 센터 설립 시 공간 유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14)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	10	
	시설안전관리	(기준15) 시설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 및 시설 규비	10	
		(기준16) 보험가입 (안전사고) 여부	10	

2) 성과인증을 위한 성과기준

- 생활문화센터 성과기준은 개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인증으로 우선 성과기준에서 요구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함. 각 영역의 평가항목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 성과인증은 기본인증을 받은 센터를 대상으로 센터가 제출한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로 판단하며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센터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는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목적과 기대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함.

-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 중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센터의 표준화된 역량을 평가하거나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다양한 환경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각 센터의 정체성과 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단일 프로그램이나 2~3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별도의 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성과기준 연구를 활용할 수도 있음.
- 우수 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센터의 모든 영역을 평가하며 성과기준은 운영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주민참여 영역을 포함함. 우수센터의 인증은 센터가 꾸준히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을 평가하기때문에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확인함.

〈표 103〉 성과기준 평가방식 (우수 프로그램 인증)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인증기준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지역현황조사 및 이용자 요구조사	10	25
	비전 및 전략수립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 수립	10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의 명시 및 공개	10	
	실행계획 수립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10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	10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15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10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개별 프로그램)	20	15

- 평가 등급은 5 등급으로 구분함

구분	매우 탁월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우등
점수	90	85	80	75	70

〈표 104〉 성과기준 평가방식 (우수센터 인증)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운영계획	지역현황분석	(기준17)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10
		(기준18)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15
	비전 및 전략 수립	(기준19)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15
		(기준20) 세부 실행 계획 수립	10
		(기준21)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10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기준22)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기준23) 주민 제안 프로그램 계획	10
		(기준24)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
	세부 프로그램 운영	(기준25)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
홍보	연간 홍보 계획	(기준26) 연간 홍보 계획 수립	5
		(기준27)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	5
		(기준28) 센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0
	홍보 실행	(기준29) 홍보 대상별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5
		(기준30) 홍보 계획 실행	5
		(기준31) 홍보 목표 달성	10
성과관리	성과관리체계	(기준32) 성과관리 계획 수립	10
		(기준33) 성과관리 환류	10
		(기준34) 성과 결과 반영	10
주민참여	주민참여	(기준35) 주민 환류 체계	10
		(기준36)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0
		(기준37)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 우수 센터 인증 평가 영역은 운영 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및 주민참여 등으로 구성됨

우수센터 인증					
영역	운영 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주민참여
점수	60점	40점	40점	30점	30점

- 우수 센터 인증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성됨

구분	매우 탁월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우등
접수	180	170	160	150	140

나. 제출자료 및 현장확인 사항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설계 방법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인증함.
-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센터의 담당 직원이 부족하거나 업무 과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만큼 행정력 소모가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필수 평가 기준을 설계함.
-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운영 센터에 대한 인증은 센터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평가와 현장확인으로 진행함.
- 평가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점검하며 현장 방문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표 105〉 제출자료 및 현장확인 사항

구분	기본 인증	성과인증		평가방법론	
		우수 프로그램 인증	우수 센터 인증	제출자료	현장확인
법제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센터 조례 생활문화센터 자체운영규정 	• 없음
재원조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편성 및 수립계획 관련 문서 지출, 예산 기준 및 관련문서 	• 없음
운영조직 및 인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센터의 인력현황 센터 조직도/ 보고체계/ 운영현황 센터 업무기술서 및 업무분장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없음
공간운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현황(공간배치도), 대관실적 공간 및 시설관리 지침(공지사항) 안전관련 지침 및 관리현황 보험현황 	• 지침 공지 확인 (서류 확인 가능시 생략)
운영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현황조사 및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 (세부실행계획 포함) 및 공지 중장기 실행계획 확인 	• 운영계획 확인 및 성과 확인
프로그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실적 각 프로그램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에 대한 확인 센터 이용자 면담 진행
홍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조사 계획 및 실적 연간 홍보계획 및 실적 홍보 결과에 대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확인 홍보 성과 확인
성과관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및 피드백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류체계 확인 주민의견 수렴 확인
주민참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소통 계획 및 실적 지역 내 네트워크 활용계획 및 실적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 확인 주민 면담을 통한 소통 실적 확인

5.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유형별 운영방향

가.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

1) 인증목적 및 효과

- 생활문화센터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인증임. 생활문화센터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필수기준을 통해 확인함.
- 생활문화센터가 기본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센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생활문화센터 관리 :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센터와 미운영 센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
-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센터 기반 마련 : 기본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기반을 센터가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여 기본 인증을 받는다면 해당 센터가 꾸준히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음.

2) 운영 방향성

- 가장 기초적인 인증으로 센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필수기준을 정량기준이나 자체 평가로 구성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 함.
- 수시로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신청하며 해당 연도에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에 참여 자격을 부여함.
- 지역문화진흥원이 기본인증을 위한 컨설팅 제공이 가능함. 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사업을 통해 기본인증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도 가능함.

나. 성과인증 (우수 프로그램 인증 및 우수 센터 인증)

1) 인증목적 및 효과

- 생활문화센터 우수 사례를 통한 정체성 강화 및 성과 확대.
- 인증받은 프로그램과 우수 운영 센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운영 센터는 지역 내 멘토 센터로서 성과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프로그램 인증 : 개별 생활문화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향후 해당 센터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지원 받음.
- 우수 센터 인증 : 생활문화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운영 센터를 인증하여 해당 센터가 타 센터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함.

2) 운영 방향성

-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센터 인증은 자유 공모형 사업과 같이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 후 센터가 계획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함.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이러한 인증은 개별 생활문화센터 나름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별 생활문화센터의 자율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가) 우수 프로그램 인증

- 생활문화센터가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에 대해 그 성과를 인증함.
- 인증기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그간 진

행해 왔던 프로그램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음. 특히 특성화에 강점이 있는 센터가 참여할 수 있음.

- 개별 생활문화센터 성과를 확인하고 개별 센터가 요청하는 계획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함. 이를 통해 센터는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우수센터 인증

- 우수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통해 해당 센터를 지역의 거점 생활문화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센터 활성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중앙에서 이를 모두 추진하기 어려움. 지역분권, 지방이양 고려하여 지역에 거점 생활문화센터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 우수 생활문화센터는 거점 생활문화센터 및 멘토로서 지역 생활문화센터를 선도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해당 권역의 거점으로서 권역 내 센터 커뮤니티 운영 및 통합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권역의 동아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역 문화활성화와 지방 권력 이양의 정책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음.
- 우수 생활문화센터 및 권역별 거점 생활문화센터 지정 시 3년간 지정을 유지하며, 거점 활동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야 함. 예산은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권역의 센터 간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 내 센터 활성화를 추진함.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유형별 인센티브 제공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제별 인센티브가 필수적임.
- 인증제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기본인증) 필수기준 인증으로 인증 후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에 참여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본인증 준비 과정 중 지자체 내에서의 법적지위와 예산, 조직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우수 프로그램 인증) 생활문화센터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인증받는 것으로 성과 확산과 발전을 위해 센터가 요청하는 자유 공모형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센터는 이 예산을 통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우수 센터 인증) 생활문화센터 우수 운영에 대한 인증으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인증함.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함. 거점형 사업으로는 센터 간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우수 프로그램 제공 및 멘토링 등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우수 센터는 포상과 홍보를 통해 지자체의 지지와 구성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음.

〈표 106〉 인증유형 별 인센티브 및 기대효과

인증유형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통한 기대효과
기본인증 (운영기반 필수인증)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참여자격 법적지위, 예산 및 조직 확보	기본인증을 통한 운영기반 마련
성과인증 (우수 프로그램 인증)	자유공모형 예산 지원	센터 자율적인 발전 도모
성과인증 (우수 센터 인증)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사업예산 지원 우수센터 포상 및 홍보	센터 역량 강화 지자체 지원 기대 구성원 사기 진작

6.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효과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효과

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

-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 특히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지방이양 된다면 운영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임.
-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인증은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지원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기본 인증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기본 인증을 획득한 센터와 미획득한 센터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획득한 센터를 관리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
- 미획득한 센터는 원인 파악과 진흥원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임.

2)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보

-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음.
-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생활문화센터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음.
- 지역 내 타 문화예술공간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활문화센터와의 차별점이 모호해지고 이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음.
- 이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성과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3) 생활문화센터 성과 확대를 통한 활성화 기여

- 생활문화센터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센터 운영 사례는 타 센터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VIII.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가.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실시 법적 근거 마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사례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증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

〈표 107〉 인증사례 및 관련 법 규정

인증	법규정	조문
박물관 미술관 평가 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한국관광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인증	문화예술후원법 5조, 12조(문화예술후원매 개단체의 인증) (문화예술후원우수기 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	법규정	조문
여가친화인증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가 필수인증으로 진행된다면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과 같이 평가 실시를 명시할 수 있겠으나 생활문화센터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 만큼 아래와 같은 조문을 지역문화진흥법에 신설할 수 있음.
- 또한 인증제도 조문 신설 시 생활문화센터 인증을 받은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같이 신설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여가친화인증의 경우처럼 아래와 같은 조문으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우수 사례 발굴과 시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인증 받은 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엔 다소 부족할 수 있음.

〈표 108〉 생활문화센터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조문 예시

구분	조문예시
인증제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제도 인센티브	인증받은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 체계 구축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차원, 운영적 차원에서의 활성화가 요구됨.
- 제도적 차원에서는 인증제도 수준의 고도화, 평가수준의 향상, 인증위원 수와 구성원 수를 제고해야 함.
- 인프라차원에서는 인증결과에 인프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확충과 인력확충을 위한 평가기준을 업데이트 해야 함.
- 운영적 차원에서는 인증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 지자체의 지지와 관심을 유도해야 하며, 예산 투자 강화 등 우수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특히 인증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센터의 브랜딩에 기여해야 함.



제도 자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제도 고도화 • 인증위원 운영 제고 • 평가 수준 향상 	인프라 자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에 인프라 개선 방향 제시 • 시설 개·보수위한 평가 기준 업데이트 • 인력 확충을 위한 평가 기준 업데이트
운영 자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결과 지자체장 통보 • 우수 센터 인센티브 지급(국고 + 지자체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결과 대국민 홍보 지원 • 인증 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향 반영 • 국고 예산 투자 강화

〈그림 15〉 인증제도 활성화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를 활용한 센터 활성화 방안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효과

1)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

-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생활문화센터가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 지자체의 관심과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적인 사항임.
- 생활문화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조직의 체계성 확립,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체계성 확립 등이 필요하며, 생활문화센터의 체계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문화센터의 평가·인증 기준 도입과 시행이 필요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평가·인증은 생활문화센터가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증에서부터 생활문화센터의 지역 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준으로 구성된 우수 인증으로 구성됨
- 생활문화센터가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인증은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지원 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을 요구함. 기본인증은 생활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기본인증을 획득한 센터와 미획득한 센터를 구분하여 현재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미획득한 센터를 관리하는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음. 미획득한 센터는 원인 파악과 진흥원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임.

2)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보

-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됨
- 지역 내 타 문화예술공간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생활문화센터와의 차별점이 모호해지고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의 성과인증(우수프로그램 및 우수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음. 이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성과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3) 생활문화센터 성과 확대를 통한 활성화 기여

-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은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성과인증에는 우수 프로그램 인증과 우수 센터 인증이 있으며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센터 인증은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 사항을 평가함.
- 인증된 프로그램과 우수 센터의 사례는 우수 사례로 생활문화센터에 전파될 수 있음. 생활문화센터는 전파된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센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프로그램 및 운영 개선과 센터 운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 유형별 지원방안

1) 기본인증 대상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지원방안

가)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법적근거 및 예산

-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54곳임.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총 118곳임. 약 55%의 지자체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조례가 부재함.
- 생활문화센터 운영조례에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을 넣은 조례도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조례도 있었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문화진흥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제 7조),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는 만큼(제 3조) 운영조례에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항목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나) 생활문화센터 인력확보 및 업무분장

-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 복무가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됨.
- 업무분장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이 됨.

2) 성과인증(① 우수프로그램 인증)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지원방안

가) 중앙정부의 사업예산 확보

- 생활문화센터의 성과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는 문체부의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함.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조문 신설 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사업예산은 각 센터의 성과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용될 수 있음. 각 센터의 성과인증 후 센터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함.

나) 우수 프로그램 확산

- 인증된 센터 프로그램을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워크샵이나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인증된 센터가 타기관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컨설팅할 수 있음. 우수 프로그램 확산은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3) 성과인증(② 우수센터 인증)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지원방안

가) 중앙정부의 사업예산 확보

- 우수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거점 센터로 활동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이 필요함.
- 거점 사업예산은 우수센터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우수센터가 광역형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혹은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타 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컨설팅,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 등을 할 수 있음.

나)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우수 생활문화센터 활용

-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내 생활문화를 선도하도록 해야 함.
- 우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지지가 중요함. 생활문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자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필요함. 특히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지역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 및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적극 지원 독려가 필요함. 센터 필요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연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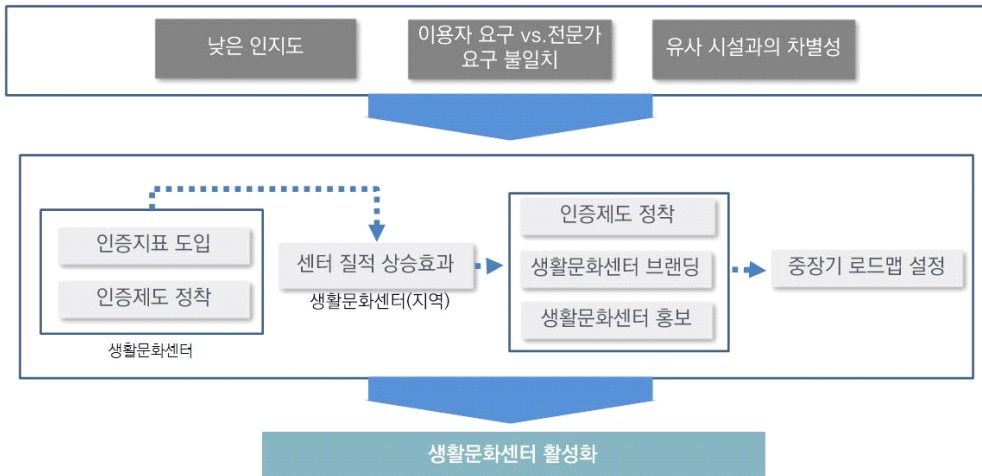
2)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워크숍 지원

- 생활문화센터 간의 커뮤니티 구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 우수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표 및 홍보하여 센터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야 함.
- 우수 센터와 우수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하는 것도 필요함. 이를 통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성과확산을 할 수 있음.

3.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함.
- 생활문화센터 단순 대관을 넘어 지역내 생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는 센터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센터에서 수용하며 타 유사시설과의 차별화 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시작됨.
-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를 정착하여 양질의 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그림 16〉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개요

-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설정함.

〈표 109〉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계획

비전	생활문화센터 지속가능한 운영 및 운영 고도화			
목표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보	운영역량 확보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 확보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활성화와 홍보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추진전략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역량 확보	센터 간 커뮤니티 설립	우수 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법적 지위 및 예산, 조직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지역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활성화	센터 홍보전략 수립 및 실천
실행과제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재정립	생활문화센터 전담직원 확보	센터 간 커뮤니티 설립 후 교류	우수 프로그램 성과공유 및 접목
	생활문화센터 법적지위 확보	센터 직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진행	지역내 문화시설간 네트워크 설립 후 교류	주민 요구조사를 통한 주민 주도 프로그램 구축
	생활문화센터 예산 및 전담직원 확보	우수 운영센터 지정을 통한 벤치마킹 추진 및 컨설팅 진행	생활문화 거점 시설로서 센터의 지위 확보	센터 인지도 고치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나. 활성화 목표 1 _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보

-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립과 법적 지위 및 예산, 인력 확보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을 확보해야 함. 이는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있어 가장 필수요건임.
-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실행과제는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확인, 생활문화센터 법적지위 확보, 예산 및 전담직원 확보임.

1) 생활문화센터 정체성 재정립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설립됨.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호회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 일반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지역주민 주도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타 문화시설이 기획자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전달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기획자가 이를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타 시설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함.
- 같은 문화프로그램이라도 주민 모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것과 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임.
- 현장에서도 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고 있음. 하지만 센터운영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주민주도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센터의 특성상 이를 중앙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되, 각 센터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센터의 정체성, 비전과 미션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임. 중앙기관은 워크숍 개최, 센터 운영규정에 센터의 비전과 미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전과 미션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임.

2) 생활문화센터 법적 지위 확보

- 생활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생활문화센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지위나 정체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지방이양이 되면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센터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임.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적, 기능적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생활문화센터의 조례에는 총 10가지로 기본항목을 포함해야 함. 생활문화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 설립목적과 역할, 운영계획 수립의 시기, 공간운영 기준, 운영주체 규정,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 자원 조성 및 지원기준, 주민 참여 및 자원봉사자 기준, 지역 네트워크 관련 사항,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구성.
- 생활문화센터 자체 운영규정 및 운영방침도 센터의 지속운영 기반으로 필요함.

3) 예산 및 전담직원 확보

- 생활문화센터 중 활성화된 센터와 비활성화된 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과 전담직원 확보 여부임.
- 전담인력이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은 센터도 다수 있음. 운영인력의 부족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어렵게 하며 외부지원을 받을 수도 없게 됨. 또한 전담직원의 부족은 운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문화센터들 간 네트워킹 구축 및 확산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함.
-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진행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담 운영인력과 인력에 대한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보가 필요함.

다. 활성화 목표 2 _생활문화센터 운영역량 확보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의 운영역량이 확보되어야 함. 전담직원의 노하우가 축적되고 역량이 개발되고 센터 발전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활성화가 가능해 질 것임.
-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실행과제는 생활문화센터 전담직원의 고용보장 확보, 센터 직원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진행, 우수 운영센터 지정을 통한 벤치마킹 추진 및 컨설팅 진행 등임.

1) 전담직원의 고용보장

- 전담직원의 운영역량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 노하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비활성화된 센터의 경우 전담직원이 계약직이거나 자주 교체가 되어 운영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전담직원이 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정적 고용 혹은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하여야 함.

2) 직원대상 교육 및 워크숍

- 생활문화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2018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결과보고서에서는 “자가진단 비전설계 워크숍”, “지역별, 운영주체별, 주요 이용자별 네트워킹 워크숍”을 제안하였으며 연중 교육 일정을 제안하고 있음.
- 다만 현장조사 시 이러한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전담직원이 없는 센터도 있으며 전담직원이 있더라도 대체인원이 없어 센터를 비울 수 없기 때문이었음. 결국 최소한의 운영인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역량개발에도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3) 지역 내 우수 운영센터 벤치마킹 및 컨설팅

- 연구진이 제안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우수 운영센터를 인증하여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지역 내 우수 운영센터를 인증하면 지역의 타 센터들은 해당 센터의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센터 활성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우수 운영센터는 멘토 센터로서 타 센터의 직원을 컨설팅하고 지원함으로써 타 센터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라. 활성화 목표 3 _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 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가 각 지역의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지역의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발전하여야 함.
-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 확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센터간 네트워크 설립 후 교류, 지역내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 설립 후 교류, 생활문화거점 시설로서 센터의 지위 확보를 확보해야 함.

1) 센터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

-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센터 담당자들은 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센터 운영 방향을 서로 교류하면서 센터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생활문화센터 간 네트워크는 성과 공유 및 노하우 전수의 기회가 될 것이며 다양한 주제별 네트워크는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특히 인접 지역 생활문화센터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진행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네트워크 기회를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온 오프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 지역내 문화시설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설립

- 지역 문화시설 및 문화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문화 프로그램 다변화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 담당자들은 지역의 문화시설과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하였음. (지역문화시설 _ 프로그램 및 강사, 센터 _ 공간지원 등)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음.

3) 지역내 생활문화거점으로 지위 확보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문화시설 중 생활문화 거점 시설로 지역내 생활문화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 단체 단위까지 문화재단이 활성화되고 있어 문화재단 정책과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할 것임.

마. 활성화 목표 4_ 프로그램 활성화와 홍보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이 공유되고 개발되어야 함.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와 홍보를 통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의 실행과제로 우수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접목, 주민주도 프로그램 구축, 센터 인지도 고취를 위한 홍보전략 등을 수립하여야 함.

1) 우수 프로그램 성과 공유 및 접목

- 생활문화센터가 시설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우수 프로그램 성과를 확대하여 다른 센터에 접목해야 함. 인증제도는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타 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음.

2) 주민 주도 프로그램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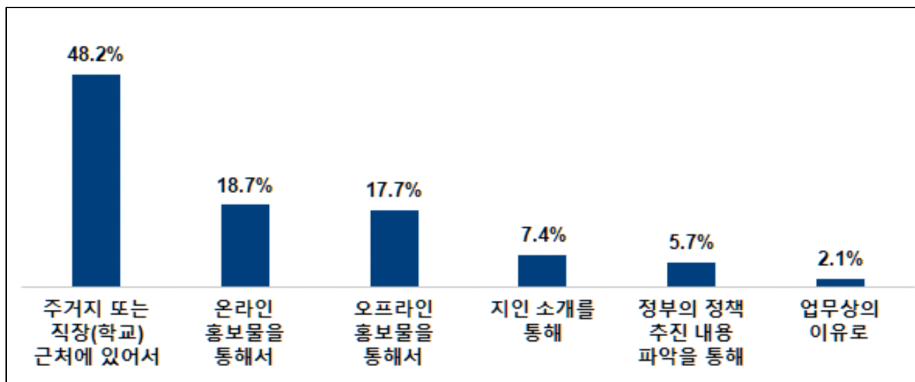
- 현황조사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확인되었음. 예산 부족, 직원부족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야간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의 부재로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별 특성과 반영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반 정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전략 필요함. 주민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이 요구됨.

3) 센터 인지도 고취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가) 이용자 타게팅을 통한 마케팅 홍보 방안 도출

- 현재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 채널이 센터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한 상황임.

- 생활문화센터 인지경로에 대한 대국민설문조사(20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물(18.7%), 오프라인 홍보물(17.7%), 지인 소개 (7.4%) 순으로 나타남(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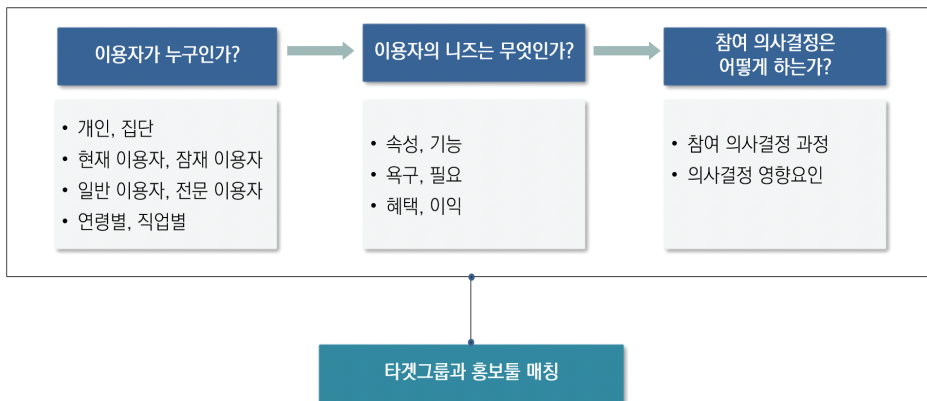


〈그림 17〉 생활문화센터 인지경로

나) 생활문화센터 홍보 전략

- 센터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요구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용자들이 생활문화센터에 원하는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센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프로그램 종료시마다 제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향후 프로그램 기획 또는 센터 운영 방향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함.
- 기존 생활문화센터의 홍보물로 인쇄물, 외부 설치물, 지역 매체, 온라인 카페나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왔으나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그룹 설정과 타겟 그룹에 적합한 홍보물을 매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생활문화센터 주사용자별 유형을 분류하여, 생활문화센터 내 동호회 활동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계라면 생활문화센터의 가치를 지역주민에게 보다 확산시키고 지역내 및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강좌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단계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기존 이용자 외에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하여 동호회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아직 문화예술 향유 기반이 약하고 재원이 부족한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기반조성이 우선 필요하므로 관람, 강좌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문화센터의 역할과 유익에 대한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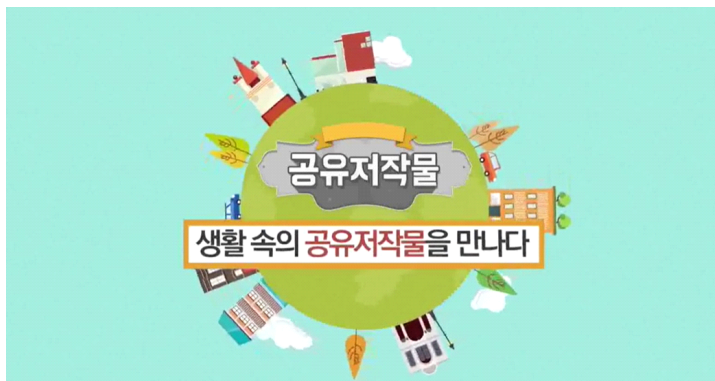
<그림 18> 홍보추진전략

- 홍보는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극물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홍보물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정보의 제시방법을 달리하여 이용자의 주위에 영향을 줘야 함.
 - (개인과의 관련성) : 기존 이용자의 후기 및 만족도를 표시하는 내용 포함. (예시: 이용자 SNS 활용 및 시민 기자단 등을 활용하여 구전효과를 통해 홍보 추진)
 - (즐거움 제공) : 즐겁고 재미있는 자극의 글`그림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 포함. (예시: 서울둘레길 스탬프는 서울둘레길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완주에 대한 목표를 제안함.



〈그림 19〉 서울둘레길 안내지도(서울둘레길 홈페이지)

- (이해의 전달) :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주의를 유발. (예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저작물 소개 홍보영상)



〈그림 20〉 공유저작물 홍보영상(공유마당 홈페이지)

4.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함.
- 단계별 로드맵은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와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함.

〈표 110〉 활성화 단계별 로드맵

시기	단기 (2023)	중기 (2024~25)	장기 (26년 이후)
목표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립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생활문화 거점 시설
인증제	기본인증	성과인증 (우수프로그램, 우수센터 인증)	타 기관 인증 확대
인증제 연계 활성화방안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점검	생활문화센터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센터 인증으로 성과 확산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브랜딩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립	생활문화센터 교육 및 워크샵 등 역량강화	생활문화센터 브랜드 구축 및 홍보
	생활문화센터 자체 활성화계획 수립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센터 간, 문화시설 간)	생활문화 네트워크 확대
	생활문화센터 자체 홍보계획 수립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및 홍보 계획 추진	생활문화센터 지역 내 정체성 및 인지도 확립

가. 활성화 단기 (2023년) _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 확립

- 22년 현재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여부 파악이 필요함. 비활성화된 센터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활성화 단기 시기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생활문화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임.

-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활성화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함.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중 기본인증은 이러한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함. 운영기반은 법적 지위 확보, 예산 및 조직 확보로 가능해짐.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에서는 이러한 운영기반 수립을 필수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 운영기반을 확립할 수 있게 독려할 것임. 또한 기본인증 시 컨설팅 등을 제공함으로써 운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함.
- 생활문화센터 자체 활성화계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함. 주민 및 이해관계자 조사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주요 이용자 그룹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활성화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활성화 중기 (2024~5년) _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이 확립되고 생활문화센터 본격적인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함.
- 생활문화센터 성과인증제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할 수 있고 이런 성과를 확대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임.
- 인증제를 통해 센터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음. 생활문화센터 교육과 워크샵 등은 담당자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센터 담당자들은 교육과 워크샵, 우수 사례 공유등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며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임.

- 생활문화센터 간의 네트워크와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확산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임.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지원과 프로그램 교류 등으로 센터의 다각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와 홍보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다. 활성화 장기 (2026년 이후) _ 생활문화 거점 시설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내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생활문화센터 정체성이 확립되고 생활문화센터 인증제가 안착되면 생활문화센터 브랜딩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공공 브랜딩으로 센터를 홍보하는 등 생활문화센터가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대중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추진함.
- 생활문화관련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거점시설로서 이런 네트워크를 주도하면서 생활문화 정체성과 인지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라. 활성화 장기 (2026년 이후) _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의 확대 추진

- 중장기적으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는 생활 SOC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한 생활문화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로 발전하여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하여야 함.

-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문화시설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생활SOC 복합시설 내 생활문화센터를 갖추고 있는 곳이 다수임. 2026년까지 약 480개소 개관 및 운영될 예정임.
- 지역의 생활문화시설도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와의 기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짐.
-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또한 인증제도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생활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생활문화정책의 주체가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 인증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보고서

- 고용노동부 (2016). *201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2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안내서*.
- 관계부처합동 (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국민건강보험 (2021).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 국민건강보험 (2021).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시설급여 제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 (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18).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18).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19).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2020).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사전*.
- 중앙청소년문화의집 (2020). *2020년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결과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 (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www.kspo.or.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법제처: <https://easylaw.go.kr>
-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

한국관광품질인증: <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ko.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isms.kisa.or.kr>

논문

김순양 (2009).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1), 67-99.

김호순, 한도희, 황진구 (2011). 2010 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309-332.

부록

1. 법적조례 예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04.20 조례 제1532호
(일부개정) 2019.12.13 조례 제175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21.07.01 조례 제18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마추침공간, 다목적홀
2. 공용시설 : 사무실, 화장실, 창고
3. 주민자율공간 : 시각예술창작공간, 공연예술연습공간, 개인연습공간 등

제3조(사업) 시장은 군포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2. 생활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단체 포함)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기타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휴관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②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중전 제5조는 제5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군포 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중전 제7조는 제7조제1항으로 이동<2021.7.1.>]

제8조(사용료 등)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1.]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

른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1.7.1.〉

1. 시장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을, 프로그램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시장은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11조(양도의 금지)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포문화재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손해 배상) 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532호, 개정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12.13.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7.1.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설문조사 양식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명길 교수 연구팀입니다.
지역문화진흥원 의뢰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오로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2022년 10월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최명길 교수

발주 기관	 지역문화진흥원	수행 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문의처	연구수행 관련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최명길 교수		

구분	응답	
	요일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 운영시간은?	
	토요일 운영시간은?	
	일요일 운영시간은?	
	공휴일 운영시간은?	
	휴무일은 언제인가?	

귀하의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귀하가 소속된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 장르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생활예술(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 생활공예(의류, 장신구, 생필품 공예 등)
- 생활기술(요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 생활운동(건강증진 활동, 요가, 테라피 등)
- 생활지식(과학, 역사, 심리치료 등)
- 미디어(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 공동체활동(지역축제, 지역문화기록, 장터마켓, 봉사활동 등)
- 기타 ()

2. 귀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연습실, 공연장, 회의실 등 공간 대관 서비스
- 문화강좌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동호회 모집 및 지원 (동호회 가입을 위한 소개, 활동 가이드제공 등)
- 카페, 도서 라운지 등 상시 공간 활용 서비스
- 지역주민 커뮤니티 및 교류 활동
- 기타 ()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정체성과 운영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활동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대관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조성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					
생활문화센터간의 네트워크					
생활문화센터과 지역 문화시설간의 협업					
생활문화센터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 및 차별성 (타 문화시설과의 차별점 부각)					
센터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시장, 군수 등) 관심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관심과 참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우수성					
생활문화센터 시설에 대한 법적 뒷받침 (지자체 조례)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이후 주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 생활문화센터의 양적 확대에 따라 사후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 운영 체제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활문화센터 인증 절차 방식 도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문화센터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다면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품질인증과 같이 최소한의 조건만 달성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 예) 인증 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안전진단과 같이 필수 기준을 달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 예) 인증 평가 내 몇 개의 필수기준 달성					
우수 운영시설 평가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우수 운영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인증 예) 우수한 기준을 달성한 소수의 우수 운영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1.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대되는 바는 무엇인가요?

(1. , 2. , 3.)

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참여가 어렵다면 가장 우려되는 바는 무엇인가요?

(1. , 2. , 3.)

생활문화센터 인증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사업예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시설 보수 및 확장예산)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정부(지자체 포함)차원의 포상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컨설팅					
생활문화센터 홍보를 위한 지원 (예산 및 컨설팅 지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생활문화센터 우수 프로그램 제공					
지역 내 타 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다음 기준 중 생활문화센터 인증 평가 시 평가기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필요하지 않다 1 - 2 - 3 - 4 - 5 매우 필요하다)

	세부영역	구체적실무영역	1	2	3	4	5
법 제도	법적근거	지자체 조례 제정, 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주민 참여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주민참여 위원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 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공간 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세부영역	구체적실무영역	1	2	3	4	5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주민 제안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재원 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 예산 수립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성과 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다음 기준 중 생활문화센터 인증 평가 시 평가기준로 포함된다면 귀하의 생활문화센터가 강점을 가진 기준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강점이 없다 1 - 2 - 3 - 4 - 5 매우 강점이 있다)

	세부영역	구체적실무영역	1	2	3	4	5
법 제도	법적근거	지자체 조례 제정, 생활문화센터 운영규정					
주민 참여	주민참여	주민의견 수렴 창구 운영					
	주민참여 위원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 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생활문화센터 인증 지침

제정 0000. 00. 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평가에 관한 제반 수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회”는 생활문화센터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자”는 지역문화진흥원이 위촉한 자로서 생활문화센터를 평가를 수행한다.
3. “평가대상센터”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생활문화센터 평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원에 생활문화센터의 평가를 의뢰한 기관을 말한다.
4. “평가 기준”이란 생활문화센터가 인증하기 위하여 정한 평가항목을 말한다.
5. “인증위원회”란 생활문화센터의 평가 세부 기준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
7. “기본인증”이란 생활문화센터가 필수적인 운영 여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성과인증”이란 생활문화센터가 필수적인 운영 여건을 기반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9. “우수센터인증”이란 생활문화센터가 필수 운영 여건과 우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센터 운영 전반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사후 관리”란 인증을 받은 생활문화센터가 인증 조건을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인증서”란 지역문화진흥원이 인증을 획득한 생활문화센터에게 인증 결과를 상징화한 형상을 말한다.

제3조(평가 절차) 생활문화센터 인증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평가위원회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지역문화진흥원의 장은 생활예술분야, 문화예술분야, 경영 분야 등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평가위원 자격 등) ① 평가위원은 생활예술, 문화예술, 지역, 경영, 법률 등의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원은 평가위원의 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역문화진흥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운영, 공문서 관리, 연락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⑤ 평가위원장은 지역문화진흥원의 평가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제6조(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생활문화센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원은 매년 생활문화센터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평가 계획을 설명하고, 통보해야 한다.

2. 지역문화진흥원은 평가 위원이 생활문화센터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여건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심의 및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평가위원회는 평가 위원이 부여한 평가 등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2.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인증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평가 위원은 재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지역문화진흥원은 인증 받은 센터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인증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 의무)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3. 평가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할 수 없다.
 4. 평가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평가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은 상기 사항 준수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위원 윤리서약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지역문화진흥원원에 제출한다.

제8조(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① 지역문화진흥원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② 지역문화진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개최) ① 평가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 장소, 안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에 참여할 수 없고, 평가·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 관리

제11조(평가 기준 및 대상)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가 기준 및 인증 대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기준 개발)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생활문화센터의 여건 변화
 2. 기본인증 여건의 변화
 3. 프로그램 인증 여건의 변화
 4. 우수센터 인증 여건의 변화
- ② 지역문화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평가 기준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증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평가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개선한다.

제13조(평가·인증 면제)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가 프로그램 인증, 우수센터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절차는 면제할 수 있다.

1. 기본 인증을 받은 생활문화센터는 프로그램 인증, 우수센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기본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생활문화센터가 우수센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기본인증과 프로그램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14조(평가 계획서 제출) ① 인증을 획득하려는 생활문화센터의 기초자치단체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계획서의 다음 각 호를 검토한다.
 1. 인증 신청 구분
 2. 인증 제출 서류의 적합성
 3. 기타 인증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인증 설명회 개최)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인증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생활문화센터 인증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수행)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가 신청한 인증을 접수하고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생활문화센터 제출 서류의 적절성 검토
2. 생활문화센터 평가 컨설팅 실시
- ③ 지역문화진흥원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평가위원회의 접수 현황 보고 및 평가 관련 사항 제출
 2. 평가위원회 평가 지원
 3. 평가 결과 인증위원회 송부 지원
 4. 평가 관련 제반 사항
- ③ 평가위원은 생활문화센터를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2인의 평가 위원이 참여하여 생활문화센터 1개소 평가
 2. 2인의 평가 위원이 합의하여 5개의 평가 등급 중 1개의 등급을 부여

제4장 인증위원회 운영

제17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1. 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
 2. 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3. 사후 관리 결과 심의
 4. 인증 효력 유지·정지·취소 등에 대한 심의
 5. 이의 제기 사항 심의
 6. 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간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 ③ 인증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인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인증위원 의무) ①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 여부를 심의한다.
 2. 인증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
 3. 인증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의 수수를 할 수 없다.
 4. 인증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인증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인증위원은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재정적 그리고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 ② 인증위원은 상기 사항 준수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증위원 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심의위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제19조(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유로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수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청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위원이 그 사실이 확인되어 해촉된 경우
2.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개최) 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 장소, 안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 안건이 정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인증·의결) ① 위원은 안전에 대한 인증결과를 별지 서식 제10호의 의안 검토의견서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받은 별지 서식 제8호의 의안 인증의견서를 검토하여 별지 서식 제9호의 인증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심의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생활문화센터는 ‘보류’ 판정 사유를 보완한 후 지역문화진흥원에 제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인증위원회에 재인증을 요청한다.

④ 지역문화진흥원은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인증·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본인과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인증·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 산출물 처리)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평가 인증·의결 자료를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으며, 자료 보관·폐기 절차는 원내 기록물관리 규칙을 따른다.

- ②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 시 생활문화센터 평가 인증·의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지역문화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외부기관 또는 조직 내부의 타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의하에 제한적인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정당한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2. 생활문화센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자료제공을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3. 생활문화센터 평가 현황 통계자료 등 특정 신청인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자료제공 요청일 경우

제23조(수당 지급) ① 평가위원회, 인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 지역문화진흥원의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 또는 인증위원회의 서면 의결 또는 온라인 심의·의결 시에도 동 위원회 개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및 관리

제23조(인증서 발급)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 또는 제10-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별지 제11호 서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4조(인증서 관리) 지역문화진흥원은 발급된 인증서의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고 인증서 발급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 개요(인증대상 기관, 인증유형 등)
2. 평가 개요(평가 기준, 평가자 등)
3. 인증서 개요(인증서발급번호, 인증서 발급일 등)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생활문화센터 인증 사후관리)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확인서 생활문화센터 인증서 보유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가 인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② 지역문화진흥원 필요시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생활문화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제26조(인증 효력 정지) ① 지역문화진흥원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인증 조건의 변경 여부가 확인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인증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원은 인증서 효력이 정지된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 효력정지 기간을 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27조(이의 제기)** ① 생활문화센터는 평가·인증·의결 및 인증 효력 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역문화진흥원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난, 재해, 질병,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평가·인증·의결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문화센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역문화진흥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생활문화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통보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사항

제28조(비밀 엄수) 지역문화진흥원의 평가 업무 담당자, 평가위원, 심의위원, 인증위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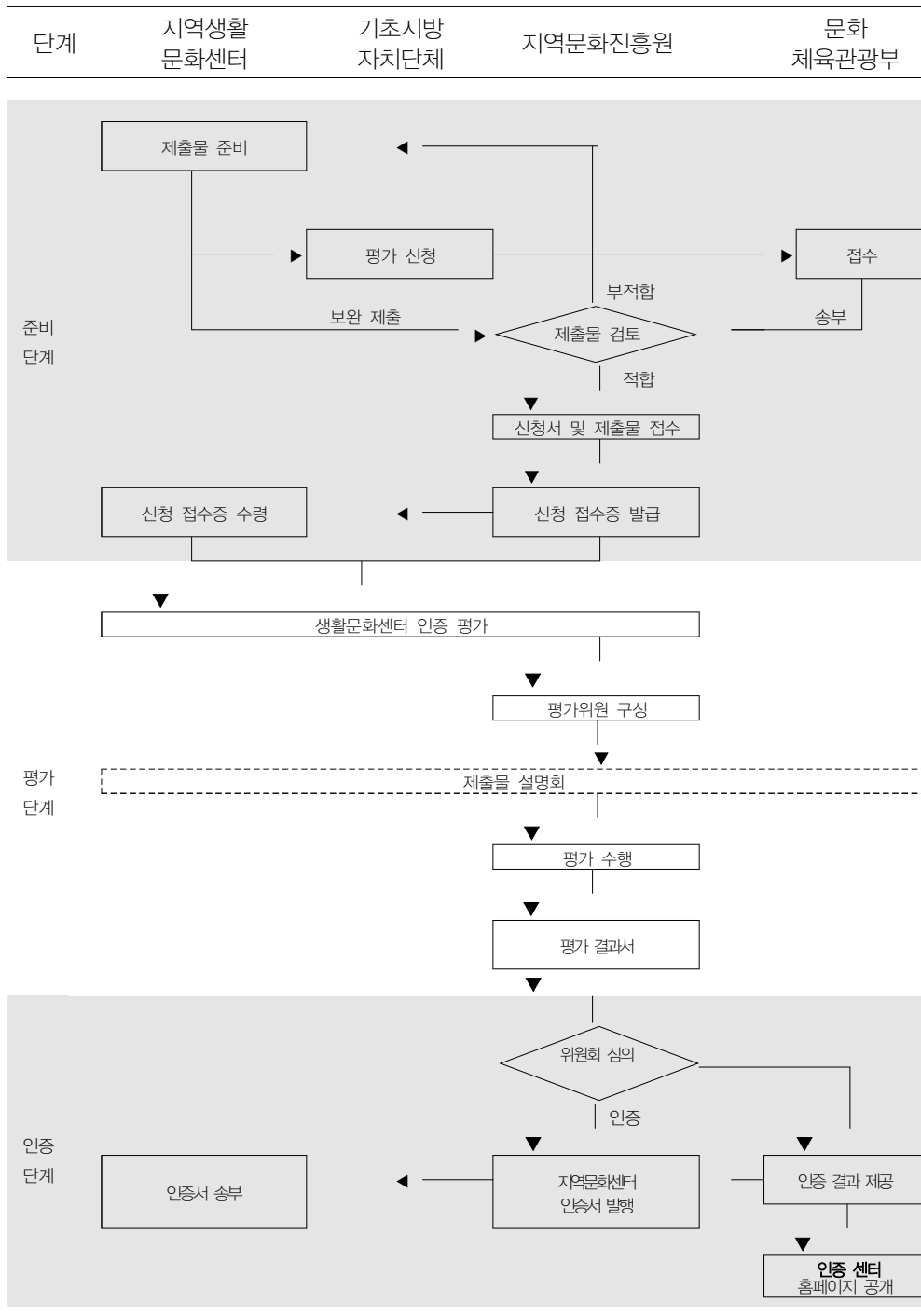
제29조(가이드 마련)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지역문화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제2조(승인 예외) 지침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의 경우 별도 승인 없이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평가 인증 절차



[별지 제1호 서식]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요약서(1)

연도-일련번호

페이지(1) / (총 N)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주 소 :

1. 인증 유형 : 기본인증
2. 생활문화센터명 : 00생활문화센터
3. 평가 기준 :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 기준
4. 평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평가 등급 :
5. 평가 결과 :

확인	평가자 :	평가자 :
----	-------	-------

20YY년 MM월 DD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생활문화센터 평가 결과 요약서(2)

생활문화센터-인증유형-연도-일련번호		페이지(3) / (총 N)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영역1		
영역2		
영역3		
영역4		

평가 결과

종합 의견

※ 본 공란은 평가자가 평가에 사용한 기준, 평가항목 등을 서술하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종합적으로 서술

- 평가자의 주관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기술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작성 예시]

본 평가는 "생활문화센터 기본 인증 기준"에 따라 필수항목 총 X개 중 X개에 대해 성능을 수행하였다. 평가수행 결과, 평가 기준·절차를 충족하였고,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윤리 서약서

평가위원 윤리 서약서

□ 대상 활동 : 생활문화센터 평가

□ 위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는 생활문화센터 평가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1. 우리는 업무상 지득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생활문화센터 평가위원장 외 위원 0명 일동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생활문화센터 평가지침 제16조 생활문화센터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생활문화센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과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평가위원 평가 결과서

생활문화센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서			
의안번호			
생활문화 센터명			
인증유형			
평가결과			
평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			
최종평가 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p>「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지침」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심의 결과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p>			

[별지 제7호 서식] 생활문화센터 인증 결과 요약서(1)

연도-일련번호

페이지(1) / (총 N) 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인증 결과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주 소 :

1. 인증 유형 : 기본인증
2. 생활문화센터명 : 00생활문화센터
3. 평가 기준 : 생활문화센터 기본인증 기준
4. 평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평가 등급 :
5. 인증 결과 :

20YY년 MM월 DD일

인증위원1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인증위원 윤리 서약서

인증위원 윤리 서약서

□ 대상 활동 : 생활문화센터 평가

□ 위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우리는 생활문화센터 인증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야말로 부패방지의 바른 길이라 생각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 우리는 작은 부패에도 관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존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혈연·지연·학연 보다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1. 우리는 부정부패와 관련될 수 있는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지겠습니다.

1. 우리는 업무상 지득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은폐·왜곡·조작하여 공공의 피해를 주거나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보부패'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생활문화센터 인증위원장 외 위원 〇명 일동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_____	(인)

[별지 제9호 서식] 인증위원 보안 서약서

인증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생활문화센터 평가지침 제16조 생활문화센터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생활문화센터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업무 수행 중에 지득한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민사·형사상의 책임과 보안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명

(인)

지역문화진흥원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인증위원 심의 결과서

생활문화센터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서			
의안번호			
생활문화 센터명			
인증유형			
평가결과			
평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증위원회 위원			
최종인증 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보류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p>「생활문화센터 평가·인증 지침」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인증 결과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장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p>			

[별지 제11호 서식] 생활문화센터 인증서

인증유형-연도-일련번호

페이지(1) / (1) 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인증서

신청기관명 :

대표자명 :

주 소 :

1. 인증 유형 : 기본
2. 생활문화센터명 : B시도
3. 평가 기준 : 기본인증

위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인증지침에 의거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인증을 획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YY년 MM월 DD일

지역문화진흥원장

직인

[별지 제12호 서식]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인증 유형		
사유		

「생활문화센터 인증 지침」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자)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귀하

생활문화센터 평가기준(안) 및 평가 방법

1. 생활문화센터 기본여건 인증

- 기본여건 인증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위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임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평가
법·제도	법적 근거	(기준1)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2)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 여부	10	
		(기준3)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포함 여부	10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기준4)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수립	10	인증/재평가 (28점 이상)
		(기준5)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지속성	10	
	예산 확보 및 지출	(기준6) 생활문화센터 예산 확보	10	
		(기준7)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 및 서식자료	10	
운영조직	전담직원	(기준8) 센터 전담 인력 확보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9) 센터 전담인력의 근무 지속성 여부	10	
	업무분장	(기준10) 직무명세서	10	
		(기준11) 공식적 업무 분장	10	
	운영위원회	(기준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공간운영	운영계획	(기준13) 센터 설립 시 공간 유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기준14)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	10	
	시설안전 관리	(기준15) 시설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 및 시설 규비	10	
		(기준16) 보험가입 (안전사고) 여부	10	

- 평가 구분은 법·제도(30점), 재원조성(40점), 운영조직 및 인력(50), 공간운영(4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최저점을 만족해야만 기본여건 인증을 통과함

- 최저점은 법·제도(25점), 재원조성(28점), 운영조직 및 인력(25점), 공간 운영(25점) 등으로 구성됨
- 각 영역의 기준은 필수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함

가. 법 제도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총 배점	평가
법제도	법적 근거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 여부	10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포함 여부	10	

(기준 1)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 생활문화센터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	10
생활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정하지 않음	0

(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조례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2) 생활문화센터 자체 운영규정

- 생활문화센터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자체 운영 규정 제정	10
생활문화센터 자체 운영 조례 제정하지 않음	0

(기준 2: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운영 규정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3) 생활문화센터 자체 규정 내 기본항목 포함

- 생활문화센터는 자체 운영 규정 내 기본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기본항목 : 운영목적, 운영시간, 업무, 연간계획, 프로그램운영, 공간운영,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전체 포함	10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일부 포함 (5개 이상)	5
생활문화센터 규정 내 기본항목 미흡 (4개 이하) 및 미 제정	0

(기준 3: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규정에서 기본항목인 운영목적, 운영시간, 업무, 연간계획, 프로그램운영, 공간운영,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운영 규정
- 현장평가 : 없음

나. 자원조성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총 배점	평가
자원조성	예산 편성과 수립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수립	10	인증/재평가 (28점 이상)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지속성	10	
	예산 확보 및 지출	생활문화센터 예산 확보	10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 및 서식자료	10	

1)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기준 4)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는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고, 예산 편성 및 예산 수립계획 등을 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인증 연도의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을 수립함.	10
인증 연도의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0

(기준 4: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등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관련 문서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5) 계획 지속성

- 생활문화센터는 예산 및 편성 계획이 일회성이 아닌 향후 미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이 향후 3년간 수립되어 있음.	10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이 향후 1년간 수립되어 있음.	5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의 지속성 여부가 확인이 안됨.	0

(기준 5: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이 향후 3년을 고려하여 편성하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관련 문서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6) 예산 확보

- 생활문화센터는 예산 및 편성 계획에 명시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필요 예산 전부를 확보하고 있음. (100%)	10
생활문화센터 필요 예산 일부를 확보하고 있음. (50% 이상~100% 미만)	5
생활문화센터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0~50% 미만)	0

(기준 6: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운영 인력, 프로그램, 시설관리 등)의 확보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함 (서류 평가)

- 확보방법 : 지자체 예산,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예산
- 평가근거 : 예산 편성 및 수립 계획 관련 문서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7) 예산 확보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 기준 및 서식확보

- 생활문화센터는 예산 및 편성 계획에 따른 예산 지출, 정산 기준 및 서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 기준 및 정산, 서식 등 확보하고 있음.	10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 기준 및 정산, 서식 등 일부 부족함.	5
생활문화센터 예산 지출 기준 및 정산, 서식 등 확보가 미흡함.	0

(기준 7: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 지출, 예산 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확인함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지출, 예산 기준 및 관련 문서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 현장평가 : 없음

다. 운영 조직 및 인력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총 배점	평가
운영조직	전담직원	센터 전담인력 확보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센터 전담인력의 근무 지속성 여부	10	
	업무분장	센터 업무 기술서 여부	10	
		센터 공식적인 업무 분장 여부	10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여부	10	

(기준 8) 전담직원확보

- 생활문화센터는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전담 인력 확보 3명 이상	10
생활문화센터 전담 인력 확보 1~3명 미만	5
생활문화센터 전담 인력 미확보	0

(기준 8: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인력 현황을 확인함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인력 현황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9) 근무 지속성 여부

- 생활문화센터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전담인력 중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전담인력 중 2명 이상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10
전담인력 중 1명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5
전담인력 중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 없음	0

(기준 9: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인력 현황을 확인함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인력 현황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10) 직무명세

- 생활문화센터는 직무명세서를 명확하게 정의하게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직무명세서가 있으며 내용도 충실함.	10
생활문화센터 직무명세서가 있으나 내용이 부실함.	5
생활문화센터 직무명세서가 없음.	0

(기준 10: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분장 현황을 확인함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직무명세서, 업무 기술, 책임과 권한명시, 보고체계 구축 등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11) 업무 분장

- 생활문화센터는 직무명세서에 따라 업무 분장을 수행하고, 운영하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업무기술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10
생활문화센터 업무기술서에 따라 업무분장이 되어있으나 운영이 미흡함	5
생활문화센터 업무기술서와 달리 업무분장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5
생활문화센터 업무분장도 안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운영도 안되고 있음.	0

(기준 11: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센터 조직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함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조직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 등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12)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 생활문화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회의를 개최 및 진행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10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음.	5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	0

(기준 12: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확인함 (동 문서는 생활문화센터가 속한 지자체의 책임자가 결재한 문서임,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 참석자 확인 서명기록철 등
- 현장평가 : 없음

라. 공간운영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평가방법	
			총 배점	평가
공간운영	운영계획	센터 설립 시 공간 유지 여부	10	인증/재평가 (25점 이상)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	10	
	시설안전 관리	시설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 및 시설 규비	10	
		보험가입 (안전사고) 여부	10	

(기준 13) 생활문화센터 설립 공간 유지

- 생활문화센터는 최소 설립 시 마련한(계획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최초 설립기준에 맞는 공간 확보 및 운영	10
생활문화센터 최초 설립기준에 맞는 공간 확보하였으나 미 운영중임	5
생활문화센터 최초 설립기준에 맞는 공간 미 확보함.	0

(기준 13: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센터 공간배치도, 대관 실적 등을 확인함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공간배치도, 대관 실적 등
- 현장평가 : 없음

(기준 14)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지침 수립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영중임.	10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지침 수립이 되어 있으나 이에 따라 운영하지 않음.	5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 지침 수립이 되지 않음.	0

(기준 14: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용기준, 운영시간, 대관기준 등을 명세한 기본 지침을 확인함 (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공간 사용 지침 및 지침 공시 (홈페이지, 센터 게시판 등)
- 현장평가 : 운영 지침 공시 여부

(기준 15) 시설 안전 및 관리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시설안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시설안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함. (시설 완비)	10
생활문화센터 시설안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 (시설미비)	5
생활문화센터 시설안전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계획 및 시설 미비)	0

(기준 15: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시설안전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있는지 확인함. 타 기관 (시설안전공단 등)의 안전관리 점검 확인사항으로 대체가능함(서류 평가).

- 평가근거 : 생활문화센터 시설 안전 및 관리 계획 및 관리 점검 현황
- 현장평가 : 시설 안전 관리 현황 확인

(기준 16) 보험 가입 현황

- 생활문화센터는 안전사고 보험 등을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생활문화센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음. 안전사고 보험 등	10
생활문화센터 보험 가입이 일부 되어 있음.	5
생활문화센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	0

(기준 16: 평가 방법)

- 평가자는 타 기관(시설안전공단 등)의 안전관리 점검 확인 사항 등이 있는지를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문화센터 가입 보험 현황, 타 기관(시설안전공단 등)의 안전관리 점검 확인 사항 등으로 대체 가능함
- 현장평가 : 없음

2. 우수 프로그램 인증

-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계획 수립과정과 계획이 타당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개별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추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임.
-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기본 여건 인증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고, 기본 여건 인증을 획득한 후에 획득할 수 있음
- 우수 프로그램 인증은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본 여건 인증과 동시에 획득할 수 있고, 기본 여건 인증을 획득한 후에 획득할 수 있음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기준17)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10점
	비전 및 전략 수립	(기준18)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15점
		(기준19)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15점
	실행계획 수립	(기준20)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	10점
		(기준21)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	10점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기준22)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점
		(기준23)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10점
		(기준24)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점
	세부 프로그램 운영	(기준25)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점

- 평가 등급은 5 등급으로 구분함

구분	매우 탁월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우등
	90	85	80	75	70

가. 운영계획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운영계획	지역 현황 분석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10점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 수립	15점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의 명시 및 공개	15점
	실행 계획 수립	세부 실행 계획 수립	10점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10점	

(기준 17) 지역 현황 조사 및 이용자 요구 조사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 현황 조사와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함.	10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7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조사를 참조함	4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 계획을 수립함.	1

(기준 17: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지역현황조사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센터 운영계획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지역현황조사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센터 운영계획
- 현장평가 : 센터 운영 계획 확인, 조사 결과 활용 확인

(기준 18)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에 구체적인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현황 및 요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함.	15
전문가 조사를 참고하여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정함	10
현황 및 요구조사 없이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함.	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음.	0

(기준 18: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 운영계획 내 비전과 운영방향에 방향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센터 운영계획
- 현장평가 : 센터 운영 계획 내 비전과 운영 방향을 확인

(기준 19)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 생활문화센터는 구체적인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함. (홈페이지, 센터 공간)	1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공개함.	10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였지만,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0

(기준 19: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향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근거 : 센터 운영계획, 공개 내역 (홈페이지, 센터 공간 등)

- 현장평가 : 센터 운영계획 내 비전과 운영방향에 방향 확인

(기준 20)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는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반영한 센터 운영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음.	10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흡함.	7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르지 않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0: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운영 세부 실행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운영 세부 실행 계획은 비전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조직의 업무분장, 분야별 실행과제 설정 및 실행방법, 업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분야별 실행과제는 센터별 상황에 맞게 설정하되, 인력관리, 예산편성계획, 생활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 동호회, 센터 홍보, 지역네트워크 개발, 성과관리, 주민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운영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확인

(기준 21)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는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반영한 센터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른 중장기 실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음.	10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른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흡함.	7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르지 않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1: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중장기 실행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중장기 실행 계획은 비전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센터 운영에서의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포함함.
- 현장평가 : 운영 중장기 실행계획에 대한 확인

나. 프로그램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10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

(기준 22)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운영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목표, 내용, 기대효과 포함)을 수립하고, 운영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음	10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목표, 내용, 기대효과 포함)을 수립함	7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함	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2: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프로그램은 센터의 비전과 운영방향과 부합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 (결과 및 성과)를 포함해야 함
-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는 일반 생활문화프로그램, 주민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인

(기준 23)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 주민 제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주민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10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함	7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함	4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3: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주민 제안 프로그램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근거 :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주민제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주민제안 프로그램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주민, 주민 제안 취지,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 (결과 및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중 주민제안 프로그램 확인

(기준 24)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10
센터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함	7
센터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4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4: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의 타 문화 시설이나 조직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기획 의도,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결과 및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중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인

(기준 25)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은 우수한가? (평가 기준은 목표지향성, 민주성, 혁신성, 효과성, 환류성 등으로 구성됨)

평가기준		배점
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이 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2
민주성	프로그램이 이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2
혁신성	프로그램이 혁신적인 사례로 독창적이며 참신한가?	2
효과성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 또한 계획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수행되는가?	2
환류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환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2

(기준 25: 평가 방법)

-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함
- 평가근거 : 센터가 운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점수는 개별 프로그램 평가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 모든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가 평균 5점에 4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평가에서 3점 미만이 발생하면, 인증이 불가함
- 서류평가 : 프로그램 자료
- 현장평가 :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확인

인증 요청 프로그램 자료		비고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사업방향	비전과 운영방향 반영,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의 목표 (연간 계획과의 연계)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세부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및 활동 내용	
결과 및 성과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증가, 프로그램 전후 변화 비교, 기타 성과	

3. 우수 센터 인증

- 우수 센터 인증은 전반적인 센터의 운영 사항을 확인하고, 타 센터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 센터로 추천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임.
- 우수 센터 인증 평가의 평가 영역, 기준과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운영 계획	지역현황분석	(기준17)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10
	비전 및 전략 수립	(기준18)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15
		(기준19)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15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기준20) 세부 실행 계획 수립	10
(기준21)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10	
프로 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기준22)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기준23) 주민 제안 프로그램 계획	10
		(기준24)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
	세부 프로 그램 운영	(기준25)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
홍보	연간 홍보 계획	(기준26) 연간 홍보 계획 수립	5
		(기준27)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	5
		(기준28) 센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0
	홍보 실행	(기준29) 홍보 대상별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5
		(기준30) 홍보 계획 실행	5
		(기준31) 홍보 목표 달성	10
성과 관리	성과관리 체계	(기준32) 성과관리 계획 수립	10
		(기준33) 성과관리 환류	10
		(기준34) 성과 결과 반영	10
주민 참여	주민 참여	(기준35) 주민 환류 체계	10
		(기준36)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0
		(기준37)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 우수 센터 인증 평가 영역은 운영 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및 주민참여 등으로 구성됨

우수센터 인증					
영역	운영 계획	프로그램	홍보	성과관리	주민참여
점수	60점	40점	40점	30점	30점

- 우수 센터 인증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성됨

구분	매우 탁월	탁월	매우 우수	우수	우등
점수	180	170	160	150	140

가. 운영 계획

- ‘운영 계획 평가 기준’은 ‘우수 프로그램 인증’의 운영 계획 평가와 동일함.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운영계획	운영계획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10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1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15
		세부 실행 계획 수립	10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10

(기준 17) 지역 현황 및 이용자 요구 조사

- 생활문화센터가 지역현황조사와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지역현황조사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함.	10
지역현황조사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음.	7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조사를 참조함	4
지역현황조사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운영 계획을 수립함.	1

(기준 17: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지역현황조사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센터 운영계획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지역현황조사 결과, 이용자 요구조사 결과, 센터 운영계획
- 현장평가 : 센터 운영 계획 확인, 조사 결과 활용 확인

(기준 18)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 수립

-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에 구체적인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현황 및 요구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함.	15
전문가 조사를 참고하여 센터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정함	10
현황 및 요구조사 없이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설정함..	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지 않음.	0

(기준 18: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 운영계획 내 비전과 운영방향에 방향을 확인함 (서류평가)
- 평가근거 : 센터 운영계획
- 현장평가 : 센터 운영 계획 내 비전과 운영 방향을 확인

(기준 19)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의 명시 및 공개

- 생활문화센터는 구체적인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함. (홈페이지, 센터 공간)	1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공개함.	10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였지만,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5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운영 계획에 명시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0

(기준 19: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향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근거 : 센터 운영계획, 공개 내역 (홈페이지, 센터 공간 등)
- 현장평가 : 센터 운영계획 내 비전과 운영방향에 방향 확인

(기준 20) 세부 실행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는 센터 비전과 운영방향을 반영한 센터 운영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음.	10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른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흡함.	7
비전과 운영 방향에 따르지 않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0: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운영 세부 실행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운영 세부 실행 계획은 비전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조직의 업무분장, 분야별 실행과제 설

정 및 실행방법, 업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분야별 실행과제는 센터별 상황에 맞게 설정하되, 인력관리, 예산편성계획, 생활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 동호회, 센터 홍보, 지역네트워크 개발, 성과관리, 주민운영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운영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확인

(기준 21)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 생활문화센터는 센터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반영한 센터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른 중장기 실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음.	10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른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미흡함.	7
비전과 운영방향에 따르지 않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1: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중장기 실행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중장기 실행 계획은 비전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센터 운영에서의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포함함.
- 현장평가 : 운영 중장기 실행계획에 대한 확인

나.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평가의 세부 영역은 ‘연간 프로그램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성됨
- 세부 영역의 점수는 ‘연간 프로그램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운영’ 점수의 과거 3년간 점수를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
- ‘연간 프로그램 계획’의 세부 영역은 ‘우수 프로그램 인증’의 세부 영역과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구성됨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세부 영역은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평가함.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계획 (3년간 프로그램 계획 평가 점수의 평균값)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10
		주민제안 프로그램 계획	10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계획	10
	세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10

1) 연간 프로그램 계획 (최근 3년)

- ‘연간 프로그램 계획 영역’에 대한 평가는 ‘우수 프로그램 인증’의 ‘연간 프로그램 계획’의 평가와 동일함
-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가 결과의 평균값으로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함

(기준 22) 프로그램 운영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운영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목표, 내용, 기대효과 포함)을 수립하고, 운영 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음	10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목표, 내용, 기대효과 포함)을 수립함	7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함	4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2: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프로그램은 센터의 비전과 운영방향과 부합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 (결과 및 성과)를 포함해야 함
-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는 일반 생활문화프로그램, 주민제안 프로그램, 지역 연계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인

(기준 23) 주민 제안 프로그램 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 주민 제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주민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10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함	7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함	4
주민 제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3: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주민 제안 프로그램이 연간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평가근거 : 연간 프로그램 계획에 주민제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주민제안 프로그램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참여 주민, 주민 제안 취지,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결과 및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 주민 제안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기준 24)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 생활문화센터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10
센터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함	7
센터 운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4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기준 24: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지역의 타 문화 시설이나 조직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기획 의도, 세부추진내용, 프로그램 실행 후 기대 효과(결과 및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현장평가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중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인함.

2) 세부 프로그램 운영 (최근 3년)

- 세부 프로그램 운영 평가는 센터가 최근 3년간 운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점수는 개별 프로그램 평가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기준 25) 세부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세부 프로그램은 우수한가?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이 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가?	2
민주성	프로그램이 이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	2
혁신성	프로그램이 혁신적인 사례로 독창적이며 참신한가?	2
효과성	프로그램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은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가?	2
환류성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관리와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환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2

(기준 25: 평가 방법)

- 평가자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판단함
- 평가근거 : 센터가 운영한 3년간 운영한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점수는 개별 프로그램 평가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출함
- 최근 3년간 모든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가 평균 5점에 4점 이상이어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평가에서 3점 미만이 발생하면, 인증이 불가함
- 서류평가 : 인증 요청 프로그램 자료
- 현장평가 : 인증 요청 프로그램 자료 확인
- 평가자료:

구분	내용	비고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기획 의도 및 사업방향	비전과 운영 방향 반영,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의 목표 (연간 계획과의 연계)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세부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및 활동 내용	
결과 및 성과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증가, 프로그램 전후 변화 비교, 기타 성과	

- 서류평가 : 인증 요청 프로그램 자료
- 현장평가 : 인증 요청 프로그램 자료 확인

다. 홍보

- 홍보는 연간 홍보 계획과 홍보 실행으로 구성됨

구분	세부 영역	평가기준	배점
홍보	연간 홍보 계획	연간 홍보 계획 수립	5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	5
		센터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10
	홍보 실행	홍보 대상별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5
		홍보 계획 실행	5
		홍보 목표 달성	10

(기준 26) 연간 홍보 계획 수립

- 센터는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함 (목표, 내용,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됨)	5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연간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체계적이지 못함	4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홍보 계획을 수립함	3
홍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6: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홍보 계획이 센터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
- 평가근거 : 평가자는 홍보 계획서를 확인하고, 홍보 계획이 센터의 비전과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개별 홍보의 목적, 세부 추진 내용, 홍보 실행 후 기대 효과(결과 및 성과)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홍보계획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을 포함함.
- 서류평가 : 연간 홍보 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연간 홍보 계획 확인

(기준 27)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조사

- 센터는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 결과를 연간 홍보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를 실시 및 검증하고, 홍보 계획 수립에 결과를 반영함	5
이용자 조사와 홍보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홍보 계획 수립에 결과를 반영함	4
이용자 조사 또는 홍보 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홍보 계획을 수립함	3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홍보 계획을 수립함	1

(기준 27: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이용자 조사 및 홍보 자원 조사 결과가 연간 홍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함
- 평가근거 : 평가자는 이용자 조사 계획과 결과, 홍보 자원(회원과 관리자, 이해 관계자 등 인적인 홍보 자원, 행정 기관과 지역내 협력 기관 등의 홍보 자원, 센터 자체의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자원 등) 조사 결과 등이 홍보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 홍보계획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계획을 포함함.
- 서류평가 : 연간 홍보 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연간 홍보 계획 확인 (최근 3년)

(기준 28) 센터의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 센터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핵심 고객 설정을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실행함	10
핵심 고객을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지만, 실행은 미진함	7
핵심 고객을 설정하였지만,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음	4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8: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가 고객을 세분류하고, 고객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함
- 평가근거 : 평가자는 센터가 고객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핵심 대상을 설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함 (고객 세분화 방법과 설정 근거, 고객과의 접촉 채널 관리, 고객 관계 관리, 고객이 필요한 자원 동원 계획,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부를 확인함)
- 마케팅 전략에는 전년도 계획의 성과 분석이 포함됨
- 서류평가 : 연간 마케팅 전략 (최근 3년)
- 현장평가 : 연간 홍보계획 확인

(기준 29) 홍보 대상별 전략 수립 및 실행계획

- 센터는 홍보 대상별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연간 홍보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홍보 대상별 홍보 전략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함	5
홍보 대상별 홍보 전략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였지만,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4
홍보 대상을 식별하고, 홍보 대상별 홍보 전략을 수립함	3
홍보 대상을 식별하였지만, 홍보 대상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29: 평가 방법)

- 평가자는 홍보 대상별로 전략 및 실행 계획이 연간 홍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함
- 평가근거 : 평가자는 홍보 대상의 식별 여부, 홍보 대상별 홍보 전략 수립 여부, 실행 계획이 홍보 대상, 홍보 목표, 홍보 수단 및 방법, 홍보 시기, 홍보 후 기대 효과 측정 등과 관련된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행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서류평가 : 연간 홍보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연간 홍보계획 확인

(기준 30) 홍보 계획 실행

- 센터는 연간 홍보 계획을 기반으로 홍보를 실행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연간 홍보 계획에 따라 홍보를 실행함 (100% 이상)	5
연간 홍보 계획을 상황에 따라서 수정하여 홍보를 실행함(100%)	4
연간 홍보 계획의 일부(75% 이상)를 실행함	3
연간 홍보 계획의 대부분(50% 이하) 실행되지 못함	1

(기준 30: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연간 홍보 계획이 적절하게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함

- 평가근거 : 평가자는 연간 홍보 계획, 홍보물, 홍보 결과 보고서(최근 3년간)을 확인하여 연간 홍보 계획의 적절한 실행 여부를 판단함
- 서류평가 : 연간 홍보계획, 홍보물, 홍보 결과보고서 (최근 3년)
- 현장평가 : 홍보물, 홍보 결과보고서 확인

(기준 31) 홍보 목표 달성

- 센터는 연간 홍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연간 홍보 계획에서 설정한 홍보 목표를 거의 달성함.	10
연간 홍보 계획에서 설정한 홍보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함 (75%에서 90%)	7
연간 홍보 계획에서 설정한 홍보 목표를 일부 달성함 (50% 이하에서 75%)	4
연간 홍보 계획에서 설정한 홍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50% 이하)	1

(기준 31: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가 연간 홍보 계획에서 설정한 홍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확인함.
- 평가근거 : 연간 홍보계획, 홍보물, 홍보 결과보고서 (최근 3년) 등을 확인하여 연간 홍보 계획의 적절한 실행 여부를 판단함
 ※ (기준 29)과 차이점: (기준 30)은 연간 홍보 계획에서 수립한 특정 홍보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만, (기준 29)는 홍보 프로그램이 홍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점검함
- 서류평가 : 연간 홍보계획, 홍보물, 홍보 결과보고서 (최근 3년)
- 현장평가 : 홍보물, 홍보 결과보고서 확인

라. 성과관리

-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계획, 성과관리 체계, 성과 반영 등으로 구성됨. 세부 영역의 평가 기준과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성과관리	성과관리체계	성과관리 계획 수립	10
		성과관리 환류	10
		성과 결과 반영	10

(기준 32)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센터는 운영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함	10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함	7
센터 운영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4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

(기준 32: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함
- 평가근거 :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측정 기준, 성과 관리 및 피드백 방식(범위, 시기, 방법 등)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서류평가 : 성과관리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성과관리계획 확인

(기준 33) 성과관리 환류

- 센터는 성과관리계획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및 피드백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측정 기준, 성과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피드백 절차와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음	10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측정 기준, 성과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7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환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4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측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1

(기준 33: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성과관리 계획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관리 및 피드백 방식 등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평가근거 : 성과관리 계획은 성과 측정 기준, 성과 측정 방법, 성과 결과 피드백 방법, 성과 측정 시기, 성과 측정 결과의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서류평가 : 성과관리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성과관리계획 확인

(기준 34) 성과 결과 반영

- 센터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금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실행하였는가?

평가기준	배점
전년도 사업 성과 중 미진한 사항을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함	10
전년도 사업 성과 중 미진한 사항을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함	7
전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함	4
전년도 사업 성과를 분석하지 않음	1

(기준 34: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성과관리 계획에 전년도 사업 분석 결과 및 미진 사항을 금년도 사업에 반영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함
- 평가근거 : 성과관리 계획은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향후 개선 방안 반영 계획과 실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
- 서류평가 : 성과관리계획 (최근 3년)
- 현장평가 : 성과관리계획 확인

마. 주민 참여

- 주민 참여는 주민 환류 체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세부영역	평가기준	배점
주민 참여	주민 참여	주민 환류 체계	10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10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기준 35) 주민 환류 체계

- 센터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10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은 보통임	7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4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1

(기준 35: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주민 환류 체계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과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적어도 분기에 1회 이상 동 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함
- 평가근거 : 주민의견 수렴 및 피드백과 관련된 센터의 근거 서류 및 활동 내역 확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수단은

센터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되, 온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서류평가 : 주민의견 수렴 수단 및 방식 자료 (최근 3년)
- 현장평가 : 주민의견 수렴 수단 및 방식 자료 확인

(기준 36)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센터는 지역 사회 교육 기관 등 유관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유관 기관 등과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음	10
유관 기관 등과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협력 수준은 낮음	7
유관 기관 등과 공식적 네트워크는 없으나,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함	4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음	1

(기준 36: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가 평생교육원, 지역 문화 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 대관, 정보 교류 등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함
 - ※ 지역 네트워크 관련 회의 반기 당 1회 이상 개최, 상호 정보 교류, 대관, 회원 유치 등의 실적이 있으면 적극적인 활용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평가근거 :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회의 자료, 네트워크 참여 기관의 숫자, 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활용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함
- 서류평가 : 지역 네트워크 관련 자료 및 공문 (최근 3년)
- 현장평가 : 지역 네트워크 관련 자료 및 공문

(기준 37)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센터는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평가기준	배점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10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함	7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음	4
주민참여위원회가 없음.	1

(기준 37: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센터가 주민이 참여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위원회가 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함
- 평가근거 :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 실적을 점검함
 - ※ 주민참여위원회 개최 실적이 반기 1회 이상, 주민참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센터 운영에 반영된 실적 등이 존재하면 활발한 운영으로 판단함

2022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 마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최명길(중앙대학교)

연구진 예원예술대학교 정재엽, 박주희, 중앙대학교 곽하율, 권예지

연구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강현조, 김지민

자문위원 광주북구문화의집 정민룡, 경희사이버대학교 강윤주, 전북연구원 장세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수경, 광주시문화재단 이예진

발행인 차재근

발행처 (재)지역문화진흥원

발행일 2022년 12월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문화진흥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연지동) 여전도회관 5층
02-2623-3100, www.rcda.or.kr

ISBN

979-11-92112-37-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진흥원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